

國富資料

No. 6

1980. 5.

1977年國富統計實務者會議結果(Ⅲ)

(第94次～第130次)

006148

1. 本資料는 1977年 国富統計調査 担当機關의 業務에 参考하고 1977年 国富統計調査의 実務的인 記錄을 남겨 次期 国富統計 調査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国富統計 実務者 會議가 構成된 以後 第60次까지의 會議結果는 第1輯으로, 第61次부터 第93次까지의 會議結果는 第2輯으로 이미 發刊하였고, 本第3輯에서는 第94次 會議(78.12.11)부터 第130次 會議(80.3.31)까지의 結果를 収録한 것입니다
3. 本資料에는 紙面關係로 別添資料中 一部를 別冊으로 하였으므로 同資料가 必要한 境遇에는 国富統計調査本部(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基準課 72-1403)에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1977年 國富統計調查実務者會議

1. 構成경위

가. 1977年 國富統計調查支部長會議(77.6.29)에서 本実務者會議을 調査本部에 設置하기로 하였음.

나. 各調査支部의 推薦에 依拠 構成하여 第1次 本會議을 77.7.6 開催하였음.

다. 土地 및 山林資産 評価를 위한 關係機關會議에서 本実務者會議에 山林庁 職員을 追加하여 運營하기로 하였음.

2. 存続期間

1977.7.6 ~ 1980.3.31

3. 構 成

1977年 國富統計調查本부의 幹事인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基準課長이 議長이 되며 그 構成 要員 名單은 다음과 같음.

所屬機關	職 級	姓 名	備 考	
經濟企劃院	書記官	金景中	議長(調查本部 幹事)	
	行政事務官	金泰憲	77.7 ~ 78.11	
	"	趙彙甲	78.11 ~ 79.10] 調查本部
	"	鄭在九	79.11 ~	
	"	南 繁	77.7 ~ 78.10	
	"	金民卿	78.10 ~	
農水産部	"	申定均	77.7 ~ 78.2	
	"	崔炳烈	78.2 ~ 78.5	個人企業
	"	安在克	78.5 ~ 78.6	資産第1支部
	"	徐永勳	78.7 ~	
韓國銀行	調查役	金在洙	77.7 ~ 79.4] 政府 및 對外資産] 調查支部
	"	金秀基	79.5 ~	
韓國産業銀行	"	金春植	77.7 ~ 79.3] 法人資産調查支部
	"	申熙昶	79.4 ~	
中小企業銀行	"	尹南烈	77.7 ~ 78.8	個人企業
	"	閔周鉉	78.8 ~] 資産調查第2支部
國民銀行	"	南圭弘	個人企業資産調查第3支部	
山林厅 (山林資源研究所)	研究官	金圭憲	78.5 ~ 林野地 및 山林評價	

4. 機 能

本実務者會議 構成員은 調査本部의 要員으로 다음 業務를 遂行함

가. 1977年 国富統計調査 基本計劃 樹立

나. 1977年 国富統計調査 綜合指針書作成

다. 各種評價基準表의 作成指針設定 및 基準表檢討

라. 各調査部門別 細部計劃(調査票結果表, 調査要領等)檢討

마. 部門別 및 綜合結果分析

바. 其他 調査上 各種問題点 解決

사. 土地 및 山林資産評價를 위한 基本計劃 樹立 및 綜合結果
分析

차 례

회 수	회 의 내 용	페이지
94차	토지 및 산림자산추진계획(안) 검토 대외순자산 조사지침(안) 검토	3
95 차	평가방법 검토	23
96 차	간접추계결과 검토	29
97 차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계획(안) 검토	36
98 차	종합결과표 검토	95
99 차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안) 검토	98
100 차	보고서발간에 따른 Spacing Chart 작성요령	132
101 차	" " "	138
102 차	잠정치 집계결과분석업무추진계획	139
103 차	조정율 산출방법	142
104 차		
105 차	잠정치 집계결과 검토	145
106 차	잠정치 분석 계획	147
107 차	잠정치 집계결과 분석방법	149
108 차	잠정치 집계결과 기초자료와 비교검토	157
109 차	" "	173
110 차	결과표 검토	175
111 차	보고서발간요령(안) 검토	178
112 차	국부통계조사 결과분석 방법 검토	193

회 수	회 의 내 용	페이지
113 차	조정율 산출방법	198
114 차 115 차	간행물 조정 심의안건 작성	200
116 차	평균내용년수 및 경과년수 산출방법	202
117 차	보고서 수록 내용 검토	204
118 차	토지 및 산림자산평가 (표준지, 등급가격채택 방법)	218
119 차	보고서 발간에 따른 각종분류 및 용어통일	229
120 차	종합부문 집계결과에 따른 내역 검토	237
121 차	국부통계조사결과분석, 종합결과표작성	239
122 차	종합결과분석	240
123 차 124 차	"	242
125 차	개인기업부문보고서 발간업무 분장	280
126 차	보고서발간에 따른 조사개요 수록내용검토	281
127 차	보고서 발간 지침서 작성	284
128 차	개인기업부문 보고서발간 처리방법	296
129 차 130 차	국부통계조사 홍보자료 작성	300

< 제 94 차 >

1978.12.11

1. 토지 및 산림자산추진계획

각지부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림자산추진계획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하였음. (별첨 1 참조)

가. 목장용지 (농수산부)

- 1) 목장용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조사누계시가 ÷ 조사대상가구수 = 평균평당시가로 전국치를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은 지목상 목장용지 가격과 실제 목장용지 가격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음. 따라서 토지면적을 조사하여 면적자료를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시켜 동 자산을 평가하기로 함.
단, 조사된 면적자료는 가중치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목장용지면적은 지적통계를 이용하기로 함.
- 2) 따라서 단가이외에 면적란을 추가하기로 함.
- 3) 전국적으로 목장용지 대상가구는 극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사된 자료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나. 임야지 및 산림 (산림청)

- 1) 산림부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어정의를

명확히 설정하기로 함.

2) 임야지의 구체적인 표본조사방법(우편조사 포함)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3) 지적통계의 임야지 면적에 대한 소유주체별 임목축적량을 산림기본 통계조사의 소유주체별 구성비를 감안 작성하기로 함.

다. 대지, 공장용지등 20개지목(한국산업은행)

1)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한 추진계획은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20개 지목별로 최고지가, 최저지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로 함.

2) 각지부의 토지 및 산림자산 추진계획안을 산업은행에서 종합정리하기로 함.

2. 사회간접자본 작성요령(안)

사회간접자본 일부자산(교량, 터널, 고가도로등)에 Fifty percent method를 적용 순자산액을 산출하는 것은 매년 일정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그 이론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에 투입된 자산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이론적인 타당성이 문제가 됨. 이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전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에 지나지 않고(68년도 경우) 교량, 터널, 고가도로의 자산액은 미세한 실정이므로 원안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동 문제는 자문위원 및

지부장회의에 부의 타결하기로 함. (별첨 2 참조)

3. 대외순자산 조사지침(안)

대외순자산을 장부가격으로만 파악하면 조사기준 시점 현재의 손익, 손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을 77년말 현재 계정으로 환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업무량의 방대성,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물가배율, 앞으로 예상되는 손익손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현상태대로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음. 단, 장, 단기 대외순자산액을 현 재고잔액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별첨 3 참조)

4. 중고품 자산평가방법

국민은행 남 규홍 조사역이 작성한 중고품 자산평가방법은 조사본부에서 검토하여 자문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별첨 4 참조)

5. 기타사항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사회간접자본 조사요령, 대외순자산 조사지침(안)을 자문위원 및 지부장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미비한 사항은 각지부별로 검토 조사본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음. (별첨 5 참조)

- 첨부 : 1. 토지 및 산림자산추진계획(안)
2. 대외순자산 조사지침(안)(별책 참조)
3. 사회간접자본 조사요령(안)(별책 참조)
4. 중고품자산 평가방법
5.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 별첨 1 >

목장용지 지가조사요령

1. 조사대상가구 : 가축통계 전수조사대상 전농가
(농가, 준농가 포함)

2. 조사대상지 : 목장용 목초지 (간이초지, 집약초지, 방목지 등)

※ 밭으로서 일시적으로 사료작물을 심어 수확하고 기타 식량작물
등을 심은 밭은 제외

3. 조사사항 : 조사대상농가별 목초지 평당 가격을 조사하여 조사
표 (별첨) 를 도사무소에 제출

4. 평당평균지가산출 : 도사무소에서는 조사표를 집계하여 시군별
로 평균 지가를 산출한다

※ 조사누계지가 ÷ 조사대상가구수 = 평균평당지가

※ 도사무소에서는 보고서식 (별첨) 에 의하여 시군별로 평균 평
당지가를 보고한다

6. 지가는 필히 100원단위까지 조사한다.

목장용지 지가조사표 및 보고서식

1. 목장용지 지가조사표 (출장소)

일련 번호	주 소	성 명	평당가격	비 고
	계	명	평당가격누계	

2. 도 집계 및 중앙보고서식

시 군	조사대상가구수	조사누계지가	평균지가	비 고

土地評價推計에 관한 調査方法

1. 面積算出에 使用되는 資料

內務部가 1977.12.31 現在를 基準으로 하여 作成, 發行한 "地籍統計"에 依함. (南韓의 總面積; 98,860 km²)

2. 지정공부 등록지와 비등록지를 基準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는 "區", 기타 地域은 "市"와 "郡"을 單位로 하고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운동장,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등 17개로 区分

3. 地價調査方法 (m²; 基準單位)

위와 같이 各地域과 지적공부상의 區分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1977.12.31日 現在 또는 이에 가장 近接할 수 있는 時日을 基準으로 한 最高地價와 最低地價를 調査하여 이를 平均한 地價를 그 地域의 基準地價로 함. 卽

地域; R_j 地目; T_j (J = 1, 2, 17)

地域 R_j에서의 地目 T_j의 最高地價를 P_{ij}, 最低地價를 P'_{ij}라 하면 그 基準地價는

$$P_j = \frac{P_{ij} + P'_{ij}}{2}$$

地域 R_i 에서의 地價評價額 A

$$A = \sum T_{ij} \text{의 面積} \times P_j = \sum T_{ij} \times P_j$$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方法으로는 各市道에 行政的인 要
請으로 이에 必要한 資料를 수집하여 作業에 착수하는 것이고
두번째의 方法으로는 實務者가 直接 全國을 field survey 하는
方法

세번째로는 위의 두가지 方法을 併用하는 案을 構想할 수 있
으며 가장 좋은 方法은 세번째案인 위의 두가지를 併用하는 것
임.

< 별첨 4 >

국부통계조사의 자산평가방법의 구체적고찰

I. 평가방법의 비교

1. 통계조사에 의한 자산의 평가방법으로는 취득원가법과 시가법이 고려될 수 있음.

가. 취득원가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구입)원가를 조사하고 불가배율과 잔가율을 적용하여 조사기준 시점의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방법

나. 시가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조사기준 시점의 시장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방법

2. 이러한 평가방법들은 실제 적용상에 혹은 결과의 이용상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함과 문제점이 있음.

가. 취득원가법은

(1)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라도 취득시기가 상이하면 각각 다른 결과치로 평가됨.

(2) 불가배율과 잔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작성방법과 실제적용에 있어서 방법선택의 객관적 타당성이 문제점

나. 시가법

(1) 자산평가의 주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은 매매 목적이 아니며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기준 시점의 시가를 조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2) 시가는 잔존가치를 즉 순자산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총생산력 (Gross)의 평가 불가능함

3. 따라서 자본계수 (특히 Gross Base)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조사에 의한 국부평가방법 으로서는 귀득원가법이 유용성 있는 방법인 것임

II. Gross Base의 자본계수 산출에 유용한 총자산액의 개념

경제계획에 있어서 미래일정 시점의 예상증가 GNP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소요예상증가자본 Stock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Gross Base의 자본계수 ($\frac{K}{X}$ or $\frac{\Delta K}{\Delta X}$)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

예상증가 GNP는 계획수치로서 미래의 생산량을 계획시점의 화폐단위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되는 미래 일정시점의 예상증가자본 Stock도 계획시점의 화폐단위로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본 Stock의 예상은 과거 또는 계획시점의 일정 생산량에 대응되는 자본 Stock를 계획시점의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산출 가능한 것임.

Ⅲ. 취득원가법에 의한 자산평가법의 가정

1. 취득가격은 취득시 총생산능력 즉 기대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대생산력 = 단위생산량 × 사용가능년수)
2. 단위생산량은 내용년수기간중 일정 불변이다
3. 계속기업에 있어서 일정시점의 물리적 자산구성은 계속 기간중 일정하다.

Ⅳ. 1977년 국부통계조사 종합 지침서의 평가방법

중고품 및 자산재평가 자산의 평가방법의 의미

1978.4월 경제통계분과회의 제2회 국부통계조사 종합계획중

G : 기준시 재취득가격

N : 기준시 재조달가격

P : 취득시 가격

R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른 불가배율

r : " " 잔가율

$$G = P \times \frac{1}{0.316} \times R \quad \textcircled{1}$$

단 0.3161은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1/2이 경과한 후의 잔가율임.

$$N = P \times R \times r$$

상기 방법은 N은 신중고 경우 다같이 취득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데 G는 취득시 신제품인 경우에는 취득원가법에 의하여 산출하고 중고품인 경우에는 신제품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즉 ①식은 신제품인 경우

$$G = P \times R$$

에 $\frac{1}{0.3161}$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1/2이 경과한 후의 잔가율)을 승하여 평균 신제품가격을 추정하여 선, 중고 다같이 신제품 Base로 평가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G를 산출 $\frac{\Delta Y}{\Delta X}$ 를 구하여 제반 경제계획치로 이용한다면 자산구성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자본 stock가 산출되게 됨으로 필요 이상의 예상치를 계상하게 되어 투자계획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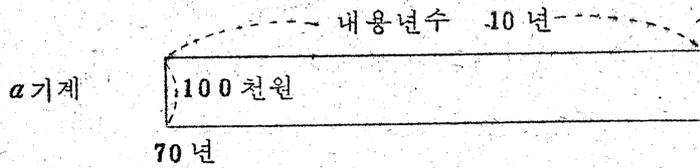
V.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계수 특히 Gross Base의 자본계수의 산출을 위하여는 취득원가법이 유용한 방법인데 취득원가법의 결함 및 문제점(1, 2가)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자산이라도 취득시기가 상이하면 각각 다른 결과치로 평가되게 됨. 그러나 이러한 개별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는 취득년도별

집계를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동일가치로 환원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계속기업에 있어서 일정시점의 평균적인 자본 Stock 를 일정시점의 화폐가치로 산출하는 데는 타당한 것이 되게 됨.

한편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을 동일한 결과치로 평가하기 위하여 신품가격으로 환산 stock 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예를 들어 음미하여 보면

70년 제작 신품동일기계 "a, b" 2대중 "a" 기계는 70년 "A" 기업에 취득되어, 평가시점까지 가동되고 있고 "b" 기계는 70년에 "B" 기업에 취득되어 2년간 사용된 후 72년에 "B" 기업에 중고기계로 재취득되어 평가 시점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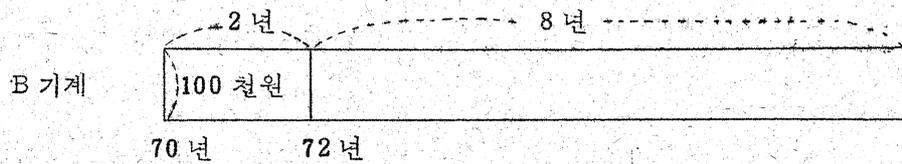


내용년수 10년

취득년도 70년

취득가격 1,000 천원

$$G = 1,000 \text{ 천원} \times P$$



B 기계 100 천원

내용년수 10년 $G = 800 \text{ 천원} \times P$

취득년도 72년

취득가격 800 천원

이 되어 70년에 취득한 a 는 70년에 취득한 (1,000 천원 \times P) 원짜리 기계로,

b 는 72년에 취득한 (800 천원 \times P) 원짜리 기계로 각각 달리 평가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두기계의 경제적 가치가 같은 것이 되게 된다. 그러나 신품가격으로 환원 평가하는 경우를 보면

b 기계가 72년에 취득한 (1,000 천원 \times P) 원짜리 기계로 평가됨으로써

70년에 취득한 (1,000 천원 \times P) 원짜리 기계인 a 기계와는 같은 결과치로 평가는 되나 경제적 가치는 서로 다른 것으로 평가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취득원가법은 물가배율과 잔가율이 정당하게 적용되고 결과표를 신·중·고 및 취득년도별로 집계하면

개별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Gross Base의 자본계수를 위한 Gross Base의 국부자산평가의 유용하고 타당한 방법이라 하겠다.

< 별첨 5 >

국부통계조사사업 무실적 및 계획

1. 77.1 조사계획수립착수
2. 각종 기준표 작성 (78.3 - 78.8)
 - 참가배율표, 건물평가기준표, 자산분류및 내용년수표 참가율표, 내용식물 평가기준표
3. 조사표 조사요령서 작성 (78.1.1 - 78.6.30)
4. 본조사실시 현황

부 문	· 조사대상	실 사	조사표심사 및보완조사
1. 정부부문 (한국은행)	정부및지방기관 1,215 기관전수	78.5.1 - 9.30	78.9.1 - 12.31
2. 법인부문 (한국산업은행)	18,539 법인전수	78.7.11 - 9.30	78.9.1 - 12.31
3. 개인기업부문			
가. 농림어업 (농수산부)	11,592 표본사업체	78.7.11 - 8.30	78.9.1 - 12.31
나. 광공업및 도 소매업 (기업은행)	11,600 "	78.7.11 - 9.30	78.8.20 - 11.30

부 문	조사대상	실 사	조사표심사 및보완조사
다. 운수, 금융 기타서비스업 (국민은행)	10,039 표본사업체	78.7.11 - 9.30	78.8.20 - 79.1.30
4. 가계 부문 (통계국)	10,500 표본가구	78.3.10 - 4.20	78.4.1 - 9.30
5. 대외순자산 및 사회간접자본 (한국은행)	기존자료이용추계	78.7.1-12.31 (기존자료수집 및추계요령확정)	

5. 자료처리

가. 결과표안작성

1978.9.30 완료

나. 집계치집계

1) 집계작업

78.11.1 - 79.3.31

2) 집계분류

가) 부문분류 - 소유주체별분류

- 일반정부, 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법인, 개인기업 및 비영리단체 일반가구, 대외 순자산

나)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다) 자산분류 : 유형고정 자산은 중분류, 재고자산은 대분류

3) 결 과 표

가) 부문별 자산별 순자산액

나) 기업부문 업종별 자산별 순자산액

다) 기업부문 업종별 자본계수

4) 보고서 작성 79.4.1 ~ 4.20

다. 자료처리 계획

부	분	천공 및 검공	Editing 및 Master Tape 작성	비	고
1.	정부부문	79.1.1 ~ 3.31 (외부용역)	4.1 ~ 6.30		
2.	법인부문	79.1.1 ~ 4.15 (외부용역)	4.16 ~ 6.30 (외부용역)		
3.	개인기업부문				
가.	농림어업	78.12.15 ~ 79.2.15 (정부전자계산소)	2.16 ~ 5.31		
나.	광공업 및 도소매업	79.2.1 ~ 3.31 (외부용역)	4.1 ~ 5.31		

부 분	원공 및 검공	Editing 및 Master Tape작성	비 고
다. 운수, 금융, 기타서비스업	79.1.1 ~ 3.31 (외부용역)	4.1 ~ 6.30	
4. 가계부문	79.1.1 ~ 2.28	3.1 ~ 5.31	
5. 대외순자산 사회간접자본		78.12.1 ~ 79.2.28 78.1.21 ~ 79.1.31	주계 완료 "

라. 통계표 작성

79.6.1 ~ 7.31

마. 분석 및 보고서발간

- 1) 부문별분석 79.4.1 ~ 79.9.30
- 2) 부문별보고서발간 79.7.1 ~ 79.11.30
- 3) 종합보고서발간 79.11.1 ~ 79.12.31

토지 및 산림자산추계

1. 작성 방법 연구

1978.6.1 ~ 78.10.30

2. 추계원칙

가. 토지면적 : 내무부 지적공부 이용

나. 토지가격 : 1) 기존자료 이용
2) 필요시 표본조사 병행

다. 산림자산 : 산림기본통계조사 및 입산액 자료이용

3. 토지가격 수집계획

가. 수집대상

농경지, 목장용지, 과수원용지 ————— 농수산부

임야지 ————— 산림청

대지, 공장용지 등 20개지목 ————— 한국산업은행

나. 수집기간 : 79.1.15 ~ 4.15

4. 대표가격자료산정

79.4.1 ~ 79.5.31

5. 추계 작업

79.5.15 ~ 6.30

6. 부문별 분석 및 결과보고

79.7.1 ~ 9.30

7. 보고서 발간

79.12.31

< 제 95 차 >

1978. 12. 22

국부자산 총자산액 개념 및 중고품자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남 규홍 조사역이 "자산평가방법의 구체적 고찰"을 작성하여 현 평가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에 따라 동 평가방법을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77년 국부통계조사지침서상의 총자산액 개념 및 평가방법
(방법 1)

가. 총자산액 (Gross) 개념

한 재화를 조사기준년도에 신품으로 취득(구입)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를 시장가격으로 파악한 가격을 말한다 즉, 신품·중고품 자산이 신품으로서 처음 국민경제내에 기여하기 시작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그 취득가격에 물가배율을 승하여 Gross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나. 평가방법

1) 소유자산

(가) 신품자산

총자산액 = 취득가격 × 물가배율

순자산액 = 취득가격 × 물가배율 × 잔가율

(내) 중고품자산

$$\text{총자산액} = P \times \frac{1}{0.3161} \times R$$

(단, 0.3161은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1/2 이 경과한 후의 잔가율임)

$$\text{순자산액} = P \times R \times r$$

P = 취득시 가격

R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불가배율

r = " " " 잔가율

2) 임차자산

$$\text{총자산액} = \text{신품가격}$$

(건물의 경우 건물평가기준표에 준한 평가액)

$$\text{순자산액} = \text{총자산액 (신품가격)} \times \text{잔가율}$$

단, 임차시 중고품의 경우 임차시 경과년수를 내용년수의 1/2로 하고 임차후 경과년수를 합산한 년수로 한다.

2. 일본의 1970년 국부통계상의 총자산액 개념 및 평가방법

(방법 2)

가. 총자산액 (Gross) 개념

한 재화를 조사기준년도에 새로이 취득하면 얼마를 요하는가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즉, 현재의 소유주체가 신품뿐만 아니라 중고품 자산을 취득(구입)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그 취득시기에 물가배율을 승하여 Gross 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나. 평가방법

1) 소유자산

가) 신제품자산

총자산액 = 취득가격 × 물가배율 (방법 1 과 동일)

순자산액 = 취득가격 × 물가배율 × 잔가율

나) 중고품자산

신제품자산의 평가방법과 동일함

2) 임차자산

총자산액 = 평균가격 (조사기준년도의 신제품, 중고품, 평균가격)

순자산액 = 평균가격 × 잔가율

중고품 자산도 동일함

3. 1968년 국부통계조사시 총자산액 개념 및 평가방법 (방법 3)

가. 총자산액 (Gross) 개념

방법 1 과 동일함

나. 평가방법

1) 소유자산

가) 신제품자산

총자산액 = 취득가격 × 물가배율

순자산액 = 취득가격 × 물가배율 × 잔가율

나) 중고품자산

취득시 경과년수를 알 수 있을 경우 (정부, 법인부분)

총자산액 = $P \times \frac{1}{r} \times R$

순자산액 = $P \times R \times r$

P = 취득시 가격

R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가배율

r = " " " 잔가율

r' = 취득전 중고품 경과년수에 대한 잔가율

취득시 경과년수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인기업부분)

총자산액 = 신품가격

순자산액 = 시가

2) 임차자산

총자산액 = 신품가격

순자산액 = 시가

4. 평가방법상의 문제점

(방법 1)

가. 중고품 자산을 취득(구입)한 경우 취득년도별 분류에 있어서 중고품을 취득한 년도에 분류하여야 하나 이는 같은 년

도에 출발한 자산이라도 거래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취득
년도가 달라지므로 우리나라의 stock구성년도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없음.

따라서 중고품 자산이 신품으로서 처음 국민경제대에 기여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할 경우 현재의 소유주체와 업종등이
달라질 우려가 있음.

나. 작업 업무량이 방대함.

다. 비교적 경과년수가 오래된 물가배율은 최근 년도의 물가배율
보다 정도가 낮은 것으로 예상됨

라. 투자계획수립에 있어서 개별 경제를 예상하게 되므로 신품,
중고품자산에 의한 복합적인 투자 기준선정에 어긋남.

(방법 2)

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기계중 동종의 기계는 취득년
도가 달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거래가 이루
어진 중고품 자산을 일본의 Gross 평가방법에 의거 Gross
를 산출할 경우 동일자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
될 수 없음.

나. 77년 국부조사시 임차자산은 신품가격을 조사하여 Gross로
평가하므로 동 평가방법과는 거리가 있음.

다. 77년 국부조사시 가계 부문은 신품가격을 조사하여 Gross로
평가하고 있음.

라. 이와 같이 Gross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 취득시기 등이 달
라지고 상반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2
가지 방법으로 결과표를 작성하여 본 후 일본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투자계획의 이용등을 연구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제 96 차 >

1979. 1. 17

1. 국부통계조사 간접추계결과 검토

한국은행에서 68년도 국부통계조사 결과들 기초로 GNP 지표에 의하여 작성된 '77년 국부간접추계결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자료 사정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동 추계치를 감안하여 본 국부통계조사결과 내용검토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본 내용을 종합보고서 발간시 수록할 수 있도록 추계방법등을 정리하기로 하였음. (별첨 참조)

가. 법인, 개인기업의 자산액이 GNP에서 구분되지 않아서 68년도의 자산구성비를 감안 구분하였으나 이는 이론적으로 모순점이 있으므로 75년도 광공업 센서스 결과를 이용, 추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나. GNP에서는 건물자산을 추정하는데 건축허가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물자산을 평가하며 이러한 방법을 flow개념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stock개념인 국부통계조사에서는 건설가계정 자산액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음.

다. 재고자산중 유동재고자산액이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저평가 되었음

라. 가계자산은 예상보다는 총자산액과 순자산액 차가 크게 나타났음.

마. 식물자산은 자료사정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음.

2. 잠정추계 결과작성

국부통제조사 잠정추계결과는 아래 양식으로 3월말까지 기일
업수 작성하도록 재당부하였음.

가. 부문별 자산별 순자산액

나. 기업부문 업종별 자산별 순자산액

다. 기업부문 업종별 자본계수

3. 토지 및 산림자산평가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작업이 기존업무 과다로 다소 지연되
고 있는 바, 1월말까지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추계계획
서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동 자산추계결과를 New SNA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계방법 결정과정에 한국은
행 국민소득과 담당직원이 참석 등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
음.

4. 중고품자산 평가방법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던 중고품 자산 평가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음.

첨부 : 국부통계조사 간접추계 결과

<別添>

対外純資産除外

G の 68 対比増加率	G r o s s						N e t	
	77 구성비			68 구성비			77	68
8.9倍有形固定資産	41.8	100.0	79.0%	4.7	100.0	86.2	25.4	2.4
5.9 住 宅	11.7	28.0		2.0	42.6			
9.2 非住宅 (건설가계정)	8.3	19.9		0.9	19.1			
10.0 構 築 物	8.0	19.1		0.8	17.0			
17.0 運 輸 (船舶)	5.1	12.2		0.3	6.4			
12.4 機 械 (工務備)	8.7	20.8		0.7	14.9			
7.0 動 植 物	0.7		1.4	0.1		2.1	0.7	0.1
7.5 在 庫	3.0		5.6	0.4		6.5	3.0	0.3
24.7 家 財	7.4		14.0	0.3		5.2	2.8	0.3
9.6 計	52.9		100.0	5.5		100.0	31.9	3.1

	77 年	68 年
民間企業 및 公企業	구성비 25.2(47.6%)	2.2(40.0)
法 人	14.0(26.5%)	68 年 比率
個 人	11.2(21.2%)	法 ; 個 = 55.5 ; 44.5
政府 (公共団体除外)	9.8(18.5%)	政府管理企業包含 1.2(21.8)
一 股	6.7	
企 業	3.1	
家 計	17.9(33.9%)	2.1(38.2)

部門別로 推定方法을 細分하면 다음과 같음.

가. 有形固定資産

- 總額 : 1968 年 国富統計調査의 有形固定資産 總額에 1969 ~ 1977 년까지의 每年 有形固定資産 形成額을 GNP 資料에 依拠 1977 年 價格으로 換算한 後 이들을 加算하여 推定한 結果 41.8 조원으로 推定되었음.
- 純額 : 1968 年 国富統計調査의 有形固定資産純額에 1969 ~ 1977 年の 有形固定資産 形成額을 加算한 後, 여기에서 每年의 資本消耗 充當金을 差減한 結果 25.4 조원으로 推定되었음.

나. 大動植物

1978年 農林統計年報에서 求한 소, 말, 돼지, 양의 77年末 現在 全國 飼育頭數에 國富統計調查本部에서 定한 動物評價 基準表의 平均單價를 適用하여 算出한 結果 0.7조원(總額 과 純額의 區別없음)으로 推定되었음(68年 總國富의 0.3%를 佔한 植物資產의 推定은 資料事情으로 因하여 除外하였 음)

다. 在庫資產

經濟企劃院의 鉦工業統計調查 資料에서 77年末 現在 總在庫 額(2.2조원)을 求한 後, 여기에 農水産部 糧穀管理基金의 在庫資產(0.8조원)을 合算하여 算出한 結果 3.0조원으로 推定되었음.(總額과 純額의 区分없음)

라. 家計保有資產

家計가 保有하고 있는 資産中 建物は 有形固定資産에 包含 되어 있으므로 建物を 除外한 家財資産만을 對象으로 하여 推定하였음.

- 總額: 1968年 國富統計의 家計保有資産 總額에 1969年부터 1977년까지의 每年 GNP民間消費支出中 衣類裝身具와 家具施設費 支出額 및 交通通信費의 個人運輸施設 取得額을 資産別로 그들의 耐用年數에 따라 各各 累計하고 1977年 價格으로

換算하여 加算한 結果 7.4 조원으로 推定되었음

- 純額 ; 위의 總額을 推定하는 過程에서 計算된 資産別, 年度別, 金額의 各項에 耐用年數에 따라 殘價率을 適用한 結果 5.2 조원으로 推定되었음.

< 제 97 차 >

1979.1.26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를 위하여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계획(안)을 검토하고 각 지부는 이를 기본으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안)을 작성 차기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별첨 참조)

1. 지목분류

현지목은 과세목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분류기준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본 국부조사 목적에 맞도록 재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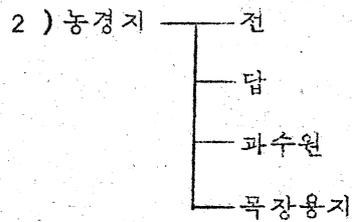
예) 전, 답	토지용도별
학교용지, 종교용지	소유관계별

가. 재분류 원칙

- 1) 토지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기초로 한 UN권고 국민대차 대조표 작성을 위한 기준분류에 의하여 재조정한다.
- 2) 단, 재분류의 경우 대분류는 UN권고 분류에 의하고 소분류는 우리나라 토지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분한다.
- 3) 기타 토지는 각 지목별로 조사하되, 최종집계결과를 기타로만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목별로 분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나. 재분류내용

1) 대지



3) 임야지

4) 기타

2. 추계방법

가. 76.12.31 기준 내무부 세정과에서 파세기준을 목적으로 작성한 토지등급 가격통계에서 이용된 표준지 (약 9,000 표준지) 가격을 지목별 (14개지목), 지역별로 조사된 가격을 표준지 등급가격과 비교 차액을 재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목별, 지역별 조정율을 산출한 토지에 적용함.

예) 북포시 영해동 1가 6 - 17

지목 : 대지

등급 : 79

등 급	등 급가격	조사가격 (표준지)	조 정 율	조정가격
79 등급	49,000	98,000	2	
1	1			2
37	700			1,400
49	4,000			8,000
73	160,000			320,000

나. 보완사항

- 1) 토지등급가격통제와 지적통제면적이 상이하므로 지적통제의 전지목 구성비를 미복구지역(차액분)에 적용함
- 2) 토지등급가격통제의 지목별표준지는 14개 지목에 한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지목조정율은 조사된 표준지 지목과 유사한 지목에 조정율을 적용하고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지목은 전과조정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3) 미등록 토지는 지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기존등록지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첨부 : 토지 및 산림자산추계계획안

< 별첨 >

토지 및 산림자산추계계획(안)

1. 담당기관

담당기관	평가부문	비고
조사통계국	총괄	전부문총괄
농수산부	농경지(과수원, 복장용지포함)	
산림청	산림(임야지포함)	
한국산업은행	농경지, 임야지를 제외한 전토지	

2. 추계일정

- 가. 기본계획수립(78.5.1)
- 나. 기존자료수집(78.6.1 ~ 78.12.31)
- 다. 작성방법연구(78.7.1 ~ 78.12.31)
- 라. 추계지침서작성(79.1.4 ~ 79.2.15)
- 마. 가격자료조사(78.12.1 ~ 79.5.31)
- 바. 추계작업(79.6.1 ~ 79.7.31)
- 사. 부문별분석 및 결과보고(79.7.1 ~ 79.9.30)
- 아. 보고서발간(79.12.31)

3. 추계범위

지역 : 11개 시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제주)

지목 : 지적법에 의한 24개 지목

소유주체 : 정부, 법인, 개인 (전국단위의 소유주체별)

4. 추계방법

가. 토지

1) 토지면적

토지자산 추계에 필요한 토지면적 자료는 각지방 공통으로 내무부 지적통계를 사용한다

2) 토지가격

가격자료는 내무부 토지등급가격통계, 한국감정원, 농업협동조합 토지시가지조사등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을 담당기관별로 우선 검토하고 기존자료로 추계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표본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나. 산림

1) 임야지, 토지평가방법에 준함

2) 입목

가) 성립 (평균흉고직경 6cm 이상 입목)

○ 추계방법

입목축적 × 단가 (거래가격)

○ 추계자료

입목축적 : 77년말 현재의 산림기본통계

입목단가 : 시군별, 입상별 77.6 ~ 12까지의 민유림
(사, 공유림)의 거래가격을 파악. 단,
국유림은 각 소관별 77년도 입목매각 실
적으로 산출

나) 치수림 (평균흉고직경 6cm 미만 입목)

치수림은 조림치수와 천연치수로 구분되며 천연치수의 육
목은 노동력 투입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으므로 치수림의
평가는 조림치수에 한한다.

○ 추계방법 : 연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무육(撫育) 투
자액을 이용 평가

○ 추계자료

연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실적통계

5. 추계기초자료내역

가. 지적통계

1) 작성기관

내무부 지적과

2) 작성목적

정확한 국토면적을 지목별, 지역별로 파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3) 작성시기

1970년부터 매년 12.31을 기준으로 조사

4) 작성방법

지적법에 의거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면적통계를 작성함.

단, 등록지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하였으며 미등록 토지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간접 산출하고 있음.

5) 통계표의 분류

토지면적을 시, 군, 시도 및 전국단위로 구분하여 지목별, 등록별, 소유별로 집계함(별첨 1 참조)

지역별 : 11개 시도 및 군, 구

지목별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궁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운동장,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24개 지목

소유별 : 국유지, 민유지

6) 참고사항

본 자료는 지적법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한 상태에 따라 지목이 결정되므로 지적통계상의 지목면적과 실제 지목면적이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실제 지목과 부합되고 그 차이의 폭도

미세하므로 면적자료는 본 지적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토지등급 가격통계

1) 작성기관

내무부 지방재정국 세정과

2) 작성목적

토지등급 선정 및 수정의 지표와 토지등급의 지역간 균형 유지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기준 운영기준을 삼고 국부조사등 기타 토지행정자료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3) 작성시기

76년부터 3년을 주기로 매년 12.31을 기준으로 조사

4) 작성방법

62년도에 작성한 임대가액을 조정한 전국 토지등급 가액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매매) 사례비례법에 의거 표준지 가액을 조사하여 변동된 폭만큼 등급을 조정하여 토지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면적 및 등급별 가격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거래 사례비례법

토지의 시장가격을 실제 거래에서 지불된 가액과 최근에 시장에 출품되어 매도인이 요구하는 가액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표준지 결정방법

아래 분류표와 같이 지대 및 지구를 결정하고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을 결정 그 지목중 지가 변동이 심하지 않고 상지상의 가격을 표준지로 결정함.

(전국 약 9,000개 표준지)

도시지대	{	상업지구 주거지구 공업지구 (공업용지) 근교농업지구 (전, 답, 과수원) 특수지구 (과수원, 운동장용지 등)
농촌지대	{	취락지구 (상가지, 주거지) 공업지구 (공장용지) 농업지구 (평야지, 구릉지) 산간지구 (임야) 특수지구 (유원지, 광천지)

5) 통계표의 분류

지역별 (11개 시도), 지목별 (14), 등급별 (1~96) 분류

(별첨 2 참조)

11개시, 도	{	전 (4~75 등급)
	{	답 (6~76 등급)
	{	대 (10~95 ")
	{	염전 (19~56 ")

11개 시도	광천지 (55 ~ 230 등급)
	지소 (8 ~ 60 ")
	잡종지 (4 ~ 75 ")
	임야 (1 ~ 74 ")
	사찰지 (16 ~ 51 ")
	철도용지 (19 ~ 36 ")
	수도용지 (29 ~ 38 ")
	과수원 (47 ")
	공장용지 (43 ~ 59 ")
	유원지 (43 ")

6) 참고사항

전국토지등급 가격통계의 가격은 과세목적으로 인하여 실제 토지 거래가격보다 낮게 평가됨.

다. 토지 시가조사

1) 작성기관

한국감정원 기획조사부

2) 작성목적

감정평가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토지가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3) 작성시기

1970년부터 매년 4. 30을 기준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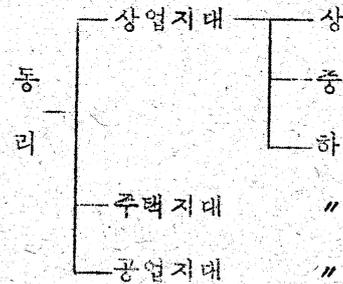
4) 작성방법

전국의 35개시 122개읍 50개면을 대상으로 표적지를

선정하여 상업, 주택, 공장지대별로 조사하였고 각지대는 상, 중, 하 3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시가는 그 지역내에 최고 평당가격을 표시한 것임

5) 통계표의 분류

지역별, 지대별, 등급별분류 (별첨 3 참조)



6) 참고사항

지대별로 상, 중, 하 3가지로 구분 최고가격을 조사하였으며 동지역에 대한 면적조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토지가액을 추계할 수 없음.

라. 전국토지 가격조사

1) 작성기관

농업협동조합 관리부

2) 작성목적

감정 평가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토지가격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3) 작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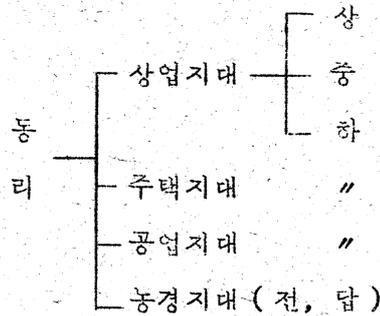
1973년부터 매년 4. 30을 기준으로 조사

4) 작성방법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표적지를 선정하여 상업, 주택, 공장, 농경지대별로 조사하였고 각 지대는 상, 중, 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시가는 그지역내에 최고 평당가격을 표시한 것임.

5) 통계표의 분류

지역별, 지대별, 등급별분류(별첨 4 참조)



6) 참고사항

지대별로 상, 중, 하 3가지로 구분 최고가격을 조사하였으며 동지역에 대한 면적조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토지가액을 추계할 수 없음

마. 산림 기본통계조사

1) 작성기관

산림청 산림자원 연구소

2) 조사목적

매년도말 현재의 임야면적과 입목축적을 조사하여 산림정책 수립자료로 이용하기 위함.

3) 작성시기

1974년부터 매년 12.31을 기준으로 조사

4) 작성 방법

시, 군, 구 및 영림서의 관리를 최초 조사단위로 한 행정 통계 방식에 의한다. 즉, 조사년도중의 임야면적과 입목축적의 증감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전년도말 통계치에 가감하여 연도말 현재의 통계를 확정한다.

5) 통계표의 분류 (별첨 5 참조)

가) 소유주체별 분류

국유림, 민유림 (사유림, 공유림)

나) 지역별 분류

11개 시도

다) 임상별 분류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라) 영급별 분류

1~6 영급별 분류

6) 이용 방법

산림기본통계조사의 입목축적량을 원칙으로 이용하고 성립지는 시군별, 임상별로 77년도의 민유림의 거래가격을 파악 적용하고 국유림의 입목매각 실적을 조사 적용함. 치수림은 조림치수 실적통계자료를 이용 연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투자액을 파악하여 적용함.

< 별첨 1 >

지 적 통 계

(77.12.31 현재)

1. 시도별 총괄
2. 지목별 총괄
3. 등록별 총괄
4. 등록별, 지목별 총괄 (24 개 지목)
5. 시도별, 지목별 총괄
6. 등록별, 지목별 총괄 (서울)
7. 구별 지목별 현황

1. 시 도

구 분 시도별	기 등 록		미 등
	년 적	지 번 수	면 적
서울	591.1	1,110	20.0
부산	345.6	483	1.0
경기	10,003.9	3,353	434.2
강원	16,239.7	1,733	652.3
충북	7,364.3	1,720	70.8
충남	8,714.8	3,037	36.5
전북	8,028.9	3,083	28.9
전남	12,103.8	4,799	12.9
경북	19,732.6	4,926	134.2
경남	11,921.5	4,328	0.3
제주	1,812.3	598	7.7
합 계	97,459.1	29,177	1,399.3

별 종 괄

단위 (면적 : km^2
지번 : 천)

록	계		
	면 적	지 번 수	구 성 비(%)
2	611.2	1,113	0.6
-	346.6	484	0.4
46	11,038.2	3,400	11.2
35	16,892.0	1,769	7.1
10	7,435.2	1,731	7.4
11	8,751.3	3,049	8.9
10	8,057.9	3,094	8.2
6	12,116.8	4,805	12.3
62	19,866.9	4,988	20.0
-	11,921.8	4,328	12.1
1	1,820.0	600	1.0
183	98,858.5	29,365	100.0

2. 지 목

구 분 지목별	기 등 록		미 등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전	9,560.5	7,176	1.6
답	12,598.8	8,072	13.1
과 수 원	65.7	19	
목 장 용 지	13.5	3	
임 야	65,920.2	3,408	22.2
광 천 지			
염 전	138.2	9	
대	1,749.7	4,878	
공 장 용 지	17.0	4	
학 교 용 지	50.5	27	
도 로	1,281.3	3,218	70.6
철 도 용 지	104.7	125	0.2
하 천	3,240.2	479	166.7
제 방	79.5	110	0.7
구 거	1,234.4	824	152.9
유 지	507.1	318	2.5

별 총 팔

단위 { 면적 : km²
지번 : 천필지

구분	계		
	면적	지번수	구성비(%)
	9,562.2	7,176	9.7
7	12,611.9	8,079	12.8
-	65.7	19	-
-	13.5	3	-
2	65,942.4	3,410	61.6
-	-	-	-
-	138.2	9	0.1
-	1,749.8	4,878	1.8
-	17.0	4	-
-	50.5	27	-
30	1,352.0	3,248	1.4
-	104.9	128	0.1
27	3,407.0	507	3.5
-	80.4	110	0.1
51	1,387.4	876	1.4
-	609.6	318	0.6

구분 지목별	기 등 록		미 등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수 도 용 지	20.0	20	
공 원	3.5	1	
운 동 장	0.5	-	
유 원 지	1.6	-	
종 교 용 지	15.7	6	
사 적 지	4.7	1	
묘 지	273.8	263	
잡 종 지	476.7	205	
미 지 목	-	-	968.2
합 계	97,459.1	29,177	1,399.3

목	계		
	면 적	지 번 수	구성비(%)
	20	20	-
	3.5	1	-
	0.5	-	-
	1.6	-	-
	15.7	6	-
	4.7	1	-
	273.8	263	0.3
	476.7	205	10.5
68	968.2	68	1.0
188	98,858.5	29,365	100.0

3. 등 록

구 분 종 별	기 등 록		미 등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지적공부등록지 (합계)	77,459.1	29,177	-
1. 토지대장등록지 (소 계)	33,090.6	26,617	-
○ 국 유 지	5,240.9	1,835	-
○ 민 유 지	27,849.6	24,781	-
2. 임야대장등록지 (소 계)	64,366.9	2,557	-
○ 국 유 지	11,648.9	151	-
○ 민 유 지	52,717.9	2,405	-
3. 수치지적부등록지 (소 계)	1.5	3	-
○ 국 유 지	-	-	-
○ 민 유 지	1.5	3	-

별 중 출

단위 { 면적 : km
지번 : 천필지

목	계		
	면 적	지 번 수	구성비(%)
-	97,459.1	29,177	
-	33,090.6	26,617	
-	5,240.9	1,835	
-	27,849.6	24,781	
-	64,366.9	2,557	
-	11,648.9	151	
-	52,717.9	2,405	
-	1.5	3	
-		-	
-	1.5	3	

구분 종별	기 등 록		미 등
	면적	지번수	면적
지정공부미등록지 (합계)	-	-	1,399.3
1. 미복구(소계)	-	-	977.9
○ 토지	-	-	174.8
○ 임야	-	-	803.1
2. 미등록(소계)	-	-	421.3
○ 토지	-	-	113.7
○ 임야	-	-	306.7
○ 도서	-	-	0.9
합계	97,459.1	29,177	1,399.3

목 지 번 수	계		
	면 적	지 번 수	구성비(%)
188	1,399.3	188	
69	977.9	69	
31	174.8	31	
38	803.1	38	
118	421.3	118	
10	113.7	10	
107	306.7	107	
	0.9		
188	98,858.5	29,365	

4. 등 록 별 지

종 별		전		답		과 수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지 번 수	면 적
1 지 적 공 부 등 록 지	(토지대장등록지) 국 유 지	151.8	128	119.8	116	0.1
	(민 유 지)	9,393.0	7,040	12,476.8	7,953	65.6
	계	9,544.8	7,169	12,596.7	8,070	65.7
	(임야대장등록지) 국 유 지	-	-	-	-	-
	(민 유 지)	15.6	7	2.0	1	-
	계	15.7	7	2.0	1	-
	(수치지적부등록지) 국 유 지	-	-	-	-	-
	(민 유 지)	-	-	-	-	-
	계	-	-	-	-	-
	합 계	9,560.5	7,176	12,598.8	8,072	65.7

목 별 총 괄

단위 { 면적 : km
지번 : 천필지

원	목장용지		임 야		광 천 지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	3.8	-	110.8	39	-	-
19	6.9	2	1,966.2	1,000	-	-
19	10.8	3	2,077.1	1,040	-	-
-	-	-	11,386.6	67	-	-
-	2.7	-	52,456.5	2,300	-	-
-	2.7	-	63,843.1	2,367	-	-
-	-	-	-	-	-	-
-	-	-	-	-	-	-
-	-	-	-	-	-	-
19	13.5	3	65,920.2	3,408	-	-

지목별 종 별		전		답		과 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2 지적 공부 미등 등록지	(미 토 부 구) 지	1.6	-	0.8	-	-
	(") 임 야	-	-	-	-	-
	계	1.6	-	0.8	-	-
	(미 토 등 록) 지	-	-	12.0	6	-
	(") 임 야	-	-	-	-	-
	(") 도 서	-	-	-	-	-
	계	-	-	12.0	6	-
합 계		1.6	-	13.1	7	-
총 계		9,562.2	7,176	12,14.9	8,079	65.7

원	목 장 용 지		임 야		광 천 지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지 번 수
-	-	-	-	-	-	-
-	-	-	6.5	-	-	-
-	-	-	7.0	-	-	-
-	-	-	-	-	-	-
-	-	-	14.2	1	-	-
-	-	-	9.0	-	-	-
-	-	-	15.1	2	-	-
-	-	-	22.2	2	-	-
19	13.5	3	65,942.4	3,410	-	-

종 별		사 적 지		묘 지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I 지 적 공 부 등 록 지	(토지대장등록지) 국 유 지	0.7	-	5.7	10
	(") 민 유 지	0.6	-	149.0	229
	계	1.3	1	154.8	240
	(임야대장등록지) 국 유 지	0.5	-	6.4	-
	(") 민 유 지	2.8	-	112.5	12
	계	3.3	-	118.9	13
	(수치지적부등록지) 국 유 지	-	-	-	-
	(") 민 유 지	-	-	-	-
	계	-	-	-	-
	합 계	4.7	1	273.8	263

단위 { 면적 : km²
지번 : 천필지

잡 종 지		미 등 록		합 계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115.5	33	-	-	5,240.9	1,835
360.3	172	-	-	27,849.6	24,781
475.8	205	-	-	33,090.6	26,617
-	-	-	-	11,640.9	151
0.9	-	-	-	52,717.9	2,405
0.9	-	-	-	64,366.9	2,557
-	-	-	-	-	-
-	-	-	-	1.5	3
-	-	-	-	1.5	3
476.7	205	-	-	97,459.1	29,177

지목별 종 별		사 적 지		묘 지	
		면 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2 지 적 공 부 미 등 동 지	(미 부 구) 토 지	-	-	-	-
	(") 임 야	-	-	-	-
	계	-	-	-	-
	(미 등 록) 토 지	-	-	-	-
	(") 임 야	-	-	-	-
	(") 도 서	-	-	-	-
	계	-	-	-	-
합 계		-	-	-	-
총 계		4.7	4	273.8	263

잡 종 지		미 등 특		합 계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지 번 수	면 적	지 번 수
-	-	171.7	30	174.8	31
-	-	796.5	37	803.1	38
-	-	968.2	68	977.9	69
-	-	-	-	113.7	10
-	-	-	-	306.7	107
-	-	-	-	0.9	-
-	-	-	-	421.3	118
-	-	968.2	68	1,399.3	188
476.7	205	968.2	68	98,858.5	29,365

5. 시 도 별

시도별	지목별	전		답		과 수 원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서 울		61.6	79	70.6	72		
부 산		11.3	23	22.6	28		
경 기		1,256.0	866	1,816.2	1,004	2.9	
강 원		1,374.0	586	612.1	342	2.3	
충 북		839.6	530	79.1	479	16.3	5
충 남		1,006.3	811	1,744.5	940	38.1	9
전 북		713	753	1,032.6	862	0.3	
전 남		1,374.2	1,180	2,109.2	1,407	0.9	
경 북		1,599.1	1,185	2,079.4	1,507	2.4	
경 남		831.3	928	1,755.7	1,423	0.1	
제 주		493.8	210	9.6	10	1.9	
합 계		9,582.2	7,176	12,611.9	8,079	65.7	

지 목 별 총 괄

단위

면적 : km²
지번 : 천필지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면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	-	197.5	49	-	-	-	-
-	-	191.7	20	-	-	-	-
1.9	-	6,324.1	373	-	-	40.0	1
0.2	-	12,969.7	266	-	-	-	-
0.2	-	5,186.5	194	-	-	-	-
7.3	2	4,946.3	315	-	-	28.0	2
0.6	-	4,795.3	302	-	-	11.0	-
1.9	-	7,527.2	586	-	-	57.4	5
0.9	-	14,416.1	607	-	-	-	-
-	-	8,224.1	574	-	-	0.5	-
-	-	1,163.3	122	-	-	-	-
13.5	3	65,942.4	3,410	-	-	138.2	9

6. 등 록 별 지

지목별 종 별		전		답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1 지 적 공 부 등 록 지	(토지대장등록지) 국 유 지	4.1	4	2.4	2
	(") 민 유 지	57.4	75	68.1	69
	계	61.6	79	70.6	72
	(임야대장등록지) 국 유 지	-	-	-	-
	(") 민 유 지	-	-	-	-
	계	-	-	-	-
	(수치지적부등록지) 국 유 지	-	-	-	-
	(") 민 유 지	-	-	-	-
	계	-	-	-	-
	합 계	61.6	79	70.6	72

목 별 종 괄 (서 울)

단위 { 면적 : km²
지번 : 천필지

과 수 원		목 장 용 지		임 야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	-	-	-	1.7	1
-	-	-	-	8.0	6
-	-	-	-	9.8	7
-	-	-	-	55.6	3
-	-	-	-	126.9	37
-	-	-	-	182.5	41
-	-	-	-	-	-
-	-	-	-	-	-
-	-	-	-	-	-
-	-	-	-	192.3	43

종 별		전		답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2 지 적 공 부 미 등 록 지	(미 부 구) 토 지	-	-	-	-
	(") 임 야	-	-	-	-
	계	-	-	-	-
	(미 등 록) 토 지	-	-	-	-
	(") 임 야	-	-	-	-
	(") 도 서	-	-	-	-
	계	-	-	-	-
	합 계				
총 계		61.6	79	70.6	72

과 수 원		특 장 용 지		임 야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	-	-	-	-	-
-	-	-	-	4.8	-
-	-	-	-	4.8	-
-	-	-	-	-	-
-	-	-	-	0.2	-
-	-	-	-	-	-
-	-	-	-	0.2	-
-	-	-	-	5.1	-
-	-	-	-	197.5	49

7. 구 별 지

구, 출장소별 지 별	전		답		임 야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중 로 구	1.4	1	-	-	9.7	-
중 구	-	-	-	-	1.5	-
동 대 문 구	2.7	3	3.8	6	7.5	1
성 동 구	3.8	5	2.0	3	5.8	1
성 북 구	0.2	-	0.3	-	9.6	1
도 봉 구	4.7	7	8.5	7	45.2	4
서 대 문 구	0.5	1	0.4	1	6.9	2
마 포 구	3.5	3	1.0	-	1.3	-
용 산 구	0.1	-	-	-	1.8	-
영 등 포 구	3.4	6	5.0	6	9.6	4
관 약 구	2.1	6	2.7	6	24.4	8
강 남 구	19.4	13	14.8	13	35.0	10
강 서 구	6.9	11	19.7	15	10.9	6
은평출장소	1.2	2	1.2	2	15.4	2
천호출장소	11.3	8	10.7	6	12.2	3
합 계	61.6	79	70.6	72	197.5	49

부 별 현 황

단위 { 면적 : km
지번 : 천필지

대		공 장 용 지		학 교 용 지		도 로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10.2	55	-	-	-	-	1.7	7
6.1	49	-	-	-	-	1.5	6
13.2	84	-	-	-	-	3.1	6
10.3	57	-	-	0.5	-	1.8	3
11.2	71	-	-	-	-	1.6	4
12.8	65	-	-	0.1	-	2.3	5
5.5	52	-	-	0.1	-	1.1	3
8.6	54	-	-	-	-	0.3	4
9.6	41	-	-	-	-	1.1	6
21.9	80	-	-	-	-	4.0	5
14.2	74	-	-	0.1	-	2.4	6
4.5	5	-	-	-	-	1.2	2
6.9	25	-	-	-	-	1.4	3
8.5	46	-	-	-	-	1.8	5
6.4	27	-	-	-	-	1.0	2
150.4	793	-	-	10	-	27.4	73

< 별첨 2 >

토지 등급가격 통계

(76.12.31 현재)

1. 지목별 구성비

2. 시도별 토지등급가격

3. 지목별 시도별 토지등급가격

(전, 남, 파수원 잡종지 27개 지목)

4. 토지 등급표

1. 지목별구성비 (과세지 + 비과세지)

구분 지목별	지 번 수 별		면 적 별		등 급 가 격 별	
	천필		천평		백만원	
계	28,216	100%	30,334,159 (98,282.6 km ²)	100%	15,487,254	100%
전	7,082	25.1	2,905,645 (9,414.2)	9.6	1,815,204	11.7
답	7,989	28.3	3,813,604 (12,356.0)	12.6	4,629,803	29.9
대	4,821	17.1	544,415 (1,763.9)	1.8	6,373,121	41.2
잡종지	214	0.8	142,453 (461.5)	0.5	259,867	1.7
임야	3,337	11.8	21,249,942 (68,849.8)	70.0	1,409,829	9.1
기타	4,771	16.9	1,678,100 (5,437.0)	5.5	999,430	6.4

※ 주 : () 는 km² 임.

2. 시도별 토지 등급가격 집계표

(지목 합계분)

구분 시도별	지번수	면적		토지등급가격 (백만원)	등급개황		
					최고	최저	평균
합계	28,216	30,334,159 천필 (98,282.6) 천평	100%	15,484,254	230	1	35
서울	1,053	164,868 km ²	0.5	4,143,863	95	31	61
부산	464	104,041 (337.0)	0.3	1,345,700	80	19	56
경기	3,156	3,164,068 (10,251.5)	10.4	1,639,470	85	3	35
강원	1,618	5,804,897 (18,807.8)	19.1	553,598	87	3	25
충북	1,656	2,264,043 (7,335.4)	7.5	598,095	90	8	31
충남	2,930	2,641,014 (8,556.8)	8.7	1,260,300	180	7	35
전북	2,988	2,488,691 (8,063.3)	8.2	953,495	80	6	34
전남	4,670	3,655,246 (11,842.9)	12.0	1,361,051	84	5	33
경북	4,820	5,905,140 (19,132.6)	19.5	2,036,694	230	4	33
경남	4,272	3,592,421 (11,639.4)	11.8	1,408,952	130	1	34
제주	584	549,729 (1,781.1)	1.8	186,091	82	10	33

※ 주: () km²임.

3. 지목별시도별토지등급가격

(지목: 전)

구분 시도별	지번수	면적 천평	토지등급 가격	등급개황		
				최고	최저	평균
합계	7,082	2,905,645 (9,414.21 km ²)	1,815,204	75	4	36
서울	55	13,318 (43.1)	133,792	75	32	55
부산	24	3,553 (115)	36,944	75	25	55
경기	853	379,677 (1,230.1)	309,540	73	4	38
강원	588	428,770 (1,363.2)	141,366	66	4	33
충북	543	252,033 (816.5)	138,982	65	15	36
충남	803	311,650 (1,009.7)	203,305	64	20	37
전북	732	213,417 (691.4)	104,422	66	20	35
전남	1,173	416,403 (1,349.1)	206,626	70	20	35
경북	1,174	482,900 (1,564.5)	307,523	68	15	36
경남	928	253,881 (822.5)	166,011	72	14	37
제주	205	150,041 (486.1)	66,187	55	19	34

※ ()는 km²임.

(지목:답)

구분 시도별	지 번 수	면 적	토지 등급 가 격	등 급 개 황		
				최 고	최 저	평 균
합 계	7,989 천필	3,813,604 천평 (12,356.0km ²)	4,629,803 백만원	76	6	41
서울	49	17,793 (57.6)	169,927	76	35	55
부산	27	6,997 (22.6)	70,345	70	32	55
경기	985	545,651 (1,767.9)	642,926	62	6	41
강원	344	197,982 (641.4)	162,657	65	10	38
충북	483	230,142 (745.6)	275,304	65	17	41
충남	932	525,732 (1,703.3)	623,735	63	25	41
전북	846	489,728 (1,586.7)	509,697	65	22	40
전남	1,387	635,803 (2,060.0)	640,125	67	22	40
경북	1,500	630,305 (2,042.1)	852,567	67	22	42
경남	1,420	530,543 (1,718.9)	679,947	66	17	41
제주	11	2,927 (94)	2,568	51	20	39

※(주): ()는 km²임.

(지 목 ; 대 지)

구분 시도별	지 번 수	면 적	토 지 등 급 가 격	등 급 개 황		
				최 고	최 저	평 균
합 계	4,821 천필	544,415 (1,763.9) km ² 천평	6,373,120 백만원	95	10	56
서 울	831	54,832 (177.6)	3,152,375	95	35	66
부 산	333	20,774 (67.6)	1,032,918	89	30	65
경 기	468	65,039 (210.7)	170,236	85	10	46
강 원	218	32,107 (104.0)	118,590	81	10	48
충 북	186	31,475 (101.9)	99,412	78	19	47
충 남	415	62,704 (203.1)	250,004	85	25	49
전 북	382	45,091 (146.0)	192,528	80	23	49
전 남	641	73,834 (239.2)	361,435	84	25	50
경 북	722	88,664 (287.2)	598,327	87	13	52
경 남	554	60,232 (195.1)	345,675	87	15	51
제 주	65	9,664 (313)	51,615	82	27	50

※ 주 ; () 는 km² 임.

4. 토 지 등

등급	가 격	등급	가 격	등급	가 격	등급	가 격	등급
1	1 원	13	16 원	25	100 원	37	700 원	49
2	2	14	18	26	120	38	800	50
3	3	15	20	27	140	39	900	51
4	4	16	25	28	160	40	1,000	52
5	5	17	30	29	180	41	1,200	53
6	6	18	35	30	200	42	1,400	54
7	7	19	40	31	250	43	1,600	55
8	8	20	50	32	300	44	1,800	56
9	9	21	60	33	350	45	2,000	57
10	10	22	70	34	400	46	2,500	58
11	12	23	80	35	500	47	3,000	59
12	14	24	90	36	600	48	3,500	60

급 표

(단위 : 1평당)

가 격	등급	가 격	등급	가 격	등급	가 격
4,000 원	61	25,000 원	73	160,000 원	85	1,000,000 원
5,000	62	30,000	74	180,000	86	1,200,000
6,000	63	35,000	75	200,000	87	1,400,000
7,000	64	40,000	76	250,000	88	1,600,000
8,000	65	50,000	77	300,000	89	1,800,000
9,000	66	60,000	78	350,000	90	2,000,000
10,000	67	70,000	79	400,000	91	2,200,000
12,000	68	80,000	80	500,000	92	2,400,000
14,000	69	90,000	81	600,000	93	2,600,000
16,000	70	100,000	82	700,000	94	2,800,000
18,000	71	120,000	83	800,000	95	3,000,000
20,000	72	140,000	84	900,000	96	3,200,000

< 별첨 3 >

토 지 시 가 조

< 서울특별시 >

동 리 별	지 대 별 구 분	상 업 지 대		
		상	중	하
신 문 로	1 가	2,000,000	1,500,000	400,000
"	2 가	800,000	600,000	-
세 종 로		2,000,000	1,200,000	600,000
예 지 동		3,000,000	2,000,000	1,000,000
인 의 동		500,000	400,000	300,000
원 남 동		500,000	300,000	-
연 지 동		600,000	400,000	300,000
효 제 동		1,000,000	600,000	400,000
연 건 동		500,000	400,000	300,000
혜 화 동		700,000	400,000	300,000
강 사 동		1,700,000	400,000	800,000
구 기 동		-	-	-

사 표 (한국감정원)

77.4 현재종로구

주 택 지 대			공 장 지 대		
상	중	하	상	중	하
300,000	250,000	200,000	-	-	-
300,000	250,000	150,000	-	-	-
-	-	-	-	-	-
500,000	400,000	300,000	-	-	-
250,000	200,000	150,000	-	-	-
250,000	200,000	150,000	-	-	-
250,000	200,000	150,000	-	-	-
300,000	200,000	150,000	-	-	-
300,000	200,000	150,000	-	-	-
250,000	200,000	150,000	-	-	-
500,000	400,000	300,000	-	-	-
100,000	80,000	30,000	-	-	-

< 별첨 4 >

토 지 시 가 조

시군	구·읍·면	리·동	상 업 지 대			주 택 지 대		
			상	중	하	상	중	하
인 천	남 구	논현동				8,000		3,000
		교잔동				5,000		3,000
		판교동				20,000		5,000
		문학동				15,000		5,000
		연수동				8,000		5,000
		청학동				8,000		5,000
		동춘동				10,000		5,000
시 구	북	부평 1 동	700,000	500,000	80,000	70,000	50,000	15,000
		부평 2 동	45,000	30,000	25,000	20,000	15,000	8,000
		부평 3 동	40,000	30,000	15,000	15,000	10,000	6,000
		십정 1 동				15,000	10,000	5,000
		십정 2 동				30,000	18,000	10,000
		부개동	40,000			25,000	15,000	10,000

사 표. (농업협동조합)

77.4 현재

공 장 지 대			농 경 지 대					
상	중	하	전			답		
			상	중	하	상	중	하
			3,000	2,000	1,000	3,000	2,000	1,000
			2,500	1,500	800	2,500	1,500	800
			3,500	2,500	1,500	3,500	2,500	2,000
			3,500	2,500	1,500	3,500	2,500	2,000
			3,500	2,500	1,500	3,500	2,500	2,000
			3,500	2,500	1,500	3,500	2,500	2,000
			3,500	2,500	1,500	3,500	2,500	2,000
			8,000	5,000	2,000	5,500	4,000	2,000
			8,000	5,000	2,000	5,000	3,000	2,000
			6,000	4,000	2,000	5,000	3,000	2,000
			5,000	3,000	2,000	5,000	3,000	2,000
			6,000	4,000	2,000	5,000	3,000	2,000
20,000			6,000	4,000	2,000	5,000	3,000	2,000

< 별첨 5 >

전국 산림기본통제조사

(77.12.31 현재)

1. 지역별 임야면적 및 입목축적

2. 수종별 임야면적 및 입목축적

3. 소유 및 임야면적 및 입목축적

1. 지역별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

구분	임야면적 (ha)	구성비(%)	임목축적 (천 ^m ³)	구성비(%)
합계	65,930.6	100.0	111,011	100.0
중부	3,657.0	5.5	15,435	13.9
동부	2,794.2	4.2	12,649	11.4
남부	2,196.5	3.3	10,271	9.3
서울	179.6	0.3	370	0.3
부산	213.3	0.3	128	0.1
경기	5,867.8	0.9	6,646	6.0
강원	7,550.9	11.5	13,932	12.6
충북	5,121.6	7.8	9,274	8.3
충남	4,891.7	7.4	6,655	6.0
전북	4,402.5	6.7	4,473	4.0
전남	7,357.6	11.2	8,186	7.4
경북	12,718.1	19.3	14,754	13.3
경남	7,908.0	12.0	5,130	4.6
제주	1,071.2	1.6	3,102	2.8

2. 수종별 임야 목적 및 입목 축적

구 분	임야 목적 (km)	구성비 (%)	입목 축적 (천m ³)	구성비 (%)
계	60,574.9	100.0	111,011	100.0
침엽수림	31,777.7	52.5	42,125	37.9
활엽수림	11,819.1	19.5	35,165	31.7
혼효림	16,932.2	27.9	33,720	30.4
주림	45.7	0.1	-	-

3. 소유 및 소유 관별 임야 면적 및 입목 축적

구 분	임야 면적 (km ²)	구 성 비 (%)	입 목 축 적 (천 m ³)	구 성 비 (%)
계	65,930.6	100.0	111,011	100.0
국 유 릫	13,079.1	19.8	47,207	42.5
민 유 릫	52,773.7	80.0	63,803	57.5
미 조 사	77.8	0.1	-	-

1. 지역별지목별토지자산액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계방												
잡종지												

2. 소유주체별·지종별 토지 자산액

	총 액	정 부	법 인	개 인
전				
담				
대 지				
임 야 지				
기 타				

※ 개인기업 부문의 지종별 자산액은 정부, 법인의 지종별 자산액의 구성비를 산출 비례추정으로 가능함.

3. 소유주체임상별 산림 자산액

		총 액	국 유 림	민 유 림	
				사 유 림	공 유 림
침엽수	성 목 치 목				
활엽수	성 목 치 목				

4. 지역별, 임상별산립 자산액

구분	세	계	서	부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울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침 업 수	상 목												
	차 목												
활 업 수	상 목												
	차 목												

< 제 98 차 >

1979.2.9

각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처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실무자와 자료처리 실무자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하였음.

1. 자료처리업무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각 지부의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업무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부에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가. 한국은행은 자료처리 요원을 추가 확보 Master File 을

6.30 까지 기일 엄수 제출토록 하였음.

나. 한국산업은행은 자료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Programmer 를 본회의에 참석시키고 자료처리 일정에 따라 동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음.

자료처리 추진 계획 및 실적

업무내용 기관	카드종량	천 공		완료예정일	제출일	비 고
		실 적	완료예정일			
한국은행	60 만매	20%	79.3.31	79.6.30	79.7.30	업무량과다 로 1 개월간 업무지연
한국산업은행	100 만매	-			79.6.30	용역계약 후 즉시 실시 예정
농수산부	40 만매	50 %	79.2.24	79.2.15	79.6.30	
중소기업은행	30 만매	40 %		79.3.5	79.6.30	
국민은행	30 만매	100 %	79.2.20	79.3.3	79.6.30	
조사통계국	14 만매	100 %		79.3.20	79.6.30	

2. 종합결과표 검토

가. 결과표의 수치단위는 10억원으로 하고 소수점 1자리까지 작성함. 단, 각 결과표의 소계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 결과표의 총계의 수치는 동일하여야 함.

나. 지역별 분류에서 산업은행 자산중 해외자산이 본사 계정으로 파악되어 있으므로 조사표를 재확인 분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 다. 사회간접 자본, 정부관리 기업 자산은 조사표를 재검토 Code 를 부여하여 동자산의 분류가 가능토록 함.
- 라. 취득년도별 분류에서 사회간접 자본, 물품 자산은 자산특성에 따라 취득년도가 미상인 경우가 발생하므로 취득년도별 분류에 미상을 추가하고 동 자산에 한하여 제표하도록 함.
- 마. 평균 경과년수, 평균내용년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Weight 를 적용시킬때 Gross, Net 적용여부는 관계 참고문헌을 연구 결정하기로 함.
- 바. 잔가율 적용에 있어서 소요시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잔가율표를 적용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공식을 적용하기로 함.

(잔가율표 적용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m ; 경과년수

n ; 내용년수

$$\text{공식} \frac{1}{10^{\frac{m}{n}}}$$

단, $m > 2n$ 일때 잔가율은 0.01 임.

- 사. 농업 및 임업, 어업산업분류에 있어서 농업서어비스, 수렵업의 자산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류자체는 그대로 두기로 함.

3. 잠정집계 결과작성

- 가. 잠정집계 결과를 3.30 까지 기일 엄수 작성토록 각지부에 당부하였음.

- 나. 동 잠정집계결과 작성을 위하여 각 지부는 결과표(안)을 작성 차기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제 99차>

1979. 2.28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시안) 검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시안)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으며 각지부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함. (별첨 1)

가. 자산분류

○ 소유주체별 분류

정부, 법인, 개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추가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임상별 분류

침엽수림, 활엽수림 이외에 혼효림을 추가하여 분류하기로 함. 이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과표 일부를 수정하기로 함. (별첨 2)

나. 평가방법

표준지가 없는 등급의 조정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표준지 자가 조사후 표준지 가격분포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기로 함.

1) 보간법

(가) 산술 평균하는 방법

(나) 표준지 총가액으로 조정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가 없는
전 등급의 조정율로 사용

2) 회귀선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다. 토지등급 가격통계 면적 및 지목 조정

면적자료는 원칙적으로 지적통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지적통계 면적 및 지목을 이용하여 토지등급 가격통계 면적 및 지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한국산업은행에서 담당하기로 함.

라. 업무추진 일정

산림청의 경우 조립, 산림보호 등으로 3-4월경이 가장 바쁜 기간이므로 기본계획(79.8까지 동결과 분석가능)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내의 일정을 조정하기로 함.

2. 잠정집계 결과작성

잠정집계표는 별첨 양식(4)에 맞추고 기계사용 문제로 3월까지 잠정집계 결과작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은행은 당국 기계를 사용하여 동 결과를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별첨 3)

3. 종합부문 결과표 검토

가. 해외자산분류

지역별 분류에서 법인자산중 해외자산을 본사 계정으로 간주하여 제표하기로 하였음.

나.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평균내용년수 및 경과년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로 함.

(내용년수 × 총자산액)

$$\text{가) 평균내용년수} = \frac{\text{총 자산액}}{\text{총 자산액}}$$

(77-취득년도) × 취득년도의 총자산액

$$\text{나) 평균경과년수} = \frac{\text{총 자산액}}{\text{총 자산액}}$$

- 첨 부 ;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 (시안)
2. " " " 결과표
3. 잠정 집계 결과표

〈 별첨 1 〉 토지및산림자산평가지침서 〈시안〉

차 례

1. 목 적	103
2. 지역 및 자산의 범위	103
3. 자산분류	104
4. 추계 방법	105
5. 조사 방법	107
6. 결과표	107
7. 추진 계획 일정	107
8. 참고자료	108
가. 시도별, 지목별 토지 자산 추계 방법 예	108
나. 지적통계와 토지등급 가격통계의 지목별 대비	111
다. 추계 담당기관별 표준지	114
라. 지목의 구분	115

1. 목 적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중 토지 및 산림자산을 평가하여 일국의 총가용 생산능력과 실물자산에 대한 금융적 수요를 추정하고 나가서 국민대차 대조표의 편제와 각종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역 및 자산의 범위

가. 지역의 범위

우리나라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영역에 걸쳐 조사함.

나. 자산의 범위

재생산 불가능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토지 및 산림을 본조사의 평가대상 자산으로 함.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 (UN 권고분류)

1) 토 지 (Land)

가) 대지 (Land underlying buildings and works)

건축물 부지, 농장접근로, 농장마당

나) 농경지 (Cultivated Land)

재배지, 과수원, 포도원, 농기업 구성토지

다) 기 타(Other)

휴양지, 공원, 놀이터, 정원, 공원, 사도 등

2) 산림 (Timber tracts and Forests)

삼림, 삼림지, 벌판, 임도, 잡목덤불과 그 땅

3) 지하자원 및 추출광상

4) 수산자원

5) 문화재

3. 자산분류

가. 소유 주체별 분류

1) 정 부

지방자치단체

2) 법 인

3) 개 인

나. 지역별 분류

서울특별시, 부산시, 각도별로 분류

다. 지목 (임상) 별 분류

1) 지목별 분류 (토지)

지적통계를 기초로 전, 담, 대지, 임야지, 기타로 구분함.

2) 임상별 분류 (산림)

침엽수 및 활엽수로 분류하고 다시 성목 (흉고직경 6cm

이상) 및 치목으로 분류함.

4. 추계 방법

가. 토지자산추계

1) 추계 기초자료

○ 면적자료 ; 내무부 지적통계 및 1977년 국부통계조사 등 토지부문 조사결과

※ 참고 ; 정부, 법인부문 토지면적 및 장부가액을 소유 주체별로 조사하였음. 따라서 소재지별로는 파악되어 있지 않음.

○ 가격자료 ; 1. 내무부 토지등급 가격통계의 토지의 지목별 등급별 가격
2. 지목별, 등급별 표준지 가격조사 자료 (약 9,000 표준지 단가)

2) 추계 방법

가) 토지총자산액 = 과세기준 토지가액 × 조정을

$$= \sum_{i=1}^{24} \sum_{j=1}^{11} \sum_{k=1}^{\ell} (A_{ijk} \cdot P_{ijk}) \times R_{ijk}$$

A ; 지목별 등급별 면적

P ; 지목별 등급별 평당 단가 (과세기준)

k ; 등 급 (ℓ)

J ; 시 도 (11)

i ; 지 목 (24)

R ; 지목별 등급별 조정율

$$\text{나) 전국의 지목별 총자산액} = \sum_{j=1}^{11} \sum_{k=1}^{\ell} (A_{ijk} \cdot P_{ijk}) \times R_{ijk}$$

$$\text{다) X도의 총자산액} = \sum_{i=1}^{24} \sum_{k=1}^{\ell} (A_{ijk} \cdot P_{ijk}) \times R_{ijk}$$

$$\text{라) X도의 지목별 총자산액} = \sum_{k=1}^{\ell} (A_{ijk} \cdot P_{ijk}) \times P_{ijk}$$

※ 조정을 산출방법

표준지 조사가격과 토지등급가격통계의 등급별 가액과의
차액의 비를 조정율로 함. (참고자료표 "가" 참조)

2) 산림자산추계 (입목)

가) 성 림 (평균흉고직경 6cm 이상 입목)

○ 추계 방법

입목축적 × 단가 (거래가격)

○ 추계 자료

입목축적: 77년말 현재의 산림기본통계

입목단가: 시군별, 임상별 77.6-12까지의 민유림

(사·공유림)의 거래가격을 파악:

단, 국유림은 각 소관별 77년도 입목매각

실적으로 산출

나) 치수림 (평균흉고직경 6cm 미만 입목)

치수림은 조림치수와 천연치수로 구분되며 천연치수의 육목은 노동력 투입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으므로 치수림의 평가는 조림치수에 한한다.

○ 추계 방법

연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무육 투자액을 이용 평가

○ 추계 자료

연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실적통계

5. 조사방법

조사 부문	담당 기관	조사 방법	비 고
가. 정부 및 법인 소유 토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정부 및 법인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지종별 토지면적 및 장부금액을 조사	1977년 국부통계 조사에 첨부조사 완료
나. 표준지 거래 가격 조사	농수산부 산림청 한국산업은행	약 9,000개 표준지 (토지등급 가격통계) 가격을 거래사례 비례법으로 조사	각 지목별로 분담하여 79.4월 실시예정
다. 입목 가격 조사	산림청	시군별, 임상별 거래 가격을 행정기관을 통한 조사	영림서를 통하여 79.3월 실시예정

6. 결과표

(별 칩)

7. 추진계획 일정

가. 토지 및 산림 자산 평가지침서 작성 (79.1-79.2)

나. 시험조사 (79.3)

다. 실 사 (79.4-5)

라. 추계 작업 (79.6-7)

마. 분 석 (79.8)

바. 공 표 (79.12)

8. 참고자료

<가> 시도별, 지목별 토지 자산 추계방법 예

지역 : 충북

지목 : 대지

등 급	단 가	등급별가액 (천원)	표준지 평균단가	조정율	77.12.31 현재가액	표준지 개 수
19	40	490				
20						
21	60	187				
22	70	14				
23	80	2,833				
24	90	2,049				
25	100	2,162				
26	120	4,808				
27	140	5,113				
28	160	21,209				
29	180	8,254				
30	200	111,257				
31	250	157,120				
32	300	502,117	500	1.7	853,599	1
33	350	534,495				
34	400	1,417,966	600	1.5	2,126,949	5
35	500	1,863,302	700	1.4	2,608,623	3

등 급	단 가	등급별가액 (천원)	표준지 평균단가	조 정 율	77.12.31 현재가액	표준지 개 수
36	600	2,217,358	1,200	2.0	4,434,716	2
37	700	2,142,842				6
38	800	1,344,627				9
39	900	476,830				4
40	1,000	1,011,627				12
41	1,200	663,208				8
42	1,400	387,026				6
43	1,600	734,101				5
44	1,800	454,818				2
45	2,000	906,286				16
46	2,500	1,154,596				5
47	3,000	848,486				2
48	3,500	1,464,300				2
49	4,000	1,716,328				3
50	5,000	2,328,521				3
51	6,000	1,847,685				
52	7,000	1,644,271				4
53	8,000	2,161,714				5
54	9,000	1,629,461				

등 급	단 가	등급별가액 (천 원)	표준지 평균단가	조 정 율	77.12.31 현재가액	표준지 개 수
55	10,000	1,936,638				2
56	12,000	2,674,294				5
57	14,000	2,322,133				
58	16,000	2,977,251				
59	18,000	2,106,176				
60	20,000	5,179,558				2
61	25,000	3,643,182				
62	30,000	4,364,745				1
63	35,000	3,518,266				2
64	40,000	4,228,720				4
65	50,000	3,735,325				8
66	60,000	3,066,000				
67	70,000	2,874,039				
68	80,000	2,166,544				
69	90,000	1,351,305				2
70	100,000	1,872,380				
71	120,000	1,548,996				
72	140,000	1,273,608				
73	160,000	1,853,792				3
74	180,000	1,066,140				1

등 급	단 가	등급별가액 (천 원)	표 준 지 평균 단가	조 정 율	77.12.31 현재 가액	표준지 개 수
75	200,000	1,017,880				
76	250,000	395,725				1
77	300,000	65,820				
78	350,000	37,770				2
		84,617				136

< 나 > 지적통계와 토지등급 가격통계의 지목별 면적대비

지적통계
77.12.31
토지등급가격통계
76.12.31

(1) 전치목

단위 : 천평

지 목	지 적 통 계		토 지 등 급 가 격 통 계			토지등급통 계포함율	
	면적(A)	비율	면적(B)	과세지(c)	비과세지	$\frac{B}{A}$	$\frac{C}{A}$
전	2,951,303	9.7	2,905,644	2,811,021	94,623	0.98	0.95
답	3,892,592	12.8	3,813,604	3,765,727	47,877	0.97	0.96
과수원	20,286	0	7	7	0	-	-
북장용지	4,172	0	-	-	-	-	-
임야	20,352,601	66.6	21,249,941	17,922,149	3,327,792	1.04	0.88
광천지	(227)	0	(209)	(143)	(61)	0.92	(0.62)
염전	42,665	0.1	41,238	38,515	2,722	0.96	0.90
대	540,072	1.8	544,415	510,191	34,224	1.00	0.94

지 목	지 적 통 계		토 지 등 급 가 격 통 계			토 지 등 급 통 계	
	면 적(A)	비 율	면 적(B)	과 세 지(C)	비 과 세 지	$\frac{B}{A}$	$\frac{C}{A}$
공장용지	5,259	-	6	2	4	-	-
학교용지	15,614	-	648	-	648	0.04	
도 로	417,298	1.4	324,316	-	324,316	0.77	
철도용지	32,399	0.1	18,971	71	18,899	0.58	
하 천	1,051,552	3.5	718,352	-	718,352	0.68	
제 방	24,839	0.1	26,593	-	26,593	1.07	
구 거	428,222	1.4	286,521	-	286,521	0.66	
유 지	188,169	0.6	162,250	-	162,250	0.86	
수도용지	6,192	-	2,896	277	2,619	0.47	0.04
공 원	1,108	-	784	-	784	0.70	
운 동 장	162	-	-	-	-	-	
유 원 지	520	-	57	57	-	0.10	0.10
종교용지	4,861	-	114	-	114	0.02	
사 적 지	1,468	-	22	-	22	0.01	
요 지	84,525	0.3	74,322	-	74,322	0.87	
잡 종 지	147,151	0.5	142,453	108,554	33,898	0.96	0.73
미 지 목	298,581	1.0					
사 찰 지	-	-	2,055	29	2,026		
성 첩	-	-	280		280		
철도선로	-	-	10,324		10,324		
수도선로	-	-	815		815		
지 소	-	-	7,528	4,384	3,144		
합 계	30,511,884	-	30,334,159				

(2) 주요지목

단위 : 천평

지 목	지 적 통 계		토지등급가격통계		$\frac{B}{A}$	
	면적(A)	구성비	면적(B)	구성비		
전	2,951,303	9.7	2,905,644	9.6	0.98	
답	3,892,592	12.8	3,813,604	12.6	0.97	
임야	20,352,601	66.6	21,249,941	70.1	1.04	
대지	540,072	1.8	544,415	1.8	1.00	
기타	하천	1,051,552	3.5	718,352	2.4	0.68
	구거	428,222	1.4	286,521	0.9	0.66
	도로	417,298	1.4	324,316	1.1	0.77
	기타	878,244	2.9	491,366	1.6	0.56
합계	30,511,884	10.0	30,334,159	100		

(3) 농 경 지

단위 : 천평

지목	지 적 통 계		토지등급가격통계		작 물 통 계		C/A
	면적(A)	구 성 비	면적(B)	구 성 비	면적(C)	구 성 비	
전	2,951,303	0.43	2,905,644	0.43	2,515,914	0.37	0.85
답	3,892,592	0.57	3,813,604	0.57	3,942,062	0.59	1.01
과수원	20,286	0	7	0	291,393	0.04	14.4
합 계	6,864,181	100	6,719,255	100	6,749,369	100	0.98

<다> 추계 담당 기관별 표준지

농수산부

전 : 1909
 답 : 1999
 과수원 : 486
 목장용지 : 146

4540

산림청

임야 : 1598

한국산업은행

대	:	2869	}	3128
공장용지	:	98		
유원지	:	41		
운동장용지	:	2		
염 전	:	98		
광천지	:	20		

학교용지	제 방	종교용지
도 로	구 거	사적지
철도용지	유 지	묘 지
하 천	수도용지	잡종지
	공 원	24 개지목

<라> 지 목 의 구 분

(지적법 시행령 제 5 조 1977.12.31)

1. 전

밭을 대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연, 미나리, 백사, 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사력지, 사지,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7. 염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8. 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도시계획 구역에 있어 공업지역내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 구역 이외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0.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3.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14. 제 방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
달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5. 구 거

용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16. 유 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등의 토지는 "유
지"로 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18. 공 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
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공
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19. 운동장

육외에서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
육경기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경기장과 기타 전

용경기장용의 토지는 “운동장”으로 한다.

20. 유원지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골프장, 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키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2.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3.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불치장, 채석장, 토취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우물등과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 별첨 2 〉 특지 및 산림자산 결과표
 1. 지역별지목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잡종지					

별 토 지 자 산 액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2. 소유주체별, 지중별 토지 자산액

	총 액	정 부	법 인	개 인
전				
답				
대 지				
임 야 지				
기 타				

※ 개인기업 부분의 지중별 자산액은 정부, 법인의 지중별 자산액의 구성비를 산출 비례추정으로 가능함.

3. 소유주체, 임상별 산림 자산액

		총 액	국유림	민 유 림	
				사 유 림	공 유 림
활 엽 수	성 목				
	치 목				
활 엽 수	성 목				
	치 목				

4. 지역별 임상별 산림자산액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 열 수	성 치 목 부												
활 열 수	성 치 목 목												

< 별첨 3 > 잠정 집계 결과표
 소유주체자산 중분류별

소유주체 자산분류	총액	정 부 부 문			
		합 계	일반정부	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총 계					
유형 고정 자산					
10. 건 물					
11. 구 축 물					
12. 기계 및 장치					
13. 선 박					
14. 차량 및 운반구					
15. 공구 기구 및 비 품					
16. 건설가계정					
17. 대 동 식 물					
18. 가 계 자 산					
재 고 자 산					
대 외 순 자 산					

자 산 액 < 총자산액 , 순자산액 >

기 업 부 문			비 영 리	기계부분	대외순자산
합 계	법 인	개 인 기 업	단 체 부 문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자산중분류별

	전 산 업						
	총 액	공 공 기 업			민 간 기 업		
		계	정부기업	정부관 리기업	계	법인	개인기업
총 액							
유형고정자산							
10. 건 물							
11. 구 축 물							
12. 기 계 및 장 치							
13. 선 박							
14. 차 량 및 구 공구기구							
15. 및 비 품							
16. 건 설 가 계 정							
17. 대 동 식 물							
재 고 자 산							

총자산액 및 순자산액 <소유자산>

1. 농 림 수 산 업						
총액	공 공 기 업			민 간 기 업		
	계	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계	법 인	개 인 기 업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중분류

	전 산														
	총 액			공 공 기 업									민		
				총 액			정 부 기 업			정 부 관 리 기 업					
	총액	자기 소유	임차	합계	자기 소유	임차	계	자기 소유	임차	계	자기 소유	임차	합계	자기 소유	임차
1. 유형고정 자산															
10. 건 물															
11. 기계 및 장치															
12. 선 박															
13. 차량 및 운반구															
14. 공구 및 가구비품															
⋮															
⋮															
⋮															
⋮															
⋮															
⋮															

자기소유임차별 유형고정자산액 (사용자산)

(단위 : 10억원)

업						농업, 수림업, 임업, 어업								
간 기 업						총 액			공 공 기 업					
민 간 기 업			개 인 기 업						총 액			정 부 기 업		
계	자기 소유	임차	계	자기 소유	임차	총액	자기 소유	임차	합계	자기 소유	임차	계	자기 소유	임차

기업부문의 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중분류

	전 산														
	총 액			공 공 기 업									민		
	총 액			정 부 가 업			정 부 관 리 기 업			총 액					
	총액	자기 사용	대여	합계	자기 사용	대여	계	자기 사용	대여	계	자기 사용	대여	합계	자기 사용	대여
유형고정자산															
전 물															
기 제 및 장 치															
선 박															
차 량 및 운 반 구															
공 구 및 가 구 비 품															
.....															
.....															
.....															
.....															

자기사용 대여별 유형고정자산액 (소유자산)

(단위: 10억원)

업						1. 농업, 수산업, 임업, 어업									
간 기 업						총 액			공 공 기 업						
법 인 기 업			개 인 기 업						총 액			정 부 기 업			
계	자기 사용	대여	계	자기 사용	대여	총액	자기 사용	대여	합계	자기 사용	대여	계	자기 사용	대여	

<제 100 차>

1979.3.8

각 부문별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Spacing Chart 작성방법에 관하여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Spacing Chart 를 참고하여 각지부별로 3매씩 편집용 결과표를 작성 차기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별첨 1참조)

1. 결과표 단위는 잠정적으로 10.억으로하고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작성하기로 함. 단, 개인기업 부문, 가계 부문은 필요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작성하기로 함.
2. 편집용 결과표는 선 14 에서 선 112 범위내에서 작성할 것.
3. 편집용 결과표중 우측에 여분이 있는 경우는 자산분류 또는 그 부호를 한번 더 수록함.
4.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이 작성 이용하기로 함.
 - 가. 산업분류 영문표기는 한국표준 산업분류 (1975 발간) 에 수록되어 있는 표기를 그대로 따르기로 함.
 - 나. 기타 자산분류, 소유주체의 영문표기는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영문 표기를 기본으로 하여 차기 회의에서 통일함 (별첨 2 참조)

- 첨 부 ; 1. 편집용 결과표 (Spacing Chart)
2. 자산분류, 소유주체 영문표기

〈 별첨 1 〉 편집용 결과표(Spacing Chart)
 第1表 資産小分類別國富總額(所有資産)全國

Table 1. National wealth (Reproducible tangible fixed Assets and stocks) by Type of Assets(major group)

資 産 分 類 Type of assets	總資産額 Gross	純資産額 Net	總純比率 N/G	總資産額의構成(%) Composition (%) of gross Value			純資産額의構成(%) Composition of net Value		
				構成 比	大分 類別 構成 比	中分 類別 構成 比	構成 比	大分 類別 構成 比	中分 類別 構成 比
國 富 總 額									
1. 有形固定資産									
10. 建 物									
101 住居用建物									
102 非住居用建物									
103 建物附屬設備									
11 構 築 物									
111 交通施設									
112 發電及送配電施設									
113 水利・治水 及給水施設									
114 其 他 施設									

資 產 分 類	總資產額	純資產額	總純比率	總資產額の構成(%)			純資產額の構成比		
				Composition (%) of gross Value			Composiri-on of net Value		
Type. of assets	Gross	Net	N/G	構成比	大分 類別 構成 比	中分 類別 構成 比	構成比	大分 類別 構成 比	中分 類別 構成 比
12 機械及裝費									
13 船 船									
131 鋼 船									
132 木 船									
133 其他船 船									
14 車輛及運搬具									
141 軌道車 輛									
142 自 動 車									
143 航 空 機									
144 其他車輛及 運 搬 具									
15 工具器具及備品									
151 工 具									
152 器具及備品									
16 建設仮計定									
17 大 動 植 物									
171 動 物									
172 植 物									
18 家計資産									
2 在 庫 資 産									
21 原 材 料									
22 半製品及在工品									
23 完製品及商品									
24 貯 蔵 品									

< 별첨 2 >

자산분류 (Type of Assets)

- | | |
|--------------------|--|
| 1. 유형고정 자산 | Tangible fixed assets |
| 10. 건 물 | Buildings |
| 101. 주거용건물 | Residential buildings |
| 102. 비주거용건물 | Non-residential buildings |
| 103. 건물부속설비 | Buildings equipments |
| 11. 구축물 | Structures (other than buildings) |
| 111. 교통시설 | Traffic Facilities |
| 112. 발전 및 송배전시설 | Generating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
| 113. 수리, 치수 및 급수시설 | |
| 114. 기타시설 | Other equipments |
| 12. 기계 및 장치 | Machinery and equipment |
| 13. 선 박 | Ships |
| 131. 강 선 | Steel ships |
| 132. 목 선 | Wooden ships |
| 133. 기타 선박 | Other ships |
| 14. 차량 및 운반구 | Vehicles and transport equipments |
| 141. 궤도 차량 | Railway vehicles |
| 142. 자동차 | Motor vehicles |

143. 항공기	Aircrafts
144. 기타 차량운반구	Other transport equipments
15. 공구기구 및 비품	Tools and furnitures
151. 공 구	Tools
152. 기구 및 비품	
16. 건설가계정	Construction work in progress
17. 대동식물	Big animals and plants
171. 동 물	Animals
172. 식 물	Plants
18. 가계 자산	Households furnitures
2. 재고자산	Inventories
21. 원재료	Raw materials
22. 반제품 및 재공품	Semi-finished goods
23. 완제품 및 상품	Finished products
24. 저장품	Storages
정 부	Public
민 간	Private
정부기관	Centr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사회간접 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공공기업	Public enterprises
민간기업	Private enterprises
정부기업	Government enterprises
정부관리기업	Government control(run) enterprises
법인기업	Incorporated enterprises
개인사업체	Unincorporated enterprises
비영리단체부분	Non-profit enterprises
가계부분	Household
• 신 품	Acquisition of new assets
중 고 품	Purchase of secondhand assets
평균내용년수	L(Average Expected Life time of use)
평균경과년수	E(Average years Elapsed)
경 과 율	E / L
자기소유	Owner ship
임 차	Non-owner ship
취득년차	Time of Assets acquisition
자기사용	Use
대 여	Non-use
총 액	Total
소 계	Sub total

< 제 101 차 >

1979. 3.16

1. 각 부문별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각 지부에서 작성한 편집용 결과표(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4.10 까지 각 지부별 결과표의 Spacing Chart 를 작성 본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가. 편집용 결과표의 표측은 선 14 에서 선 112 범위 이내에서 작성할것. 단, 각 결과표의 주를 기재할 경우가 있는 경우 수의기재 폭만큼 축소하여 작성함.

나. 편집용 결과표의 표두는 각 결과표의 특성에 따라 적의 조정함.

다. 개인기업 부문의 결과표는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공동으로 작성함.

라. 활자의 크기, 형태 등은 본 Spacing Chart 를 작성후 결정하기로 함.

<제 102 차 >

1979.3.23

1. 업무진도 평가

각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별첨 자료처리 추진계획 및 실적을 평가 검토하고 각지부는 계획에 차질없이 동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음. (별첨 참조)

2. 잠정치 집계결과 분석업무 추진계획

잠정치 집계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음.

가. 한국은행 (김재수 조사역)

가) 68년 국부통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나) GNP 등 관련통계와 비교분석

나. 국민은행 (남규홍 조사역)

가) 일본등 관련국과의 국제비교 분석

3.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하여 각 담당기관은 79.4 월초에 지침서를 확정하여 동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토지평가의 기초자료로서 내무부의 지적통계 및 토지등급가격통계 이외에 감정원 토지시가자료, 농협토지 시가자료등 관계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토지자산 평가의 타당성과 결과자료의 검증에 이용하기로 하였음.

4. 기타사항

한국은행에서 작성 완료한 대외 순자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는 담당기관인 한국은행에서 4월중에 작성하기로 하였음.

첨 부 : 자료처리추진계획 및 실적

<별첨>

국부통계조사자료처리

		조사표결과	카드매수	천공 및 검공
한국은행	계획	78.6.1-12.31	60 만매	79.1.1- 3.31
	실적	100 %		80 % (79.3.31)
한국산업은행	계획	78.10.1- ^{79.} 3.31	100 만매	78.12.1-79.5.31
	실적	100 %		
농수산부	계획	78.7.21- ^{79.} 1.31	40 만매	78.10.1-79.2.28
	실적	100 %		100 %
중소기업은행	계획	78.7.21- ^{79.} 1.31	30 만매	78.10.1-79.2.28
	실적	100 %		100 %
국민은행	계획	78.7.21- ^{79.} 1.31	30 만매	78.10.1-79.2.28
	실적	100 %		100 %
조사통계국	계획	78.5.1-9.31	14 만매	78.7.1-11.30
	실적	100 %		100 %

() 은 완료예정일

추진계획 및 실적

Editing	잠정 집계 제출 과일	Master Tape 제출 일	결과표분석	보고서발간
79.4.1-5.31	79.3.31 70 %	79.7.31 -	79.6.1-7.31 -	79.7.1-9.30 9.1-11.30
79.1.1-6.30	79.3.31	79.6.30 -	79.7.1-9.30 -	79.9.1-11.30 -
78.11.1-79.3.31 2차 editing 완료	79.3.31 80 %	79.6.30 -	79.3.1-7.31 -	79.4.1-9.30 -
78.11.1-79.3.31 2차 editing 완료	79.3.31 70 %	79.6.30 -	79.3.1-7.31 -	79.4.1-9.30 -
78.11.1-79.3.31 5차 editing 완료	79.3.31 90 %	79.6.30 -	79.3.1-7.31 -	79.4.1-9.30 -
78.12.10-79.3.31 3차 editing 완료	79.3.31 90 %	79.6.30 -	79.4.1-8.31 -	79.9.1-9.30

<제 103.104 차>

1979.4.9
4.11

1. 잠정치 집계결과

각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잠정치 결과를 조속히 작성토록 당부하였고 각 지부별 잠정치 결과가 완료되는 즉시 분석 계획을 수립 동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잠정치 집계결과 작성현황

담 당 기 관	현 황
조 사 통 계 국	완 료
한 국 은 행	"
한 국 산 업 은 행	4.20 완료 예정
농 수 산 부	4.18 "
중 소 기 업 은 행	"
국 민 은 행	완 료

2.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

각 지부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림자산추계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첨과 같은 평가지침서, 조사표 및 결과표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나 추후 연구 확정 하기로 하였음. (별첨 1,2 참조)

가. 소유주체별 분류

77년 국부통계 조사에서 파악된 정부 법인 소유 토지 면적을 이용하여 정부, 법인, 개인으로 구분할 예정이나 소재지역별로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국으로만 가능하며 법인 소유 토지는 일부가 누락되어 조사가 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동자료의 결과를 확인하여 결정하기로 함.

나. 조정율 산출 방법

- 1) 표준지가 없는 지목의 조정율은 별도로 표본 실계를 하여 조사조정율을 산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지목과 유사한 지목의 조정율을 적용시키는 방안과 동지역에 해당하는 전지목의 조정율을 평균하여 적용시키는 방안 중 추후 연구하여 타당성 있는 안을 채택하기로 함.
- 2) 표준지가 없는 지목의 조정율은 상하 등급 가액을 이용하여 보간법, 외삽법 등을 사용하는 방안과 면적이 기미된 비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중 표준지의 분포, 가격 자료의 조사결과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함.

다. 조사방법

77년말 현재 표준지 지목이 변경된 경우 대상 토지의 전

부가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지목 변경한 사실에 관계 없이 시가를 조사 원래 지목의 조정율을 산출하나 동표준지 중 일부가 지목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양지목의 시가를 조사하여 면적으로 가중한 평균 단가를 산출하여 조정율을 작성하는 방안을 시험조사 후 결정하기로 함.

첨부;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

2. 결과표 및 조사표 (제 111 차 회의결과 참조)

< 제 105 차 >

1979.4.25

1. 잠정치 집계결과 검토

가. 각지부에서 작성한 잠정치 집계 결과중 미비된 일부 결과표를 보완하여 조사본부에서 취합 정리하기로 하였고 필요한 결과표 및 분석표를 작성하여 본실무자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잠정치 집계결과

단위 : 조원

	총자산액(G)		순자산액(N)		N/G (%)
		구 성비		구 성비	
1. 정 부 부 문	9.4		6.4		68.1
2. 별 인 부 문	17.4		9.7		51.7
3. 개 인 기 업 부 문					
가. 농 립 어 업	4.4		3.0		68.2
나. 광 공 업 및 도 소 매 업	5.9		3.2		54.2
다. 운 수 금 융 기 타 서 어 비 스 업	3.8		1.9		50.0
4. 가 계 부 문	22.5		10.2		45.3
총 계	63.4		34.4		54.3

나. 잠정치 집계표의 추가작성

중고품 자산평가의 타당성은 검토할 수 있도록 현 평가방법인 중고품 자산취득가격의 신품취득가격 환원법 이외에 중고품도 신품의 신규 취득과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잠정치 제표를 추가 작성하기로 함.

2. 토지 및 산림 자산

각 지부의 업무량, 조사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각지부의 조사원을 상호 활용하는 문제는 한국산업은행에서 토지자산 실사시 필요한 조사원을 지역별로 명확히 파악하여 농수산부에 지원 요청하기로 함.

<제 106 차>

1979.5.9

1. 조사본부에서 취합 정리한 국부통계 잠정 집계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각지부는 당해 지부의 집계 결과를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본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2. 또한 동 결과 분석을 위하여 제12차 지부장회의(79.4.18)의 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잠정치 분석계획

1. 분석방법

가. 기존자료(1980년 국부통계조사결과 년도별 자료 및 관련 통계, 일본 등 외국의 국부조사 결과)를 이용 각 기관별로 분담하여 분석

(1) 한국은행

○ 68년 국부통계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

○ 년도별 자료와 비교 분석

(2) 중소기업은행

○ 광공업 및 기타 관련 통계와 비교 분석

(3) 국민은행

○ 일본 등 국제자료와의 비교 분석

3) 추진일정

가. 각 기관별 제출자료 종합 및 검토(79.5.10)

나. 각 기관별 담당부서 분석(79.5.19)

다. 국부통계 실무자 회의에서 종합검토분석(79.5.26)

라. 잠정치 결과 보고안 작성 완료(76.6.2)

<제 107 차>

1979.5.15

1. 잠정치 집계결과 검토

기존자료를 이용 각 기관별로 분담하여 분석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 하였으며 각지부는 동 내용을 5.19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단, 기존자료 (GNP 각종 Census 등) Gross 개념과 본 국부통계조사 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므로 본 분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부는 제9차 자문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대안으로도 결과표를 집계조사본부에 제출 검토하기로 하였음.

가. 잠정집계 결과와 GNP 와 비교분석 (별첨 1 참조)

나. " " 광공업 Census 와 비교분석 (별첨 2 참조)

광공업 Census 의 73 년말 유형고정 자산액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순증가액에 물가배율을 적용한 자산액을 73 년말 유형고정자산액에 가산하여 77 년말 유형고정자산액을 작성 비교 분석함.

다. 잠정집계결과와 일본의 국부자료와 비교분석

일본과 우리나라 (77 년말) 의 GDP 에 있어서 총 고정자본

형성비율 (재고자산 제외) 이 유사한 시기의 국부자산액을 상호 비교 분석함.

예 : 총 고정자본 형성 비율

일본 ; 1953 ; 20 % '58 ; 26 % '70 ; 37 %

우리나라 ; '53 ; 7 % '58 ; 10 % 63 ; 14 %

'67 ; 22 % '77 ; 25 %

2. 결과표 단위 결정

결과표 단위는 종합부문, 정부부문은 10 억원 단위로 하고 소수점 1 자리까지 표시하고 법인, 개인기업, 가계 부문은 100 만 원 단위로 작성하기로 하였음.

첨 부 ; 1. 잠정집계결과와 GNP 와 비교 분석

2. " " 광공업 Census 와 비교분석

< 별첨 1 >

국부액과 GNP 의 비교

	68 (A)	77 (B)	77/68	비 고
국부액(1) Gross	5,460.1	63,035.1	11.5	56,348.2
Net	3,109.3	34,503.0	11.0	32,087.8
국부액(2) Gross	5,460.1	52,963.5	9.7	
Net	3,109.3	31,970.8	10.3	
물 가 배 율			3.23	7.75
W P I	36.2	122.2	3.38	8.11
GNP, def			4.30	10.32
GNP (경상)	1,652.93	16,652.35	10.07	
GDP (")	1,629.75	16,753.64	10.28	
NDP (")	1,524.29	15,370.82	10.08	
GNP (불변)	5,195.61	12,175.23	2.34	
GDP (")	5,099.92	12,214.96	2.40	

국부액(1) : 간이 집계국부액

국부액(2) : GNP 추계액

자산 형태별 소유자별 비교 (총자산액)

자산형태별	68	%	77(1)	%	증가	77(2)	%	증가	(1)-(2)	(1)/(2)
총액	5.5	100	63.0	100	11.5	53.0	100	9.6	10.0	1.19
건물	2.8	50.9	24.7	39.2	8.8	20.0	37.8	6.9	6.4	1.32
건설가계정	0.1	1.8	1.7	2.7	17					
건축물	0.8	14.6	6.0	9.5	7.5	8.0	15.4	10.0	△ 2.0	0.75
기계및장치	0.6	10.9	8.7	13.8	14.5	8.7	16.3	12.4	2.2	1.25
공구기구비품	0.1	11.8	2.2	3.5	22					
선박	0.1	1.8	1.6	2.9	18	5.1	9.7	17.0	△ 1.7	0.67
차량운반구	0.2	3.6	1.6	2.5	8					
대동식물	0.1	1.8	1.0	1.6	10	0.8	1.4	8.0	0.2	1.25
가계자산	0.3	5.5	9.9	15.7	33	7.4	14.0	24.7	2.5	1.34
재고자산	0.4	7.3	5.4	8.6	13.5	3.0	5.7	7.5	2.4	1.8

77(1) : 간이 집계 국부액

77(2) : GNP 利用 추계액

소유자별 비교 (총자산액)

단위 : 1조

소유자별	68	%	77 ⁽¹⁾	%	증가	77 ⁽²⁾	%	증가	(1)-(2)	(1)/(2)
총액	5.5	100	63.0	100	11.5	53.0	100	9.6		1.2
민간공기업	2.2	40.0	32.0	50.8	14.5	25.3	47.7	11.5	6.7	1.26
정부기업	0.3	5.4	2.4	3.8	0.0	3.1	5.9	10.3	0.7	0.77
일반정부	0.9	16.4	6.1	9.7	6.8	6.7	12.6	7.4	△0.6	0.91
가계	2.1	38.2	22.5	35.1	10.7	17.9	33.8	8.5	△4.6	1.26

주) 1) 정부관리기업, 민간비영리단체는 민간·공기업에 포함.

2) 77⁽¹⁾ : 간이집계 국부액

77⁽²⁾ : GNP 利用 추가액

산업별 비교 (총 자산액)

자산형태별	68	%	77(1)	%	증가	77(2)	%	증가	(1)-(2)	(1) / (2)
총 액	5.5	100	6.3	100	11.5	53.0	100	9.6	10.0	1.2
농림어업	0.3	5.5	4.2	6.7	14.0	3.8	7.2	12.7	0.4	1.10
광업	0.1	1.8	0.3	0.5	3.0	0.3	0.6	3.0	0	1.0
제조업	0.9	16.4	13.0	20.6	14.4	10.4	19.7	11.6	2.6	1.25
건설업	0.1	1.8	1.1	1.8	11.0	-0.6	1.1	6.0	0.5	1.83
전기수도위생	0.2	3.6	1.9	3.0	9.5	2.3	4.2	11.5	△ 0.4	0.83
운수통신보관	0.7	12.7	4.0	6.4	5.7	6.2	15.6	11.7	△ 4.2	0.49
상업	0.3	5.5	7.0	11.1	23.3	4.3	8.1	14.3	2.7	1.63
기타서비스	0.8	14.5	9.1	14.4	11.4	5.2	9.7	6.5	3.9	1.75
가계	2.1	38.2	22.5	35.5	10.7	17.9	33.8	8.5	4.6	1.26

< 별첨 2 >

77년말 자산액 추정치 (≡ Gross)

(단위 : 십억원)

< 제조업 >

73년말 유형자산액 × 물가배율

$$2,188.1 \times 2.1 = 4,595.0$$

$$2,392 \times 2.1 = 5,023.2 \quad \text{※ Net } 1,491 \text{ 십억}$$

74년 순증가액 × 물가배율

$$506.5 \times 1.5 = 759.8$$

75년 순증가액 × 물가배율

$$746.7 \times 1.25 = 933.4$$

76년 순증가액 × 물가배율

$$968.0 \times 1.13 = 1,093.8$$

$$77 \text{년 순증가액 } 1,384.3$$

유형자산합계

$$8,766.2$$

$$9,194.4$$

재 고

$$2,713.0$$

계

$$11,479.2$$

$$11,907.4$$

참 조 : 77년 잠정치 집계 유형 : 9,087.4

재고 : 2,224.7

계 : 11,312.1

자료 : 광공업센서스 주학중

77 년말 자산액 추정치 (순 Gross)

(단위 : 십억원)

< 광 업 >

73 년말 유형고정자산액 × 물가배율

$$123.3 \times 2.1 = 258.9$$

$$132.0 \times 2.1 = (277.2) \quad (\text{Net } 60.0)$$

74 년 순증가액 × 물가배율

$$139 \times 1.5 = 20.8$$

75 년 순증가액 × 물가배율

$$24.6 \times 1.25 = 30.7$$

76 년 순증가액 × 물가배율

$$23.7 \times 1.13 = 26.7$$

77 년 순증가액 34.3

유형고정자산합계 371.4

재 고 21.8

계 393.2

(411.5)

※ 잠정치 : 유형 284.4

 재고 27.5

311.9

자 료 : 광공업센서스 주학중

< 제 108 차 >

1979.5.25

1. 잠정 집계 결과 검토

잠정 집계 결과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각각 GNP, 광공업 Census 등의 기존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GNP 와 비교 (별첨 1 참조)

68-77 년도의 GNP 성장율 (10.3 배) 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잠정치 집계 결과가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GNP 로는 자료사정상 저평가된 부분 (가계 부문, 재고 자산) 을 가산하여 산출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음.

단, 본 잠정 집계 결과의 유형 고정 자산 중 건물 자산이 GNP 보 다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하여 기존 자료에 의한 원인 분석을 하기로 하였음.

나. 광공업 및 건설업 Census 와 비교 (별첨 2 참조)

1) 광공업 Census 에서 73 년말 기준으로 조사한 유형 고정 자산 stock 액에 매년 광공업 census 에서 조사된 유형 고정 자산의 취득액 및 폐기액을 가감한 후 정올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77 년도 불변가격으로 누적한 결과 별첨과 같은 자료가 작성되었으나 본 잠정치 집계 결과와 상당한 격차가 있음.

- 2) 특히 제조업부분의 건물, 구축물과 기계 및 장치 공구기구의 구성비는 68년 국부통계조사, 70년 일본의 국부조사와 비교하여 볼때 기계 및 장치, 공구기구의 자산액이 건축물 구축물 보다는 적게 나타나 있음.
- 3) 또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68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건물부문은 68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기계 및 장치 부문은 68년도 보다 내용년수가 짧음.
- 4) 따라서 내용년수, 소유주체별 자산액, 생산액 자료등을 비교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기로 하였음.

2.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

각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한 조사표 및 조사요령서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음.

가. 표준지의 지목이 타지목으로 전부 변경된 경우는 거래 사례 비례법에 의거 원래의 표준지 지목과 동일한 지목, 동일한 등급의 토지를 시가조사함.

나. 표준지 지목의 일부가 타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지 않은 지목의 토지를 거래 사례 비례법에 의거 시가 조사함.

3. 기타사항

각 지부에서 조사본부에 Master Tape 를 제출할때 당해지부의 결과표를 수록한 Tape 도 함께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작업은 제표과에서 5.29 까지 작성 각지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음.

- 첨 부 ; 1. GNP 와 비교 분석표
2. 각종 Census 와 비교분석표

< 별첨 1 >

国富資産 簡易集計 結果分析

I. 総規模比較

国富額과 GNP比較

单位：10 億원

項 目		68 (A)	77 (B)	B / A	備 考
Gross	簡易集計	5,460.1	63,035.1	11.5	① 68年 가계 G = N 가정 가계자산 : 저평가
	GNP 間接推計		52,963.0	9.7	
Net	簡易集計	3,109.3	34,503.0	11.0	② 유통재고제외 ③ 식물제외
	GNP 間接集計		31,970.8	10.3	
GDP (不変)		5,099.9	12,214.9	2.4	WPI : 3.4(8.2) 物価倍率 : 3.2 (7.75)
GDP (經常)		1,629.8	16,753.6	10.3	
GNP dep. (7 = 100)		31.8	136.8	4.3	

1. 77年 国富의 簡易集計 結果

Gross 63.0兆원, Net 34.5兆원으로 集計되었는 바 이를 GNP를 利用한 間接推定 結果值인 Gross 52.9兆원 Net 32.0兆원과 比較하면 Gross는 10.1兆원, Net는 2.5兆원의 差異를 보였음.

2. GNP利用 国富間接推定值 問題点

同 推定은 資料事情上으로 다음과 같은 問題点이 있음.

가. 家財의 Gross는 68年 国富結果值가 時價를 基準으로 Gross와 Net를 一致시켜 算出함으로써 低評價되었음.
또한, 家財는 民間消費支出中 衣類裝身具와 家具施設費 및 運輸施設取得費만 計上하였음.

나. 在庫資産中 流通在庫와 大動植物 中 植物은 資料事情上 計上되지 않았으므로 低評價 되었음.

3. 適定規模推定

가. GDP 成長率 利用

68 ~ 77年の GDP成長率 10.3倍를 適用하여 算出하면 Gross 56.3兆, Net 32.1兆원으로 나타남.

나. 間接推定值 利用

間接推定值에 資料事情으로 因하여 低評價된 部分(簡易集計值와의 差異)을 加算하여 算出하면 Gross 58.1兆 Net 37.0兆로 나타남.

	Gross	Net
	單位：兆	單位：兆
間接推定值	53.0	32.0
家財	2.5	2.4
在庫	2.4	2.4
大動植物	0.2	0.2
合計	58.1	37.0

다. 가, 나 의 方法은 GNP Deflator 를 利用하여 算出한 것
이므로 物價倍率보다는 高評價 되었음.

II. 部門別 比較

1. 資産形態別 比較

자산형태별 비교 (총자산액)

單位 : 조원

자산형태별	68		77年 간이집계(1)		증가	77年 GNP추계(2)		증가	(1)-(2)	(1) / (2)
		%	국부	%		국부	%			
총액	5.5	100	63.0	100	11.5	53.0	100	9.6	10.0	1.19
건										
계	2.9	52.7	26.4	41.9	9.1	20.0	37.8	6.9	6.4	1.32
물	2.8	50.9	24.7	39.2	8.8					
건설가계정	0.1	1.8	1.7	2.7	17					
구축물	0.8	14.6	6.0	9.5	7.5	8.0	15.4	10.0	△ 2.0	0.75
기										
계	0.7	22.7	10.9	17.3	15.6	8.7	16.3	12.4	2.2	1.25
기계및장치	0.6	10.9	8.7	13.8	14.5					
비공구, 기구 비품	0.1	11.8	2.2	3.5	22					
운										
계	0.3	5.4	3.4	5.4	11.3	5.1	9.7	17.0	△ 1.7	0.67
선박	0.1	1.8	1.8	2.9	18					
차량운반구	0.2	3.6	1.6	2.5	6					
태동식물	0.1	1.8	1.0	1.6	10	0.8	1.4	8.0	0.2	1.25
가계자산	0.3	5.5	9.9	15.7	33	7.4	14.0	24.7	2.5	1.34
재고자산	0.4	7.3	5.4	8.6	13.5	3.0	5.7	7.5	2.4	1.8

簡易集計 結果를 GNP利用 間接推計値와 比較하면
가. 構造物과 運輸裝備는 적게 評價되었으며 建物 機械設備는 過
大評價 되었음. 特히 建物은 GNP 推定에 있어서 建築許可
를 稟한 後 1個月後에 完成이 된다고 假定하였으며 또한,
資料事情으로 破壞 乃至 倒壞分은 勘案되지 못하여 高評價된
것을 勘案하면 簡易推計結果値가 相當히 높게 評價되었음.
나. 在庫資産, 家計資産 및 大動植物은 前記한 要因에 依해 GNP
利用 間接推定値가 적게 評價되었음.

2. 所有者別 比較

소유자별 비교 (총자산액)

단위 : 1조

소유자별	68		77年 간이집계(1)		증가	77年 GNP추계(2)		증가	(1)-(2)	(1) / (2)
		%	국부	%		국부	%			
총액	5.5	100	63.0	100	11.5	53.0	100	9.6		1.2
계	2.2	39.9	32.0	50.8	56.7	35.3	47.7	11.5	6.7	1.26
민간 공법 기업										
정부관리기업	0.2	3.6	3.5	5.6	14.1					
개인기업	0.8	14.5	12.5	19.8	16.0					
민간 비영리단체	1.0	18.2	13.7	21.7	14.1					
민간 비영리단체	0.2	3.6	2.3	3.7	12.5					
정부기업	0.3	5.4	2.4	3.8	8.0	3.1	5.9	10.3	0.7	0.77
일반정부 가	0.9	16.4	6.1	9.7	6.8	6.7	12.6	7.4	0.6	0.91
가	2.1	38.2	22.5	35.7	10.7	17.9	33.8	8.5	4.6	1.26

一般 政府의 結果値는 比較的 同一하게 나타났으나 民間, 公企業은 流通在庫의 包含 餘否 等으로 簡易集計 結果値가 크게 나타남.

3. 産業別 比較

산업별 비교 (총자산액)

産 業 別	68		77年 간이집계(1)		증가	77年 추계(2)		증가(1)-(2)	(1)/(2)		
		%	국부	%		국부	%				
총 액	5.5	100	63.0	100	11.5	53.0	100	9.6	10.0	1.2	
농 립 어 업	0.3	5.5	4.2	6.7	14.0	3.0	7.2	12.7	0.4	1.10	
광 업	0.1	1.8	0.3	0.5	3.0	0.3	0.6	3.0	0	1.0	
제 조 업	0.9	16.4	13.0	20.6	14.4	10.4	19.7	11.6	2.6	1.25	
진 설 업	0.1	1.8	1.1	1.8	11.0	0.6	1.1	6.0	0.5	1.83	
전기, 수도, 위생	0.2	3.6	1.0	3.0	9.5	2.3	4.2	11.5	△0.4	0.83	
운수, 통신, 보관	0.7	12.7	4.0	6.4	5.7		15.6	11.7	△4.2	0.49	
상 업	계	0.3	5.4	7.0	11.2	23.3	4.3	8.1	14.3	2.7	1.63
	도소매음식업	0.2	3.6	3.5	5.6		2.6				
	금융보험 용역업	0.1	1.8	3.4	5.6		0.4				
기타서어비스	0.6	14.5	0.1	14.4	11.4	5.2	9.7	6.5	3.9	1.75	
가 계	2.1	38.2	22.5	35.5	10.7	17.9	33.8	8.5	4.6	1.26	

주) 77년 간이집계 국부중 일반정부 민간비영리단체는 기타 서어비스에 포함시켰음.

簡易集計와 GNP利用 間接推定の 産業別 分類는 그 基準이 相異하여 差異가 發生함. (大體로 國富는 所有者, GNP는 使用者 基準임) GNP는 投資(固定資本形成)의 目的에 따라 分類하나 國富는 그 機關의 機能에 따라 分類함.

가. 그 結果 其他 Service業에 있어서 政府機關이 國富에 있어서는 거의 包含된 反面 GNP에 있어서는 各産業別로 配分됨으로 큰 差異를 보이고 있음. — 建設業도 同一한 理由로 큰 隔差를 보임. 또한, 商業은 流通在庫의 包含 餘否로 差異가 發生함.

나. 農林漁業, 鈷業, 製造業, 電氣, 水道, 衛生業은 比較的 同一한 水準으로 評價되었음.

다. 反面 運輸, 通信, 保管業은 簡易集計가 GNP 推定值보다 적게 評價되었음.

< 별첨 2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부문에 대한 잠정치 검증

1. 검증요령

본 검증자료는 E.P.B에서 발간하는 각종 Census 자료를 이용하여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부문에 대해 77년말 현재의 유형고정자산 Stock액을 추계하고 이를 국부통계조사 잠정치와 비교한 것임.

그 개괄적인 추계요령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가. 광업, 제조업 부문

73년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산 Stock액에 매년 광공업 Census에서 조사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폐기액을 가감한 후 여기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77년도 가격으로 불변 가격화하여 누적한 것임.

$$\text{측(77년말 현재 유형고정자산 Stock액)} = (\text{73년도 유형고정자산액} \times \text{물가배율} \times (1-d)^4 + (\text{74년 신규취득분} - \text{폐기액}) \times \text{물가배율} \times (1-d)^3 \dots\dots\dots)$$

나. 건설업 부문

77년말을 기준 시점으로 조사된 건설업 Census에 수록된 시가에 의한 조사액을 전제한 것임.

다. 특 징

1. 68년도 국부통계조사 결과는 전혀 참조하지 않은 것임.
2. 시가에 의한 73년도 유형고정자산액을 일단 Net 라고 가정 하였음.
3. 종업원 규모 1인 - 4인이 제외되고 있음.

참조 : 종업원 규모 1인 - 4인의 자산액 비중 광업 0.02% ,
제조업 1.2% (73년 광공업 Census)

2. 잠정치 자료와 Census 자료의 비교

가. 산업별 비교

단위 : 십억

	잠정치 (Net)	Census
광업	128.1	178.6
제조업	4,288.2	5,523.0
건설업	408.2	415.6
계	4,824.5	6,117.2

나. 자산항목별 비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잠정치	Census	잠정치	Census	잠정치	Census
건물, 구축물	64.9	114.6	1,771.9	1,872.6	70.2	72.3
기계장치 공구, 기구	45	44.5	1,390.4	3,022.1	206.4	270.5
자동차, 운송 기구, 선박	16.0	11.8	205.1	171.3	110.9	53.2
기타	2.1	7.7	920.5	437	20.7	19.6
계	128.1	178.6	4,288.2	5,523.0	408.2	415.6

3. 비교결과

- 가. 시가로 조사되고 있는 센서스 결과치가 3개업종 공히 높게 나타났음.
- 나. 광업부문에서는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 잠정치와 센서스의 차가 특히 현저함.
- 다. 제조업부문에서는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자산에 대해 잠정치와 센서스 차가 특히 현저함.
- 라. 건설업부문은 기계장치류가 자동차류와 차이가 현저하나 이는 중기의 분류 때문인 듯함.

A. 신규취득액 - 폐기액

B. 물가배율 : 1977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물가배율표

C. $(1-d)^m$, d : 1970년 일본 국부통계조사 자산중분류
별, 산업대분류별 평균 내용년수에 해당
하는 상각율임.

중고자산에 대한 것은 유형고정자산
평균 내용년수에 대한 상각율임.

m : 경과년수 (77년 - 해당년도)

4. 계산근거

가. 광업

단위 : 십억원

	73년	74	75	76	77		계
	69.3	7.5	10.4	11.8	15.7	A×B×C	114.6
d = 0.095	50.2	6.6	10.0	10.9	15.7	A	
전물, 구축물	2.06	1.53	1.27	1.14	1.00	B	
	0.67	0.74	0.818	0.905	1.00	C	
	20.8	1.5	5.5	6.1	10.6		44.5
d = 0.319	47.8	3.4	9.6	7.7	10.6		
지계장치	2.02	1.45	1.25	1.15	1.00		
	0.215	0.316	0.46	0.68	1.00		
	5.1	0.3	1.0	1.0	4.4		11.8
d = 0.369	25.3	1.3	3.3	2.3	4.4		
차량, 운반구	2.03	1.46	1.24	1.15	1.00		
	0.10	0.158	0.251	0.398	1.00		
		1.0	1.1	2.3	3.3		7.7
d = 0.25		1.6	1.6	2.7	2		
중고		1.50	1.26	1.14	1.00		
		0.421	0.562	0.75			
계							178.6

나. 제조업

	73년	74	75	76	77		계
d = 0.092 건물, 구축물	1,132.9	139.4	190.9	194.7	234.7	A×B×C	1,892.6
	808.8	121.5	182.3	187.9	234.7	A	
	2.06	1.53	1.27	1.14	1.00	B	
	0.68	0.75	0.825	0.909	1.00	C	
d = 0.206 기계장치	1,025.8	234.6	352.9	555.1	853.6		3,022.1
	1,275.9	323.6	448.2	611.0	853.6		
	2.02	1.45	1.25	1.15	1.00		
	0.398	0.5	0.63	0.79	1.00		
d = 0.369 차량, 운반구	32.9	9.5	20.9	35.8	72.1		171.3
	103.4	25.9	42.5	49.5	72.1		
	2.03	1.46	1.24	1.15	1.00		
	0.157	0.25	0.327	0.63	1.00		
d = 0.142 중고		33.6	68.3	117.2	217.9		437
		35.6	73.8	119.6	217.9		
		1.50	1.26	1.14	1.00		
		0.63	0.735	0.86	1.00		
계							5,523.0

<제 109 차>

1979.5.30

1. 결과표 검토

- 가.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한 최종 결과표의 각종분류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황을 파악 6.1 속 개되는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 나. 각지부에서 제기한 산업분류, 종업원 규모, 축소문제는 각지부의 표본설계, 보고서 부피 등을 감안 일부 분류를 통합 작성하기로 하나 해당지부에서 분석하고, 당국에 제출하는 결과표는 원래 분류를 따르기로 함.

분 류	'68		'77		일본(70)	
	부문별	종합	부문별	종합	부문별	종합
1. 산업분류						
2. 자산분류						
3. 종업원규모						

2. 잠정치 집계결과 검토

- 가. 광공업 Census 와 비교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되었던 부문을 '68, '77의 국부자산액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68년도의 경우 제조업부문의 건물, 기계및 장치 구성비는 법인은 28.9%,

54.8%, 개인기업은 55.8%, 41.2%을 나타내고 있는데 77년도 경우는 법인은 48.9%, 28.4% 개인기업은 48.0%, 44.0%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은 물론 정부관리 기업자산을 포함하여 그 구성비를 산출하면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담당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작성하기로 함.

나. 국민은행 남규홍 조사역이 GNP중 유형고정자산 형성분을 이용하여 별첨과 같이 작성한 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본 잠정집계결과가 약간 고평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잠정치를 감안하여 볼 때 미세한 실정임. 따라서 조사본부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본 국부통계조사 결과 분석시 이용하기로 함.

첨 부 : 일본 국부통계조사와 비교분석표 (제 123, 124 차 회의 결과 참조)

<제 110 차>

79.6.1

1. 결과표 검토

가.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한 최종 결과표의 각종 분류를 확정하기 위하여 '68, '70년의 일본 국부조사의 분류(별첨 참조)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래의 분류(산업소분류: 93, 자산소분류: 26, 종업원 규모: 9)를 따르기로 하였음.

나. 단, 원래의 분류대로 결과표를 작성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산업중분류로 결과표를 작성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각지부는 업무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Spacing Chart, Program을 미리 작성 대비하도록 하였음.

2. 편집요령서 작성

보고서 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본부에서는 '68, 일본(70)의 국부통계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편집요령서(안)을 작성 본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첨부: 각종 분류 비교표

<별첨>

각종분류

분류	'68			
	종합	정부	법인	개인
1. 산업분류	48	32	48	48
2. 자산분류	소분류 (23)	"	"	"
3. 종업원규모	-	-	10	8
			0 ~ 19	1 ~ 4
			20 ~ 49	5 ~ 9
			50 ~ 74	10 ~ 29
			75 ~ 99	30 ~ 49
			100 ~ 149	50 ~ 99
			150 ~ 199	100 ~ 199
			300 ~ 499	200 ~ 299
			500 ~ 999	300 이상
			1,000 이상	

비 교 표

'77				일 본 (70)			
총 합	정 부	법 인	개 인	총 합	정 부	법 인	개 인
소분류 (93)	"	"	"	일부중분류	일부중분류	"	"
소분류 (26)	"	"	"	세분류	소분류	기계및장비	"
9	-	"	"	-	국영기업 (5)	7	농림어업 (8)
1~4		1~4		0~49	0		1
5~9		5~9		50~99	10~49		2
20~49		20~49		100~499	50~99		3
50~99		50~99		500~999	100~499		4
100~199		100~199		1,000이상	500~999		5~9
200~299		200~299			1,000~4,999		10~19
300~499		300~499			5,000이상		20~299
500이상		500~999					30이상
		1,000이상					1-4
							5-9
							10이상

<제 111 차>

1979.6.14

1. 보고서 발간 요령 (안) 검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발간 요령 (안) 을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별첨 1 참조)

가. 인쇄종류 및 용지

인쇄종류는 음쇄, 용지는 중절지로 함.

나. 인쇄방법

가능한한 동일한 인쇄소에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조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의뢰하는 방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2. 보고서 내용

가. 영문은 통계표에 한하여 병기하기로 함.

나. 모든 보고서의 내용은 국한문 혼용으로 함.

다. 한국산업은행에서 조사한 정부관리 기업자산은 소유주체 면에서 볼때 정부부문에 가까우므로 한국은행 정부부문 보고서에 동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을 양 담당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라. 총괄편에 한하여 영문 요약편을 수록하기로 함.

마. 조사연혁은 68년에 관한 내용보다는 77년의 국부통계조사 실시 계획, 각종 회의 구성경위, 추진실적등을 중점적으로 수

목하기로 함.

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에 대한 개념을 상세히 수록하기로 함.

2. 잠정집계 결과

각 지부에서 작성 조사본부에서 종합한 잠정집계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 실무자 회의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해당지부의 잠정 집계 수정치를 조속히 작성토록 당부하였으며 한국은행에서 작성 제출한 수정치는 잠정집계 결과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음. (별첨 2 참조)

3. 기타사항

가. 국부통계조사 평가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New SNA에 의한 대차대조표 작성시 유형고정자산 평가방법을 한국은행에서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각지부별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 및 산림자산 실사상 나타난 문제점 해결과 조정을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기 위하여 본 국부통계조사 실무요원이 공동으로 현지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별첨 3 참조)

첨부: 1. 보고서 발간요령(안)

2. 잠정집계 수정치(한국은행)

3. 토지 및 산림자산 조사표류

< 별첨 1 >

1977년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요령(안)

1. 보고서명칭

아래와 같은 명칭으로 동일한 체재하에 각부문별로 발간함.

가. 1977년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총괄편)

나. " " (정부 및 대외순자산)

다. " " (법인자산편)

라. " " (개인자산편)

마. " " (가계자산편)

2. 규격 및 사용활자

가. 규 격 : 4 × 6 배판

나. 활 자 : 8 호

다. 인쇄종류 : 음쇄인쇄

3. 용지 및 인쇄방법

인쇄는 가능한한 동일한 인쇄소에서 하며 용지는 중질 (모조 80 g)로 함.

4. 발간부수

각권 1,000 부를 발간함. (단, 지부별로 필요시 증판할 수 있음)

5. 보고서 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1) 각부문별 공히 영문을 병기함
- 2) 통계표의 금액단위는 원칙적으로 종합, 정부, 법인부문은 10 억원 이하 소수점 1 자리까지 개인, 가계부문은 100 만원 단위로 함.
- 3) 각 보고서의 부피는 원칙적으로 500 Page 이내로 함.
- 4) 개인기업부문은 단행본으로 발간함.

나. 각부문별 보고서 내용

- 1) 총괄편
머리말
차례

I. 조사의 개요

1. 조사연혁
2. 국부의 개념
3. 조사목적
4. 자산의 범위
5. 조사개체 및 지역의 범위
6. 결과의 제표 및 공표
7. 조사사항
8. 조사방법
9. 조사담당기관
10.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실시기관

II. 1977년 국부통제조사 결과의 개요 (분석편)

III. 통계표

IV. 부 록

1. 용어설명
2.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3. 물가배율표
4. 잔가율표
5. 건물평가 기준표
6.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별첨 2 >

잠정 집계 수정치

자 산 분 류	Gross				Net			
	간이 집계액		전산결과액		간이 집계액		전산결과액	
	정부부분	총액	(증감액)	(증감비%)	정부부분	총액	(증감액)	(증감비%)
총액	9,414.8	63,035.1	209.2	0.3	6,489.1	34,503.0	326.1	0.9
			△	△			△	△
1. 유형고정자산	9,076.0	57,636.0	586.2	1.0	6,150.3	29,103.8	469.3	1.6
			△	△			△	△
10. 건물	2,882.0	24,733.2	1,107.2	4.5	1,731.0	11,771.3	593.6	5.0
			△	△			△	△
11. 구축물	4,343.1	5,970.3	826.5	13.8	3,255.6	4,256.4	425.0	10.0
			△	△			△	△
12. 기계 및 장치	849.1	8,704.7	225.8	2.6	405.5	2,764.9	76.1	2.5
			△	△			△	△
13. 선박	15.5	1,823.8	31.4	1.7	7.7	920.9	12.9	1.4
			△	△			△	△
14. 차량 및 운반구	124.0	1,562.8	350.3	22.4	77.2	805.1	177.5	22.0
			△	△			△	△
15. 공구기구 및 비품	288.0	2,199.3	51.7	2.4	99.3	713.9	11.3	1.6
			△	△			△	△
16. 건설가계정	571.0	1,672.2	422.2	25.2	571.0	1,672.1	422.2	25.2
			△	△			△	△
17. 대동식물	3.0	1,025.1	12.5	1.2	3.0	1,025.1	12.5	1.2
			△	△			△	△
2. 재고자산	338.8	5,399.1	795.4	14.7	338.8	5,399.1	795.4	14.7
			△	△			△	△

< 별첨 3 >

1977 국부통계 조사를 위한
토지 (농경지) 시가조사
- 1977년 12월 31일 현재 -

통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기재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표준지 표시

소 개 지	시 도	구 시 군	읍 면 동 번 지	소 유 자 ()	지 목	등 급
-------------	--------	-------------	-----------------------	--------------------	--------	--------

※ 소유자란 : 상단은 표준지 일람표상의 소유자 기입
하단은 소유자 변경시 기입

지 적	그 중	으로	사용하는	면적	평
	그 중	으로	사용하는	면적	평
	그 중	으로	사용하는	면적	평

2. 평당시가

응답자	77.12.31 현재	78.12.31 현재	조사참고사항기입
가. 행정기관및유관기관	원	원	
나. 소 개 업 소			
다. 주민 및 소유자			
라. 기 타			
합계 (가+나+다+라)			
시 가 평 균			

※ 시가평균 : 조사시가에 대한 산술평균가격 ◦ 조사시점 현재
평당가액 및 응답
자명등 참고사항
기입

조사표작성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검토자 직 성명
1979년 월 일	직 성명 ㉠	직 성명 ㉠

토지 (농경지) 시가조사및 집계요령

1. 조사개요

가. 목적

국부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재생산 불가능한 토지 (농경지) 의
실물자산 존재량을 평가함으로서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대상

" '77 전국표준지 일람표 " (내무부) 에 의한 조사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4,058 필지	1,729	1,794	412	123

다. 조사시점

1977.12.31 현재 기준 시가조사

라. 조사시기

1979.6.1 ~ 6.30 (1개월간)

마. 조사방법

표준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사례 비례법에 의한 면적청취 조사

바. 집계보고

도 보 고	중 앙 보 고
'79.7.5	'79.7.15

2. 조사요령

가. 토지 (농경지) 시가조사는 전국표준지 일람표에 의하여 조사한다. (이하 표준지라 한다)

나. 조사일 현재 표준지상의 지목과 실제사용 지목이 상이한 경우라도 표준지상의 지목으로 조사기준일 현재로 추적 조사한다.

"예"

표준지 지 목	현재 사용 지 목	시 가 조 사
전	대 지	전

다. 평당시가조사 (사례)

1) 표준지 매매경우

표준지가 매매되었을 경우는 매매년도의 (시기) 매매가액을 정확히 조사확인하여 조사시점 (77.12.31) 현재의 시가를 추정 조사한다.

2) 거래가액이 형성되지 않은 표준지의 경우

- 표준지가 녹지대 지정고시, 절대 농지지정고시, 군수용 등의 지역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표준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부근 동일 여건의 지목, 등급을 가진 토지 (농경지) 를 대상으로 시가를 조사한다.
- 표준지가 공공시설 (학교, 도로등) 로 흡수되었을 때는 보상금, 환저가액등을 참작하여 표준지 주변의 동일지목 등급의 토지 시가를 조사한다.

3. 청취조사

가. 표준지가 매매로 인하여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는 현소유자 및 판매자 (판사람) 에 의하여 조사한다.

나.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표준지의 시가조사는 지역특성에 따라 토지 (농경지) 의 시가 및 거래 동향을 숙지하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읍, 면, 동사무소, 농협, 농조등), 소개업소(중계, 인), 주민 또는 소유자(리장, 동장, 지도자, 독농가등), 기타(주민의 왕래가 많은 이발소, 주점, 점포, 도정업소등)을 대상으로 시가를 조사한다.

다. 조사상의 유의사항

- 과수원지의 시가조사에 있어서 저상물(과수나무)은 국부통제조사에서 조사되었으므로 제외하여 시가를 조사한다.

4. 조사표 기입요령

가. 표준지의 표시

- 1) 표준지의 소재지, 소유자, 지목, 등급, 지적(평수)을 표준지 일람표에 의해 조사표에 기입하여 조사에 임한다.
- 2) "그중 ○○으로 사용하는 면적 ○○평"은 조사기준시점('77.12.3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평수를 기입한다.

"예" 표준지 600평중

그중 담으로 사용하는 면적 300평

그중 대지로 사용하는 면적 300평으로 기입하고, 시

가조사는 담으로 사용하는 면적 300평에 대하여만 조사한다.

나. 평당시가

- 1) 평당시가는 응답자별, 조사시점별로 조사기입한다.
- 2) '77년말과 '78년말 현재로 비교조사 기입한다.
- 3) 표준지 전부가 지목변경 되었을 때는 앞 2항의 나. "예"와 같이 조사한다.
- 4) 평균: 조사응답자별 시가액을 산술 평균한다.

※ 시가의 평균은 출장소장이 산출하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재확인 하여 산출기입하고 시군 전체조사표의 지가평균, 등급별 가격의 차가 일정한가를 검토한다.

5. 조사표 집계보고

가. 집계표 보고서 읍면, 시군, 시도의 등급별 가격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후 보고한다.

나. 집계는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분 집계한다.

다. 집계는 등급별, 읍면, 시군, 시도별로 한다.

라. 보고

○ 도보고(출장소): 지목별, 등급별, 읍면별, 시군 평균가격과 조사기준지수를 ()하여 보고한다.

○ 중앙보고(도사무소): 지목별, 등급별, 시군, 시도 평균치 및 조사기준지수를 ()하여 보고한다.

”참고사항”

1. 전국표준지 일람표

'77.1.1 현재 내무부 주관하에 등기부상의 명시된 표준지임.

2. 거래 사례비례법

시가조사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가조사 대상을 또는 유사 물건의 매매 사례를 인별, 시기별(년도별) 조사 비교하여 조사지점 현재의 시가를 산출한다.

統計法 제9조의 規定에
의해 本調査票에 記載된
내용은 統計目的 以外에
는 絶對로 使用하지 않
습니다

1977年 土地資産評價를 위한

土地時價調査票

-1977年12月31日現在- 主 管: 經濟企劃院
實施機關: 韓國産業銀行

調査区番号	地域番号	地目番号	等級番号	土地等級價格
-				※

所在地	市 区 洞 街	番地 号	所 有 主
	道 市 郡 邑 面 里		

1. 土地의 實際用途

標準地 _____ 坪 中에서 가. _____ 으로 使用하는 面積 _____ 坪 (A地目)
나. _____ 으로 使用하는 面積 _____ 坪 (B地目)

2. 坪當時價

應 答 者	77年12月31日 現在時價		78年12月31日 現在時價	
	A地目	B地目	A地目	B地目
行政機關	원	원	원	원
紹介業所	원	원	원	원
住民·所有主	원	원	원	원
기 타	원	원	원	원
※		원		원
비 고				

調査票作成日字	調査者姓名	調査区責任者	1次審査者	2次審査者
年 月 日	印	印	印	印

調 査 票 記 入 要 領

I. 留 意 事 項

1. 靑色 또는 黑色「볼펜」이나 「잉크」를 使用하시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使用하시오.
3. 金額은 調查票에 表示된 單位에 따라 記入하시오.

II. 記 入 要 領

1. 調查區番號：標準地 명부에 表示된 調查區 및 標準地의 指定番號 입니다.

2. 地域番號：

서울-1	부산-2	경기-3	강원-4	충북-5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9	경남-11	제주-11	

3. 地目番號：

垜地-6	工場地-7	塩田地-8	鈹泉地-9
遊園地-10	運動場-11	雜種地-12	-

4. 等級番號：標準地명부에 表示된 等級입니다.
5. 所在地 所有主：標準地 명부에 表示된 內容을 記入합니다.
6. 土地의 實際用途：標準地의 地積은 總面積이며, 分割使用하는 경우 그 地目 및 각각의 面積을 記入합니다.
7. 時價는 應答者別, 調查時點別, 分割地目別로 区分하여 記入합니다.
8. 可能的 모든 出處에서 調查記入하며 여백에는 차세한 出處를 記入합니다. (例：×××면사무소 산업계, ×××북덕방 소유주 ×××)
9. ※란에는 記入하지 않습니다.
10. 비고란에는 時價에 영향을 줄만한 要因, 問題點등 調査에 참고가 될수 있는 內容을 자세히 記入합니다.

<제 112 차>

1979.7.18

1. 국부통계조사 결과 분석

각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Master Tape 작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각지부는 동 Master Tape 에 수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조사본부에서 작성 기재부한 잠정집계 결과표(4) 양식에 따라 결과표를 작성 7.21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본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잠정치 결과 분석시 분담하여 분석하였던 업무추진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 결과를 분석하여 지부장 및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참고 : Master Tape 작성 계획

한은 : 7.30

기은 : 7.25

산은 : 완료

국민은 : 7.25

농수산부 : 완료

물가과 :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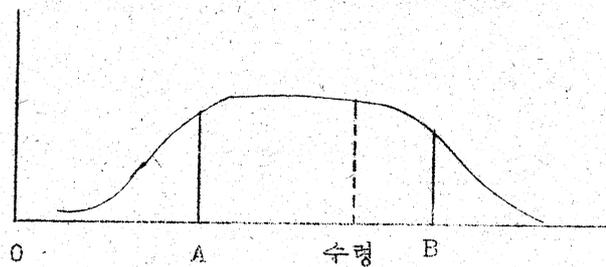
2. 평가방법

국민은행 남규홍 조사역이 제기한 New SNA 에서의 평가원칙과 국부통계조사 지침서상의 평가방법과의 일치성 여부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 의견에 의하면 New SNA 평가원칙과 지침서상의 평가방법과는 개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지침서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음. (별첨 1 참조)

3. 기타사항

가. 농수산부에서 제기한 대동식물의 내용년수 및 경과년수에 대한 지침서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OA =$ 육성년수 (미성숙시기)

$AB =$ 내용년수

$\text{수령} - OA =$ 경과년수

나. 결과표 작성시 0.0은 단위 미만, -는 해당자산 없음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음.

다. 한국은행 김수기 조사역이 주요국의 국부조사현황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자료를 결과분석시 이용하기로 하였음. (별첨 2 참조)

첨부 : 1. New SNA 상의 평가원칙

2. 주요국의 국부조사현황 (별책참조)

끝.

< 별첨 1 >

New SNA 상의 평가원칙

1. 評價原則

New S.N.A 의 評價原則 : 時價基準

國富統計 : 原則상 時價 基準이나 實際 推計가 거의 不可能하여

代用時價로써 再調達 價格을 適用

2. 中古資産 評價方法

$$\text{評價原則 : } G = P \times \frac{1}{0.316} \times R \quad \text{---(1)}$$

$$\text{國民銀案 : } G = P \times R \quad \tex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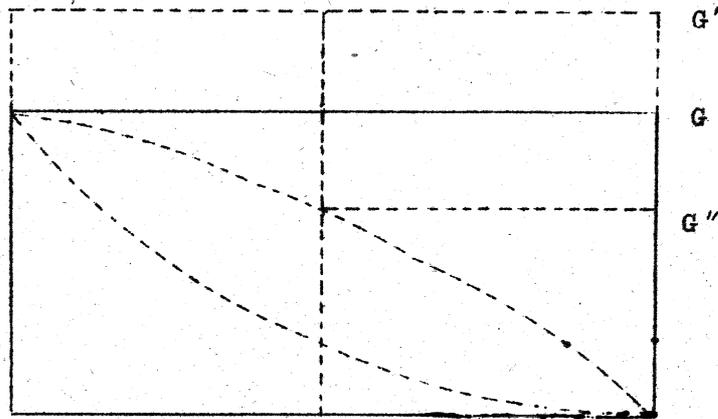
(1)의 方法은 再調達價格法에 依한 新品 Base이며

(2)의 方法은 調査時点 現在의 時價概念이 아니며 再調達 價格法에 依한 新品 Base도 아닌 모호한 方法임.

3. I - O 및 GNP 實際推計方法

中古 資産의 部門別 增減 推計를 原則으로 하나 調査上 어려움으로 推計치 않고 있음. 따라서 資本係數의 算出이나 B.Y 法 適用에 큰 問題點 없음.

4. 結 論



(1)의 方法은 Gross가 G' 로 高評價되며

(2)의 方法은 Gross가 G'' 로 低評價됨. 따라서 調査原則에

一致하며 I - O 및 GNP와의 關係에도 큰 問題점이 없는

(1)의 方法의 適用이 타당함.

<제 113 차>

1979.8.7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

1. 본조사 실시

각지부별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 및 산림자산 본조사 실시중 한국산업은행 부문이 인력관계로 인하여 다소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바, 담당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 조사시간을 단축하도록 당부하였음.

2. 구체적인 조정을 산출방법

토지등급 가격통계의 가액과 조사시가의 차이로 결정되는 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본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지역, 지목, 등급의 조사가격 분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동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함.

가. 지역별 (11 개 시도), 지목별 (24) 등급별로 산출하고 조사

자료 성격에 따라서 최빈수 또는 중위수를 사용함.

나. 등급별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보간법을 사용함.

다. 상계, 하계가 분명치 못하여 보간법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지목의 평균 등귀율을 사용함.

라. 산업은행 담당 토지중 표준지의 지목이 없는 경우는 동지
 목의 조정율을 유사한 지목에 적용시키는 방법, 단순 산술
 평균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 실사 완료후
 결정하기로 함.

예.) 잡종지 - 임야지

운동장용지	}	도시지대 : 대지 농촌지대 : 전 또는 답
사적지		
묘지		
수도용지		

3. 기타사항

지적통계 면적을 원칙으로 토지자산을 추계하기로 결정하였으
 므로 토지등급 가격통계의 면적 및 가액을 지적통계에 맞추
 어 조정하는 작업을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당
 부하였음.

< 제 114-115 차 >

1979.8.13

8.14

1. 보고서 발간

79.12 발간 예정인 종합편 및 부문별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고 각 지부는 계획에 차질없이 동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가. 발간요령

- 1) 보고서는 각 지부별로 발간함 (개인기업부문 제외)
- 2) 발행부수는 각부문별 공히 1,000부로 함.
- 3) 인쇄방법은 활판인쇄 및 옵셋 (통계표에 한하여 사진판)으로 하기로 함.
- 4) 지질은 미색 백상지로 함.
- 5) 각 부문 공히 영문요약편, 부록편에 각종 평가기준표 및 용어정의를 수록하기로 함.
- 6) 각 지부별로 보고서 편집사항을 작성 8.17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함.

나. 정부 간행물 조정심의 위원회 상정 (안)

- 1) 정부간행물 조정심의 위원회에 안전 상정은 원칙적으로 각 지부별로 제출하기로 하나 일괄 심의가 가능하도록 당국에서 일괄 취합 제출하기로 함.
- 2) 개인기업부문은 3개기관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므로 어느 한 기관 명의로 안전을 제출 전에산을 집행한후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방법등 경비처리문제를 회계관리과와 협의한후 결정하기로 함.
- 3) 정부간행물 조정심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을 각지부에서 작성 제출하였고 조사본부에서는 이중 보고서 부피를 감안 예산내역을 조정 통일하기로 함.

2. 국부통계조사 결과 분석

실무자 회의에서 작성한 잠정치 결과 분석을 검토하였으며 이중 미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의 종합편 결과 분석 내용중 각지부의 해당 분석표를 작성 조사본부에 8.17 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본부에서는 이를 취합 정리하기로 하였음.

<제 116 차>

1979.8.21

1. 현 지침서 상의 평가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평균내용년수 및
경과년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기로 결정 하였음.

신품인 경우

$$\text{평균내용년수} = \frac{\sum (\text{내용년수} \times \text{총자산액})}{\sum \text{총자산액}}$$

$$\text{평균경과년수} = \frac{\sum \{ (77 - \text{취득년차}) \times \text{취득년차의 총자산액} \}}{\sum \text{총자산액}}$$

중고품인 경우

평균 경과년수 = 신품과 동일함.

평균경과년수

정부, 법인

$$= \frac{\sum [\{ 77 - (\text{취득년차} + \text{경과년수}) \} \times \text{취득년차의 총자산액}]}{\sum \text{총자산액}}$$

$$\text{개인} = \frac{\sum \left[\left(77 - \left(\text{취득년차} + \frac{\text{내용년수}}{2} \right) \right) \times \text{취득년차의 총자산액} \right]}{\sum \text{총 자산액}}$$

2. 중고품에 있어서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경과년수와 취득년도별 결과표의 취득년도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득년도를 자산이 처음 국민경제내에 투입된 시기로 간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현재의 소유주체, 업종이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방법을 따르기로 하였음.

<제 117 차 >

1979.9.5

보고서 발간

1. 보고서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편집토록 하였고 조사본부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조사개요(별첨 참조)를 각지부별로 검토하여 지부별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조사본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기로 함.

가) 조사개요

나) 조사결과 개요

다) 통계표

라) 부록

2. 보고서 통계편에 수록할 영문 표기중 공통적인 사항은 조사본부에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3. 총자본 계수는 78년 I-O 추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할것이나 동 작업이 1979년에 완성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총 자본계수 산출은 불가능하고 순자본계수를 GNP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하여 한은은 현시점에서 총자본계수 산출 불가능의 근거 등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순자본계수는 내주중에 작성 제출하기로 함.

4. 각 부문별 결과 보고서를 요약하여 79.9.11-15 중에 조사본부에서 설명하기로 함.

5. 각 지부별로 작성하는 보고서 최종 원고는 조사본부에 제출 협의를 받도록 함.

첨부 : 조사개요

< 별첨 >

I. 조사 개요

1. 연혁

77.12.31 기준으로 실시한 국부통계조사는 1968.12.31 기준으로 실시한 제1회 국부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1977년 1월 조사계획 수립을 착수, 국부평가의 제반원칙과 조사방법을 수립하고 동 실시 계획안을 관계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지부장 회의,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통계위원회 경제분과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정부, 법인, 개인기업, 가계부문별로 1978.3.10부터 78.8.2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업무는 방대한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지부를 설치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부간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조사 및 평가상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부장 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국부조사상의 전문적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사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동 조사 추진상 각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통계위원회 및 동 분과위원회 각 1회, 자문위원회 10회, 지부장회의 14회, 실무자회의 130회를 개최하였다.

2. 조사목적

국민경제조사의 기초가 되는 부의 재고량을 조사하여

가. 경제적 국력과 개발성과 측정

나. 자본계수의 산출

다. 국민 대차대조표의 작성

라. 부의 분배 구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어 경제개발계획, 국가
동원계획, 국토건설계획등 제반 경제시책 입안 및 분석자료를
얻는데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민소득 계정상의 유량 (flow) 과 자본
존재량 (stock) 과의 관계를 밝혀 현재 진행중인 신국민 계
정체제 (New System of National Account) 에 의한 국민경
제계산의 정비에 기여함은 물론 제 5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
획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에 의거한 지정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21 호) 로서 실시하였
다.

4. 조사대상의 범위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 객체는 국내에 소재 또는 거주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정부관계기관, 법인, 개인기업 및 비법인단체, 일반가구 등이다. 이를 재화의 소유형식에 따라 소유주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정부

가) 중앙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 즉 토지개발조합, 수산협동조합등 공공조합

2) 정부기업

3) 정부영리기업

주요정부 출자기업 및 은행

4) 법 인

상법상의 영리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5) 개인기업 및 비법인단체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개인기업 및 법인격을 갖지 않은 모든 단체

6) 일반가구

7) 대외순자산

나. 지역의 범위

조사객체는 국내에 소재 또는 거주하여야 하는데 국내라 함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우리나라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전영역을 말한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으로서 UN의 신국민 제정 체계 및 IMF의 국제수지편제방식을 적용하여 특히 기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상주거주지, 업무수행지, 고용주의 소재지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구비할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다수결원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기 관

가) 정부기관

외국에 소재하는 본국의 정부기관(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등)은 치외법권이 주어지므로 거주자로 보고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정부의 공관 사절단은 같은 이유로 비거주자로 하였다.

나) 국제기관

국제기관은 상주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취급하였다.

2) 기 업

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업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지점(사), 대리점, 출장소 및 기타 사무소는 거주자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본사계정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하였다.

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국내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지사, 출장소 등은 비거주자로 취급하되 다만 국내의 본사계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하였다.

3) 개인 및 가계

가)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외교관, 사절단원, 군인 및 그 가족은 거주자로 하였다.

나) 외국여행이나 사업행위를 목적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과 해외에 1년 이내 체류중인 내국인은 거주자로 하였다. 다만,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중인 내국인의 자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경제개념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하는 사용자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 국제기관에 종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거주자로 하였다.

다. 자산의 범위

1) 조사대상자산

국민경제내에 소재하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가계자산 포함) 재고자산, 대외순자산을 조사대상자산으로 하였다.

따라서 천연토지 자연림등 천연자원과 무형자산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방위목적에 사용되는 자산은 조사대상자산에서 제외하였다.

2) 자산의 분류

1) 유형고정자산

10. 건물

11. 구축물

12. 기계 및 장치

13. 선박

14. 차량 및 운반구

15. 공구 기구 및 비품

16. 건설가계정

17. 대동식물

18. 가계자산 (건물제외)

2) 재고자산

21. 원재료

22. 반제품 및 재공품

23. 완제품 및 상품

24. 처장품

25. 기타

3) 대외순자산

5. 조사기준시점과 실사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1977.12.31 현재

나. 실사기간

부 문 별	실 사 기 간
정부 부문 조사	78. 6. 1-7.31
법인 부문 조사	78. 7. 11-8.20
개인기업부문조사	78. 7. 11-9.20
가계 부문 조사	78. 3. 10 -4.10
대외 순자산 추계	기존자료 이용 추계

6. 조사방법

가. 일반적인 조사방법

1) 소유자주의에 의한 방법

원칙적으로 조사되는 자산의 소유관계(법적부속관계)를 기준으로 한 소유자주의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기업부문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의한 조사가 조사자산의 경제적인 기여 또는 소득창출과 무관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사용자주의를 병용하였다.

2)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방법 병용

부문별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부 문 별	조 사 방 법
정 부 부 문	1,215기관 전수조사
법 인 부 문	18,539법인 전수조사
개인기업부문	33,231사업체 표본조사
가 계 부 문	10,500가구 표본조사
대외 순자산	기존자료 이용 추계

나. 자산형태별 조사방법

1) 유형고정자산의 조사방법

원칙적으로 각 자산마다 개별적으로 순자산액(재조사가격)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조사자산의 단위는 물리적으로 파악되는 1개의 재화가 아니고 그 재화에 대한 투자 시기가 다른 각각의 자본지출을 각각 1개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조사하였다.

즉 동일자산을 동일시기에 다수로 일괄 구입했을 때는 하나의 조사물건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업부문에 한하여 사용자주의에 의한 업종별 제표를 위하여 임차자산에 대한 물량, 임차시기, 신 중고구분, 신품가격(건물제외)을 조사하였다.

2) 재고자산의 조사방법

재고자산은 조사기준시점에서 실시한 장부 가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시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기준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조사시점에 행한 재고조사의 장부가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장부가 없는 것은 품목별 시가기준표에 의거 시가로 환산 조사하였다.

7. 평가방법

가. 유형고정자산 평가방법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은 취득시기, 취득가격을 조사하여 취득시기로 부터 조사시점까지의 물가배율을 적용하여 총자산액을 구하고 잔가율을 적용, 순국부를 산출하는 취득원가법을 사용하였다.

총자산액 (재취득가격) = 취득가격 × 물가배율 (Gross Base)

순자산액 (재조달가격) = 총자산 × 잔가율 (Net Base)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중 어느 하나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를 조사하여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격을 추정한 후 위의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다.

1) 중고품 및 자산재평가 자산의 평가방법

중고품 및 자산재평가자산에 대한 재취득 가격 및 재조달 가격의 평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G : 기준시 재취득 가격

N : 기준시 재조달 가격

P : 취득시 가격

R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가배율

r : " " " 잔가율

1) 기준시 채취득 가격

$$G = P \times \frac{1}{0.316} \times R$$

단, 0.316은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1/2이 경과한 수의 잔가율임.

2) 기준시 제조달가격

$$N = P \times R \times r$$

2) 임차자산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채취득가격 = 신품가격

(건물의 경우 건물평가기준표에 준한 평가액)

제조달가격 = 채취득가격 (신품가격) × 잔가율

단, 잔가율을 위한 내용년수는 임차시 신품의 경우 임차후 경과년수로, 임차시 중고품의 경우 임차시 경과년수를 내용년수에 1/2로 하고 임차후 경과년수를 합산한 년수로 한다.

나. 재고자산 평가방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조사기준시점에서 실시한 장부 가격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시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 1) 조사기준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조사시점에 행한 재고조사의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
- 2) 실지 재고조사를 행한 적이 없는 재고는 조사기준시점의 장부상 가격을 셈하고
- 3) 장부가 없는 것은 조사기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시가로 평가한다.

<제 118 차>

1979.9.7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

가. 표준지 가격 채택방법

1) 한국산업은행이 각 표준지에 대하여 행정기관, 소개업소, 주민소유주, 기타 응답자로 부터 조사된 가격중에서 대표표준지 가격을 채택하는 방법은 현실가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개업소로 부터 조사된 가격을 채택하기로 함.

단, 소개업소 응답가격과 기타 응답자 가격과의 차이가 2배 이상된 경우는 본부 재조사가격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2) 산림청의 표준지 가격은 조사원이 채택한 가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

나. 등급가격 채택방법 (단계)

동일한 등급이라 하여도 지역에 따라 조사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등급가격의 채택은 지역별로 하되 조사자료 성격에 따라서 최빈수 또는 중위수를 대표 가격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음.

즉 가) 한국산업은행 대상 토지지목은 같은 등급이라도 지역에 따라 대표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11개 시도별, 지목별로 등급별 가격을 작성하기로 함.

나) 산림청이 조사한 임야지는 지역별로 대표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고 표준지 수가 적으므로 전국단위로 등급별 가격을 작성하기로 함.

다. 등급별 대표 가격의 확정

위의 방법에 따라 책정된 등급별 가격은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그 대표가격도 높아지는 성향은 있으나 그 일부가 이상 분포 형태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등급별 대표가격의 확정은 위에서 선정 한 가격을 free hand Method로 fitting한 결과를 채택하기로 하였음. (별첨 1 참조)

2. 보고서 발간

가. 조사개요

조사개요편에 수록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각지부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용어정의는 부록편에 수록하기로 하였음.

- (1) 조사연혁
- (2) 조사목적
- (3) 법적근거
- (4) 조사기준시점 및 실차기간
- (5) 조사대상 및 범위
 - (가) 조사대상
 - (나) 조사지역
 - (다) 자산의 범위
- (6) 조사방법
- (7) 자산의 평가방법
- (8) 조사기구

나. 영문표기

산업분류, 자산분류, 용어에 관한 영문표기는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별첨과 같은 표기내용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음.
(별첨 2 참조)

다. Tape 수정

각 지부별로 제출한 요약 tape 중 각지부별로 수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지부는 이를 9.8 까지 수정 결과를 취하도록 하였음.

한국은행 산업분류 316-314

한국산업은행 산업분류 714

국민은행 산업분류 711-712

712-713

713-714

경과년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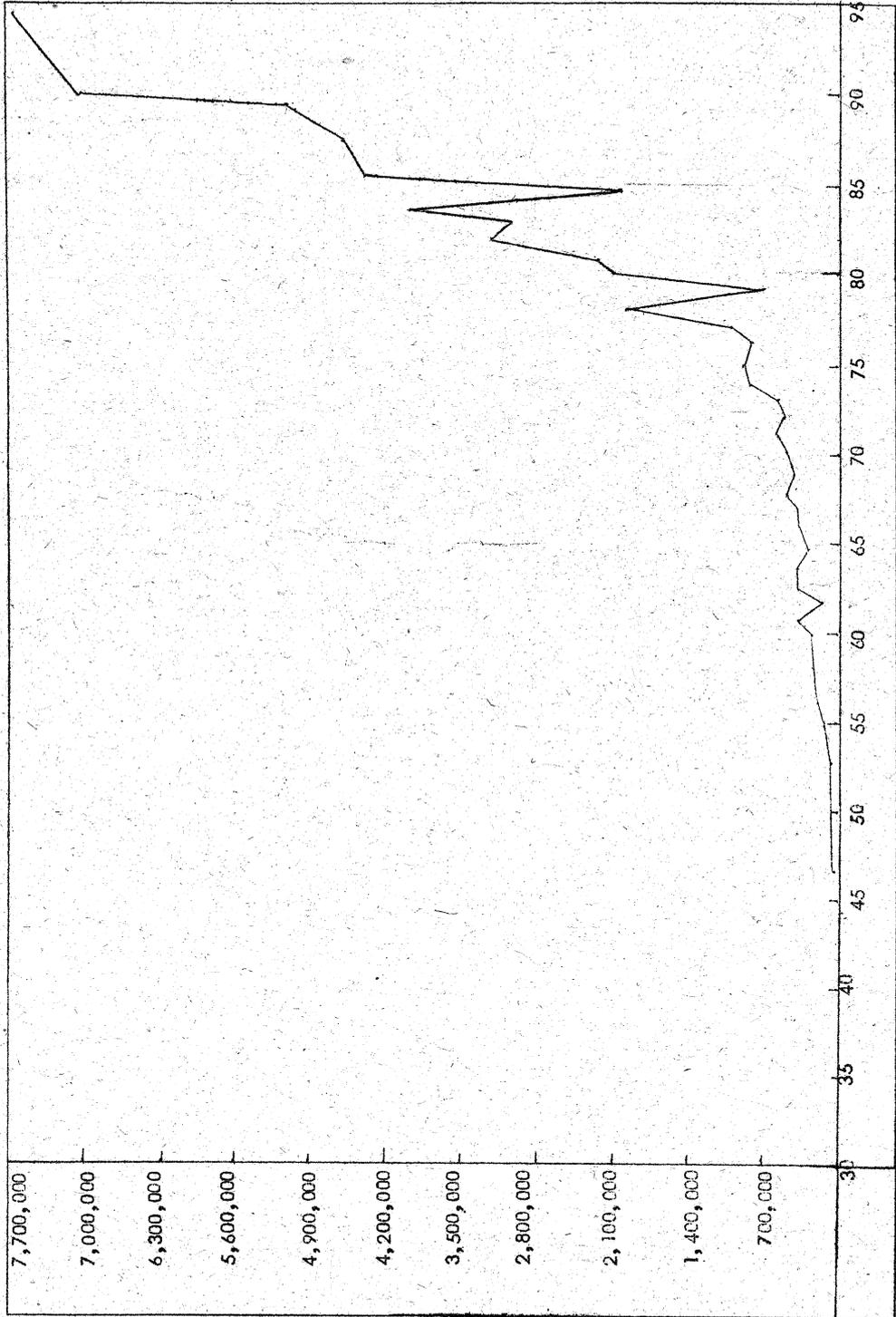
첨부 : 1. 토지가격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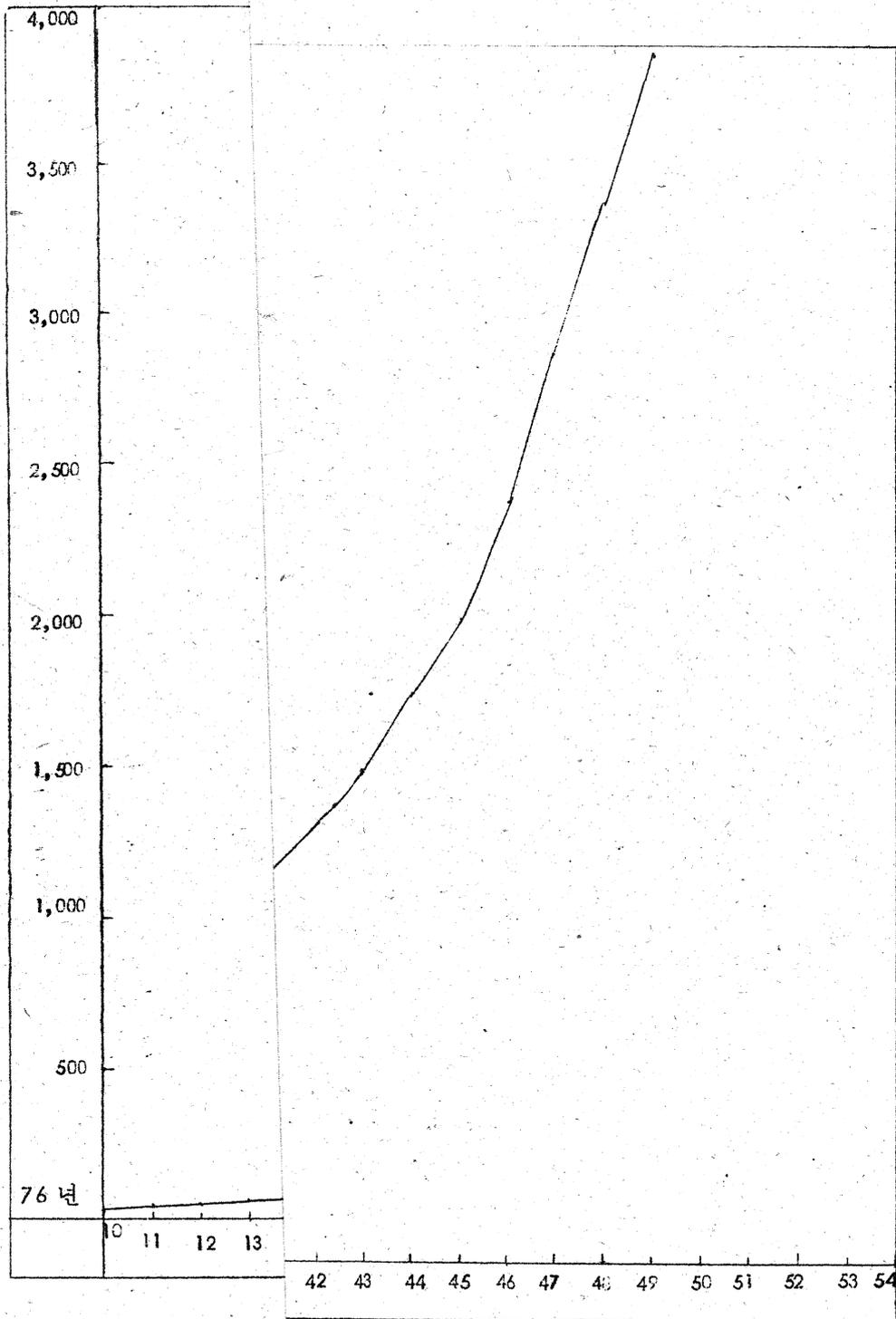
2. 영문표기 (안)

<별첨>

토지가격분포표

서울 - 대지





< 별첨 2 >

자산분류 (Type of Assets)

1. 유형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10. 건물 Buildings

101. 주거용 건물 Residential Buildings

102. 비주거용 건물 Non-residential Buildings

103. 건물부속설비 Attached Facilities

11. 구축물 Structures (other than buildings)

111. 교통 시설 Traffic Facilities

112. 발전 및 송배전 시설 Generating,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113. 수리, 치수 및 급수시설 Water Supply and Food
Control Facilities

114. 기타 시설 Others

12. 기계 및 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

13. 선박 Ships

131. 강 선 Steel Ships

- 132. 목 선 Wooden Ships
- 133. 기타선박 Other Ships
- 14. 차량 및 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 Equipments
 - 141. 궤도차량 Railway Vehicles
 - 142. 자동차 Moter Vehicles
 - 143. 항공기 Aircrafts
 - 144. 기타 차량 및 운반구 Other Transport Equipments
- 15. 공구기구 및 비품 Tools and Furnitures
 - 151. 공 구 Tools
 - 152. 기구 및 비품 Furnitures
- 16. 건설가계정 Construction Work in Progress
- 17. 대동식물 Big Animals and Plants
 - 171. 동 물 Animals
 - 172. 식 물 Plants
- 18. 가계자산 Household Assets
- 2. 재고자산 Stocks
 - 21. 원재료 Raw Materials
 - 22. 반제품 및 재공품 Semi-finished Goods

23. 완제품 및 상품	Finished Products
24. 저장품	Storages
25. 기 타	Others
총자산액	Gross
순자산액	Net
정 부	Public
민 간	Private
공공부문	Public Sector
정부부문	Government Sector
기업부문	Enterprises Sector
비영리단체부문	Private Non-profit Enterprises Sector
가계부문	Household Sector
대외순자산	Not Financial Claims on Non-residents
공공기업	Public Enterprises
정부기업	Government Enterprises
민간기업	Private Enterprises
정부관리기업	Government Control Enterprises
법인기업	Incorporated Enterprises

개인기업	Unincorporated Enterprises
정부기관	Centr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신 품	Acquisition of New Assets
중고품	Purchase of Secondhand Assets
평균내용년수	L(Average Expected Life Time of Use)
평균경과년수	E(Average Years Elapsed)
경과율	E/L
취득년차	Time of Assets Acquisition
자기소유	Owner Ship
임 차	Non-owner Ship
자기사용	Own-Use
대 여	Lended
대분류	Major Division
중분류	Division
소분류	Major Group
총 제	Total
합 제	Sub Total
소 계	Sum

< 제 119 차 >

1979.9.18

1. 보고서 발간

가. 각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보고서 발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개요, 결과개요, 통계편, 부록편(각종 평가 기준표)중 작성 완료되는 편은 단계적으로 실무자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후 각지부별로 확정 절차를 취하기로 하였고 조사개요, 부록편은 다음주 초에 본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나. 개인기업부문은 3개기관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므로 보고서 발간 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금주 목요일까지 개인기업부문 담당기관간에 업무분담 한계를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본부요원과 별도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다. 9.20에 개최되는 정부 간행물 심사위원회 회의에는 조사본부에서 대표로 참석하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기로 하였음.

2. 종합결과표 작성

가. 사회간접자본자산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비영리단체 소유주체에 각각 포함되어 있어 종합결과표 중 표 3, 16에서 사회간접자본자산을 공공부문에 한하여 제표하는 것은 다른 표와 연결하여 볼때 큰 의의가 없으므로 동자산을 해당 소유주체에 포함하여 제표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소유주체, 사회간접자산 소분류별" 결과표를 추가하여 집계하기로 하였음.

(별첨 1 참조)

나. 한국은행, 국민은행 산업분류 Code 중 일부가 조사본부에서 확정하여 시달한 Code와 상이하므로 해당지부는 전산실과 협의하여 조사본부에서 시달한 산업분류 Code에 맞게 잘못된 부분을 수정 제출토록 하였음.

다. 77년 국부통계조사 자료처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지부는 해당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분류 및 Coding Book을 조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조사본부에서는 이를 정리한후 일괄 관리하기로 하였음.

다. 한국은행에서 작성 연구한 자본 계수 산출의 자료 현황과 작성상의 문제점을 검토한후 동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보고서 조사결과 개요면에 수록하기로 하였음. (별첨 2 참조)

마. 본 국부통계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GNP 및 68년도 결과 관련통계, 일본국부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잠정치 결과를 수준 측정한 자료를 작성기관에서 재정리하기로 하였음.

첨부 : 1. 소유주체, 사회간접자본 산업소분류별 결과표

2. 자본계수 산출의 자료현황과 작성상의 문제점 및

산업별 자본계수

<별첨 1 >

소유주체, 사회간접자본, 자산

(총자산액,)

자산분류	총액	공공부분			
		합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합계
총계					
1. 유형고정자산					
10. 건물					
101. 주거용 건물					
102. 비주거용 건물					
103. 건물부속설비					
11. 구축물					
111. 교통시설					
122. 발전및송배전시설					
123. 수리및급수시설					
124. 기타시설					
:					
2. 재고자산					
:					

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순자산액)

기 업 부 문						비영리단체 부 문
공 공 기 업			민 간 기 업			
소 계	정부기업	정부관리 기업	소 계	법인기업	개인기업	

< 별첨 2 >

資本係數算出의 資料現況과 作成上の 問題點

I. 資料現況

1. 資本「스토크」資料

1977年 現存 年度別 「스토크」資料 (1977年價格 基準)

2. 生産額資料

1) GNP 統計 : 全産業資料 不備 (「서어비스」業 : 附加價值 資料)

- 妥當性 缺如 (産業分類 : 活動基準)

2) 鎡工業 Survey : 全産業資料 不備 (鎡工業에 限定)

- 妥當性 缺如

3) I-O 表 : 1978年 I-O 表 60 部門 生産額 및 附加價值 資料 (從來方式에 의한 I-O 表로서 活動基準에 의함)

II. 作成限界

1. 理論上の 問題點

1) 資料調查方法上の 問題

GNP 및 既存 I-O 資料 및 78年 I-O 資料 : (産業分類)

國富 統計 : 事業體基準 (主製品為主)

2) 時間上の 差

I-O 資料 : 1978 年 生産額 및 附加価値 資料

国富統計 : 1977 年末基準「스토크」資料

2. 実務上の 問題点

1) 資料上の 問題

産業 및 部門分類의 概念과 包括範圍의 相異

2) 純資本「스토크」의 算出 (限界資本係數)

資本財別 部門別 減価償却率 算定

年度別 部門別 投資資料

Ⅲ. 作成方向

理論 및 実務의 問題点中 가장 큰 問題는 資料調査 方法上の 問題를 들 수 있다. 従来 방식에 의한 1978 年 I-O 表 作成作業과 同時에 NEW SNA 에 의한 1978 年 I-O 表 作成作業을 併行시키고 있는바 새로이 作成되는 NEW SNA 에 의한 I-O 表는 調査方法에 있어 国富統計와 同一한 基準 즉 專業体基準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相互対応性이 있어야만 算出되는 資本係數 역시 意義를 지닐 수 있으므로 追後 作成될 資本係數는 New SNA 에 의한 I-O 表와 国富統計를 利用하여 算出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現在의 資本係數 算出 限界

IO表 作成이 時間的으로 國富統計 結果值 算出과 떨기 때문
에 우선은 68年 當時와 같이 GNP附加價值를 利用한 資本係數
算出만 容易함 (但, 産業分類上의 基準은 다름)

附加價值 資本係數 (Net Base)

산 업 분 류	1977년	1968년
전 산 업	1,669	1,574
①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0.961	0.470
② 광업	0.667	0.922
③ 제조업	1,615	1,554
④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013	4,718
⑤ 건설업	0.596	0.375
⑥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24	-
⑦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35	3.526
⑧ 금융·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3.263	-
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43	2.035
⑩ : ⑥ + ⑧ 商業	1.417	0.783

※ 註: 家財 除外

<제 120 차>

1979. 9.20

○ 종합부문 실적결과에 따른 내역검토

당국 제표과에서 집계한 종합부문 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종합부문 결과와 각 지부별 결과가 서로 상이하므로 당국 제표과와 각지부별 전산실과 협의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음.

한 국 은 행

	<u>총 합 표</u>	<u>부 문 표</u>
정 부 기 관	345.0	5,197.0
지 방 자 치 단 체	-	3,425.0
정 부 기 업	32,256.2	2,349.6

기 업 은 행

광 업	159.4	155.6
제 조 업	2,748.9	2,751.9
건 설 업	66.1	66.2
도 · 소 매 업	3,011.8	3,012.2
계	5,986.2	5,986.2

국 민 은 행

총 합 표

부 분 표

서 어 비 스 업

5,147.5

700.5

농 수 산 부

총 계

1,555.2

3,443.0

<제 121 차 >

1979. 9.29

1. 국부통제조사 결과분석

가. 국부통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국부통제 실무요원이 조사본부에서 파견 근무하는 안과 공동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조사본부에서 파견 근무하는 안은 지부 자체내에 인사부와 관련으로 실행하기가 곤란하므로 공동 출장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 1) 종합표 결과 검토
- 2) 각부분별 결과 분석
- 3) 관련 통계 및 제외국과 비교
- 4) 자본계수 작성
- 5) 토지 및 산림 자산 표준지 실태 재확인 및 평가방법 확정

2. 종합결과표 작성

각지부에서 당국에 제출한 요약 Tape는 자산분류 자리수가 3자만 수록되어 있고 경과년수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 결과표중 12, 13 평균내용년수, 경과년수표를 작성할 수 없어 당국 제표과 주관하에 자료처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 결과표 작성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제 122 차>

1979.10.2

종합결과분석

1. 조사 본부에서 작성한 종합부문 결과분석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체제로 일부 수정 보완하여 종합결과 분석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I. 결과개요편

1. 종합부문
2. 공공부문
3. 기업부문
4. 가계부문
5. 대외순자산부문

II. 결과 분석편

1. 68 년도와 비교
2. 주요선진국 및 GNP와 비교
3. 일본과 비교
4. 자본계수

2. 위와 같은 분석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부문별 분석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문은 실무자 회의에서 작성하기로 하였음.

공공부문, 대외순자산부문자본계수 : 한국은행

가계부문 : 통계청

일본과 비교 : 국민은행

기존자료(광공업센서스등)와 비교 : 중소기업은행

<제 123-124 차 >

1979.10. 4
10. 8

1. 제 122 차 국부통계 실무자 회의에서 작성하였던 국부통계조사 결과 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별첨과 같이 일부 수정 보완하였고 동 결과에 대한 수준 검증 자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작성한후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 o GNP 와 비교 : 한국은행 김수기 조사역
- o 일본과 비교 : 국민은행 남규홍 조사역
- o 광공업 Census 등 기존자료와 비교 : 중소기업은행 민주현조사역
- o 주요법인체의 대차대조표와 비교 : 산업은행 신희창조사역

2. 77년도 자산액을 68년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물가배율표를 이용하여 deflator 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첨 부 : 국부통계조사 결과분석표

< 별첨 >

결과치검토자료

GNP와 비교

I. GNP 자료 이용 국부추정

1. 추정방법

가.有形固定資産: 1968年 結果値에 69~77年間の 毎年 資本形成額을 GNP資料에 의거 77年 價格으로 換算 價算하여 gross를 推計하고, 여기에서 同期間의 毎年 資本消耗 充當金을 差減하여 net算出

나.大動植物: 農林統計年報에서 소, 말, 돼지, 양(國富評價動物)의 77年末 全國飼育頭數를 求하고 여기에 動物評價基準表의 平均單價를 適用

다.在庫資産: 1968年 結果値에 69~77年間の 在庫 增減額을 GNP資料에 의거 77年 價格으로 換算하여 加算

라.家財資産: GNP民間消費支出中 衣類裝身具와 家具施設費支出額 및 交通通信費의 個人 運輸施設 取得額을 資産別로 耐用年數 未經過分을 累計하여 加算함으로써 gross를 求하고 위의 過程에서 計算된 資産別 年度別 金額의 各項에 經過年數에 따른 該當 殘價率을 適用하여 累計함으로써 net를 算出

2. 問題点

가. 資料事情上 在庫資産에 있어 流通在庫는 計上되지 못하였음
으로 低評價되었음

나. 大動植物에 있어서도 植物은 資料制約上 計上하지 못하여
低評價되었음

다. 家財도 GNP 資料中 制限된 部門만 計上하였음

II. 實際結果値와의 比較

資産形態別	總 額		純 額		差 額 (A-B)	
	實際(A)	推定(B)	實際(A)	推定(B)	總 額	純 額
有形固定資産	45.4	41.8	24.5	25.4	3.6	△ 0.9
大 動 植 物	1.0	0.8	1.0	0.8	0.2	0.2
在 庫 資 産	6.0	5.0	6.0	5.0	1.0	1.0
實 際 資 産	10.5	9.5	5.5	3.3	1.0	2.2
計	62.9	57.1	37.0	34.5	5.8	2.5

- 實際結果値 (A) 總額 62.9 조원
純額 37.0 조원을
- 間接推定値 (B) 總額 57.1 조원
純額 34.5 조원과 比較하면

총액 5.8 조원 (A/B 1.10)

순액 2.5 조원 (A/B 1.07)의 差異를 보임

※ 68 ~ 77 年間の GNP 成長率 (經常) 10.5 倍를 68 年 結果值
에 (총액 5.5 조, 순액 3.1 조) 適用하여 算出하면 總額 57.3
조원 순액 32.7 조원으로 나타남

○ 經濟發展에 따라 資本係數 ($\frac{K}{Y}$)가 커진다고 假定하면 國富
規模는 더 増大될 것으로 豫想됨

부문별 「센서스」와 비교

1. 검증요령

본자료는 E.P.B에서 발간하는 각종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문에 대해 77년말 현재의 유형
고정자산 및 재고액을 추계하고 이를 국부통계조사 결과치와
비교한 것임.

상기산업의 전산업에 대한 자산액 비중은 약 70% 감하고 있음
그 개괄적인 추계요령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가. 광업, 제조업부문

73년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산 Stock액에 매년 광공업
센서스에서 조사되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폐기액을 가
감한후 여기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77년도
가격으로 불변 가격화하여 누적한 것임 즉, (77년말 현재

유형고정 자산 stock액) = (77년도 유형고정 자산액 (시가)
 ×물가배율 × (1-d)⁴ + (74년 유형고정 자산 취득액 - 폐기액)
 ×물가배율 × (1-d)³ + (75년 유형고정 자산 취득액 - 폐기액) ×
 물가배율 × (1-d)² + + (77년 취득액 - 77년 폐기액) ×
 1 × 1) 재고액에 대해서는 77년 광공업센서스에서 조사된
 재고액을 그대로 이용하였음.

나. 건설업, 운수업부문

77년말을 기준시점으로 조사된 건설업 센서스에 수록된 시
 가에 의한 조사액을 전제한 것임.

다. 특 징

- (1) G.N.P 자료를 이용한 검증방법은 68년도 국부조사 결과
 치를 기초로 매년 자본형성분을 누적해간 반면 본 검증자
 료는 73년 센서스의 유형고정자산액을 기초로 산출한 것
 이 여타 검증방법과 크게 상이한 점임.
- (2) 유형고정 자산이란 포괄적인 항목하나만을 가지고 추계한 것
 이 아니고 유형고정자산을 크게 3그룹(즉,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류, 차량운반구선박)으로 나누어 개개 자산별로 상
 각을, 물가배율등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밀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3) 또 산업별로도 광업과 제조업의 자산구성비가 다르기 때문
 에 (건물, 구축물의 경우 광업은 구축물 비중이 현저히 높

음) 내용년수(따라서 상각율)과 물가배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였음.

(4) 광공업 센서스에서 제외되고 있는 종업원 규모 1인 - 4인 규모에 대한 자산은 77년 국부조사 결과치 및 73년 센서스 결과치를 비교하여 비추정하였음.

(5) Net 가격만을 검증하였음.

2. 국부조사 결과치와 센서스 추계치와의 비교

가. 산업별 비교

(단위 : 10억원)

	국 부 조 사	센서스추계치	차이 $\frac{A-B}{A+B}$ (%)
광업 1)	169.8	188.0	△ 5.1
제조업 2)	8,286.5	7,676.8	3.8
건설업	805.4	521.0	21.4
운수업	1,409.0	1,492.1	△ 2.9
계	10,670.7	9,877.9	3.9

주 1) 2) : 건설가계정 제외

주 3) : 항공운수업 제외

나. 자산항목별 비교 (추계 기초자료 부표참조)

단위 : 10 억원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박	건설 가계정	유형자산	재고	계
광 업	A 국부조사	77.5	35.1	17.7	-	130.3	39.6	169.8
	B 센서스	113.2	43.2	13.4	-	170.0	18.0	188.0
	A-B/A+B	△ 18.7%	△ 10.3%	14.1%	-	△ 10.5%	36.7%	△ 5.1%
제 조 업	A 국부조사	2,358.2	3,210.1	203.4	-	5,771.7	2,514.8	8,286.5
	B 센서스	2,312.6	2,958.6	182.3	-	5,453.5	2,223.3	7,676.8
	A-B/A+B	0.9%	4.0%	5.2%	-	2.8%	6.1%	3.8%
건 설 업	A 국부조사	353.4	204.9	61.2	20.9	640.4	165.0	805.4
	B 센서스	72.3	270.5	53.2	19.9	415.6	105.4	521.0
	A-B/A+B	66.0%	△ 13.8%	7.0%	2.5%	21.3%	22.0%	21.4%
계	A 국부조사	2,789.1	3,450.1	282.3	20.9	6,542.4	2,719.4	9,261.8
	B 센서스	2,498.1	3,272.3	248.9	19.9	6,039.1	2,346.7	8,385.8
	A-B/A+B	5.5%	2.7%	6.3%	2.5%	4.0%	7.4%	4.9%

다. 비교결과 (1977년도분)

- (1) 광공업 건설업부분의 1977 국부조사 결과치대 센서스에 의한 간접추계치와의 차이를 4.9%로서 국부조사 결과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
- (2) 이를 보다 세분하면 제조업 3.8%, 광업 Δ 5.1%로서 광공업 부문은 근소한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설업 부문은 21.4%로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3) 건설업부문에서 이와같은 큰격차가 발생한 것은 건물구축물 자산액에서 센서스 추계치가 국부조사 결과치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임
- (4) 3개업종중에서 제조업부분의 결과치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구축물 0.9%, 기계장치 4%, 차량운반선박 5.4%, 재고자산 6.1%, 전체자산 3.8%)
- (5) 광업부문은 전체자산액으로는 Δ 5.1%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자산항목별로 보면 격차가 비교적 심함 (건물구축물 Δ 18.7%, 기계장치 Δ 10.3%, 차량운반구선박 14.1%, 재고자산 36.7%)

3. 1968 국부조사 결과치와 센서스 추계치와의 비교자료 구독관계상,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형고정 자산액만을 광업, 제조업에 대해 자산 항목별로 비교함.

가. 산업별 비교

'77년 불변가격

(단위: 10억원)

구분	'68 국부조사	센서스추계치	차이 $\frac{A-B}{A+B}$ (%)
광업	46.6	75.4	△ 23.6
제조업	1,193.7	1,299.5	△ 3.8
계	1,240.3	1,374.9	△ 5.1

나. 자산항목별 비교

'77년 불변가격 (10억원)

구분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기구비품	차운선 반	량 후반	계
광업	A 국부조사	30.3	12.6	3.7	46.6
	B 센서스	51.8	18.9	4.7	75.4
	A-B/A+B (%)	26.2	20.0	11.9	23.6
제조업	A 국부조사	484.4	674.8	34.5	1,193.7
	B 센서스	772.2	515.0	12.3	1,299.5
	A-B/A+B (%)	22.9	13.4	47.4	4.2
계	A 국부조사	514.7	687.4	38.2	1,240.3
	B 센서스	824.0	533.9	17.0	1,374.9
	A-B/A+B (%)	23.1	12.6	38.4	5.1

참고 1)

물 가 배 율 표

구분 \ 년도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건물·건축물	1.0	1.15	1.27	1.51	2.08	2.32	2.51	2.66	3.01
차량·선박	1.0	1.15	1.25	1.46	2.01	2.28	2.49	2.63	2.99	3.17
기계·광업	1.0	1.14	1.25	1.44	2.0	2.32	2.25	2.64	3.06	3.26
장치·제조업	1.0	1.14	1.26	1.45	1.98	2.34	2.53	2.67	3.00	3.26

참고 2)

내 용 년 수 표

		내 용 년 수	l - d
평 업	건물·건축물	20	0.8913
	기계·장치	6	0.6813
	선박·차량	4	0.5623
제 조 업	건물·건축물	31	0.9284
	기계·장치	10	0.7943
	선박·차량	4	0.5723

계 산 근 거

구		분	내 용 년 수	Weight 77년 국부 Gross	평균내용년수
전 물 · 구 축 물	광	전	24	54.5	20년
	업	구 축 물	17	80.6	
구 축 물	제	전	29	2,852.7	31년
	업	구 축 물	41	589.8	
기 계	광	기	6	106.4	6년
	업	공 구	5	6.2	
장 치	제	기	10	5,855.0	10년
	업	공 구	7	435.9	
차 량 선 박	차	량	4	0.9	4년
	선	박	8	0.1	

참고 3)

종업원 1인 - 4인 규모의 비중

구 분	광 업	제 조 업
전 물 · 구 축 물	1.0 %	2.2 %
기 계 장 치 공 구 기 구	1.4 %	0.1 %
차 량 선 택	3.9 %	2.0 %
제 고 자 산	1.5 %	1.2 %

년	도	73			74			75			76			77			77년말 현재 유형고정자산액					
		건물	기계	차량	건물	기계	차량	건물	기계	차량	건물	기계	차량	건물	기계	차량	건물	기계	차량	재고	계	
광	D취득액	신규				7034	4115	1539	10237	9816	3706	14083	6423	3094	12820	8597	4066					
		증고				1560 × 0.7	1560 × 0.13	1560 × 0.17	1621 × 0.7	1621 × 0.13	1671 × 0.17	2703 × 0.7	2703 × 0.13	2703 × 0.17	1732 × 0.7	1732 × 0.13	1732 × 0.17					
	폐기액				431	681	240	195	206	387	3151	1717	768	567	435	191						
	A=D-E 가담후	50256	47761	25262	7695	3637	1564	11177	9821	3595	12824	8057	2786	13465	8387	4169						
	B 물가배율	208	20	201	151	144	146	127	125	125	115	114	115	10	10	10						
	C (1-α) n	0.8913 ⁴	0.6813 ⁴	0.5623 ⁴	0.8913 ³	0.6813 ³	0.5623 ³	0.8913 ²	0.6813 ²	0.5623 ²	0.8913	0.6813	0.5623	10	10	10						
	A × B × C 1)	65970	20580	5051	8227	1656	406	11277	5698	1421	13145	6258	1802	13465	8387	4169	112084	42579	12849	18035	185547	
2)																113216	43184	13371	10254	100025		
전	D취득액	신규				126353	351641	29529	189998	472900	46895	200367	644449	74545	268647	809212	72435					
		증고				35555 × 0.7	35555 × 0.13	35555 × 0.17	73778 × 0.7	73778 × 0.13	73778 × 0.17	119629 × 0.7	119629 × 0.13	119629 × 0.17	102075 × 0.7	102575 × 0.13	102575 × 0.17					
	폐기액				4899	20070	3593	6702	24021	4416	12460	33437	6300	17394	52364	19340						
	A=D-E 가담후	808762	1275936	103394	146343	328193	31900	191887	457750	55021	271639	626564	88582	323056	770183	70533						
	B 물가배율	210	20	201	151	145	146	127	124	125	115	114	115	10	10	10						
	C (1-d) n	0.9284 ⁴	0.7943 ⁴	0.5623 ⁴	0.9284 ³	0.7943 ³	0.5623 ³	0.9284 ²	0.7943 ²	0.5623 ²	0.9284	0.7943	0.5623	10	10	10						
	A × B × C 1)	1261771	1015774	20776	176829	238479	8301	210048	363888	21746	290018	567355	57281	323056	770183	70533	2211722	2955379	178637			
2)																2312599	2958638	182261	2223298	7676820		

		68 유형 고정 자산액			69			70			71			72			73		
		건구 물축	기 장 계 치	차 선 량 박	건구 물축	기 장 계 치	차 선 량 박	건구 물축	기 장 계 치	차 선 량 박	건구 물축	기 장 계 치	차 선 량 박	건구 물축	기 장 계 치	차 선 량 박	건구 물축	기 장 계 치	차 선 량 박
광 업	D 취득액				3926	3470	1352	1571	2450	948	1971	1431	563	2499	1508	1389	3113	2973	958
					29	25	8	487×0.7	487×0.13	487×0.17	465×0.7	465×0.13	465×0.17	640×0.7	640×0.13	640×0.17	1483×0.7	1483×0.13	1483×0.17
	폐기액				91	147	63	16	75	50	169	361	130	171	203	173	3419	3026	1092
	A=D-폐기액				3864	3348	1297	1896	2438	981	2128	1130	492	2776	1368	1325	7321	1398	1181
	B 물가배율	326	326	317	301	306	299	266	264	263	251	225	249	232	233	228	208	20	201
	$C(1-d)^n$	0.8913^9	0.6813^9	0.5623^1	0.8913^8	0.6813^8	0.5623^8	0.8913^7	0.6813^7	0.5623^7	0.8913^6	0.6813^6	0.5623^6	0.8913^5	0.6813^5	0.5623^5	0.8913^4	0.6813^4	0.5623^4
	A×B×C 1)	51822	18876	4733	4632	476	39	2254	439	46	2678	254	39	3623	475	170	961	60	24
2)																			
제 조 업	D 취득액				774	2073	168	23604	68416	5584	40121	33113	6009	40026	173764	6006	114971	298888	23634
					29998	80305	6592	6187×0.7	6187×0.13	6187×0.17	13640×0.7	13640×0.13	13640×0.17	18115×0.7	18115×0.13	18115×0.17	85067×0.7	85067×0.13	85067×0.17
	폐기액				29662	461131	30675	802	2651	934	3137	4084	1666	7671	17315	2448	15304	13257	7065
	A=D-폐기액				30081	81201	5965	27133	66569	5702	46840	101137	8742	45096	158004	6638	159213.9	296689	31030
	B 물가배율	326	326	317	301	308	299	266	267	263	251	253	249	232	234	228	208	198	201
	$C(1-d)^n$	0.9284^1	0.7943^1	0.5623^9	0.9284^8	0.7943^8	0.5623^8	0.9284^7	0.7943^7	0.5623^7	0.9284^6	0.7943^6	0.5623^6	0.9284^5	0.7943^5	0.5623^5	0.9284^4	0.7943^4	0.5623^4
	A×B×C 1)	772203	514952	12301	49974	39627	178	42907	35455	267	78498	64260	688	72161	117490	1107	246028	233032	6235
2)																			

일 본 과 비 교

1. 개 요

국부자산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민소득계정과 국부통계와의 관계를 음미하여 보면 국민경제의 연간 경제활동 결과로 얻어진 국민소득은 지출과정에서 일부는 소비소멸되고 일부는 유형고정자산 혹은 재고자산의 형태로 stock 되는데, 일정시점의 국부자산은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연간 Stock 누적분으로 구성됨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시점의 국부자산을 국민소득계정의 관련지출항목의 누적으로서 추계, 국부통계 결과치와 비교 검토코자함

2. 국민소득계정에 의한 국부자산의 추정

가. 총국부의 추정

총국부는 국민경제에 존재하는 유형고정자산이 국민경제내에 투입된 시점의 투입가액을 평가시점의 화폐가치로 환가(표 3.5) 것으로서 국민소득계정의 년도별 고정자본 형성액(g_i)의 누계중 평가시점 이전에 폐기처분된 자산의 투입가격을 공제 한 개념과 일치함

$$(1) G(I) = G_{-1} + g_1 + g_2 + \dots + g_n \text{ (표 1, 2, 4)}$$

전회의 국부통계 총자산액에 기간중 년도별 국내 고정자산 형성액(g_i)을 누계하여 구한 것으로서 누계대상 기간이

조사대상자산의 평균 경과년수와 일치하고 기간중 형성액이 일치할 경우 타당한 것임.

그러나 평균경과년수 이내의 기간을 누계하는 경우 과거형성분이 누락되거나 현실적으로는 고도 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속투자에 의하여 평가시점 근년의 고액 형성분이 총액 계상되어 평균 내용년수 이내의 탈락분이 포함, 계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과대 계상되게 됨.

- (2) $G(\Pi) = N_{-1} + g_1 + g_2 + \dots + g_n$ (표 1, 2, 4) 전회의 국부통계 순자산액 (N_{-1})에 기간중 년도별 국내 고정 자본 형성액 (g_i)을 누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N_{-1} 이 회계적인 감가상각율에 의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평가시점의 국부통계 조사대상이 되는 자산중 내용년수 경과후 잔존 자산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과소평가되게 됨.

나. 순자산의 추정

순국부는 국민경제내의 유형고정 자산의 잔여가치를 평가시점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가(표 3.5)한 것으로서 국민소득 계정의 년도별 고정자본 형성액중 평가시점까지의 경제가치의 마모분을 공제하고 평가시점의 화폐가치로 환가한 것을 누계한 개념과 일치함.

$$NO = N_{-1} - d_{-1} + g_1 - d_1 + g_2 - d_2 + \dots + g_n - d_n \quad (\text{표 1, 4})$$

(전회의 순자산액 (N_{-1})에 경과년수 10년의 잔가율

(d_{-1})을 적용, 평가시점의 잔여순자산액으로 하고, 이것에 년도별 고정자본형성액(g_i)에 해당잔가율(d_i)을 승한 금액을 누계하여 구한 것으로 조사대상 자산의 평균 내용년수가 일치할 경우 타당한 것임.

3. 국부통계조사의 한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GNP 자료에 의한 국부자산액의 추계와 국부통계조사 결과치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부통계조사는 평가시점의 잔존실물 자산을 조사평가하는 것으로써 방위산업과 같이 국민소득 계정에서는 포함되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지는 부분이 있음.

4. 국부통계 결과치의 수준검토

GNP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국부액의 수준은

$$G_{-1} + \sum g_i > G_0 > N_{-1} + \sum g_i$$

$$N_{-1} + G_{-1} y^d_{-1} + \sum g_i d_i = N \phi_0 \quad (\text{표 1})$$

그러나 조사상 제외자산을 감안한다면 이론적인 국부액의 수준은 $G_{-1} + \sum g_i > G \phi_0$

$$N_{-1} + G_{-1} \times d^{-1} + \sum gidi > N\phi_0 \text{ (표 1)}$$

수준에서 제외자산을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됨

5. 결 론

77년 한국의 국부자산액 수준은 (표 1) 총자산의 경우

$$\text{(표 1)} \quad 42,141.2 > G\phi_0 > 33,440$$

순자산액의 경우

$$N\phi_0 = 23,832.6$$

제외된 자산을 감안하는 경우

$$\text{총자산의 경우} \quad 42,141.2 > G\phi_0$$

$$\text{순자산의 경우} \quad 23,832.6 > N\phi_0$$

수준에서 제외자산을 차감한 수준이 될것임

한·일 국민소득에 의한 국부통제 수준 비교

(한 국)

		68년 국부	기간중누적액	77년 추정	77년 국부
유정 형자 고산	G	17,847.9	24,293.3	42,141.2	46,394.4
	N	(4,854.2) 9,146.7	19,248.4	23,832.6	25,530.3

(일 본)

		60년 국부	기간중누적액	70년 추정	70년 국부
유정 형자 고산	G	64,106.4	147,477.5	211,583.5	202,287.5
	N	(14,877.8) 32,053.2	116,067.7	130,945.5	103,304

주: net 산출은 평균내용년수 30년, 잔존율 10%에 의함.

일본의 국부통계와

항 목		년 도 별			
		60	61	62	63
국내총액			8,129.5	8,903.2	10,078.9
고정자본형성			4,074.4	4,818.1	5,889.5
국	총액	G	96,066.9		
		N	52,079.4		
부	유형	G	64,106.4	※ 61 ~ 70 국내총고정자본형성	
		N	32,053.2	※ 60년 국부순자산	70년현재
부	고정자산	G	23,868.6	※ 61 ~ 70 국내총고정자본형성	
		N	11,934.3	※ 61-70 국내총고정	자본형성
자재자산		G	23,868.6	※ 61 ~ 70 국내총고정자본형성	
자재자산		N	11,934.3		
재고자산			8,091.9		

주: 감가액은 해당년도 국내총고정자본형성액 $\times (0.1 \frac{1}{30})^m$ 단, $n=70$ 년

국민소득계정과의 비교

64	65	66	67	68	69	70	
11,443.4	11,735.9	13,466.3	16,253.4	19,235.6	22,793.3	25,645.3	
7,220.3	7,995.6	9,906.4	12,910.5	16,490.3	21,109.3	25,645.3	
							302,219.6
							160,544.6
누계 = 147,477.5						211,583.5	202,287.5
감가액 = 14,877.8						130,945.5	103,304
감가액 누계 = 116,067.7							
감가액 누계 = 116,067.7							71,870.7
							29,179.2
							26,378.8

해당년도

한국의 국부통계와 국민

항 목		년 도 별		6 8	6 9	7 0
		년 간	누 계			
국 내 총		년 간			1,910.9	1,929.5
고정 자본 형성		누 계			1,034.1	1,127.5
국	총 액	G	21,479			
		N	11,727.3			
	유 형	G	17,347.9			※ 69 ~
		N	9,146.7			※ 68년 ※ 69 ~
부	자재 자산	G	2,101			※ 69 ~
		N	1,050.5			
재 고 자 산			1,530.1			

주: 감가액은 해당년도 국내총고정자본 형성액 $\times (0.1 \frac{1}{3})^m$

소득계정과의 비교

71	72	73	74	75	76	77		
2,066.6	2,051.9	2,595.1	2,783.7	3,043.3	3,491.4	4,420.9		
1,303.9	1,397.9	1,909.1	2,211.2	2,610.3	3,233.5	4,420.9		
							62,089.7	
							36,979.5	
						77 국내총고정자본 형성액 누계 = 24,293.7	42,141.2	46,394.4
						국부순자산의 77년 현재감가액 = 4,584.2	23,832.6	25,530.3
						77 국내총고정자본형성 감가액누계 = 19,248.4		
						77 국내총고정자본형성 감가액 누계 = 19,248.4		10,507.5
								5,461.4
								5,987.8

단, m = 77년 —— 해당년도

한국국부자료의 77년

구 분		년 도 별			
		68	69	70	71
도 매 물 가		125.2	133.7	145.8	158.7
G. D. P	경 상 가 격	1,629.75	2,130.24	2,663.51	3,279.72
	75년 불변가 격	5,099.92	5,806.08	6,299.49	6,896.79
	77년 환산가 격	6,991.38	7,963.42	8,640.17	9,459.41
국 내 고정자본 형 성	경 상 가 격	413.61	555.75	654.10	742.28
	75년 불변가 격	1,280.28	1,597.20	1,612.89	1,727.45
	77년 환산가 격	1,531.62	1,910.88	1,929.53	2,066.57
국 상 가 격	경	총 자 산	(5,460.1) 3,109.3		
		유형고정자산	(4,819.8) 2,470.1		
	77년	재 고 자 산	283.7		
		대 외 순 자 산	356.5		
부 환 산 가 격	77년	총 자 산	(20,219.0) 11,513.9		
		유형고정자산	(17,847.9) 9,147.7		
	환 산 가 격	재 고 자 산	1,050.5		
		대 외 순 자 산	1,530.1		

기 준 가 격 환 산 표

7 2	7 3	7 4	7 5	7 6	7 7	
180.6	193.1	274.3	347	3,693	424.4	
4,017.70	5,236.12	7,345.20	9,003.09	13,175.16	16,753.64	
7,316.48	8,417.79	9,075.02	9,003.09	11,073.84	12,214.96	
10,035.04	11,545.56	12,447.01	13,445.59	15,180.51	16,753.64	
828.50	1,255.64	1,870.56	2,543.95	3,152.37	4,420.88	
1,715.20	2,169.20	2,326.87	2,543.95	2,918.48	3,695.41	
2,051.92	2,595.05	2,703.67	3,043.37	3,491.43	4,420.88	
						(62,889.7)
						36,979.5
						(56,501.8)
						30,991.8
						5,987.8

일본국부자료의 70년

구 분		60	61	62	63	64
도매물가지수		87.9	88.9	87.4	89.3	89.3
GNP	경상가격		19,852.8	21,659.5	25,592.1	29,661.9
	70년 불변가격		29,711.5	31,615.1	35,574.6	39,349.5
국내본고형성	경상가격		6,687.8	7,266.6	8,290.8	9,611.8
	70년 불변가격		8,129.9	8,903.2	10,078.9	11,448.3
국 부	경상가격	총액				
		유형고정자산	23,667.1			
		가재자산				
		재고자산	6,562			
	불변가격	총액	520,793			
		유형고정자산	32,053.2			
		가재자산	11,934.3			
		재고자산	8,091.9			

기 준 가 격 환 산 표

6 5	6 6	6 7	6 8	6 9	7 0	
90.2	92.6	94.0	94.5	97.7	99.9	
32,812.5	38,449.5	45,322.1	53,368.0	62,997.2	73,246.1	
41,591.3	46,217.7	52,256.8	58,904.2	65,364.6	72,138.6	
9,915.5	11,997.1	14,860.7	17,939.1	22,141.2	25,645.3	
11,735.9	13,466.6	16,253.4	19,235.6	22,793.3	25,645.3	
						(302,219.6)
						160,544.6
						(202,287.5)
						103,304
						(71,670.2)
						29,179.2
						26,378

한국의 국민소득 및

구 분		68 년	
국 민 소 득 계 정	G D P	6,994.9	
	국 내 총 자 본 형 성	1,534.5	
	유 형 고 정 자 본 형 성	1,531.6	
	재 고 증 가	2.9	
국	총 액	G	21,478.1
		N	11,513.3
	유 형 고 정 자 산	G	17,847.9
		N	9,146.7
가 재 자 산	G	2,101.0	
	N	1,050.5	
부	재 고 자 산	1,530.1	

국부자산액 년도별추이

77 년	68 년 ~ 77 년	
	년 도 별 (%)	배 율
16,753.6	10.2	2.40
4,645.6	13.1	3.03
4,420.9	12.5	2.89
224.7	62.1	77.5
62,889.7	12.7	2.93
36,979.5	13.8	3.21
46,394.4	11.2	2.60
25,530.3	12.1	2.79
10,507.5	19.6	5.0
5,461.4	20.1	5.20
5,987.8	16.4	3.91

일본의 국민소득 및 국부

구분		55년	60년	70년	
국내 소득 계정	G N P	17,268.0	24,183.2	72,138.6	
	국내총자본형성	3,455.4	7,290.2	23,415.8	
	유형고정자본형성	2,812.5	6,532.9	25,430.0	
	재고증가	642.9	757.3	2,977.8	
국 부	총액	G	60,085.7	96,066.9	300,537.0
		N	32,132.5	52,079.4	158,862.0
	유형고정자산	G	40,642.8	64,106.4	202,287.5
		N	20,321.9	32,053.2	103,304.0
	가재자산	G	15,264.6	23,860.6	71,870.7
		N	7,632.3	11,934.3	29,179.9
재고자산		4,178.3	8,091.9	26,376.8	

자산액 년도별 추이

55년 - 60년		55년 - 70년		60년 - 70년	
년평균(%)	배율	년평균(%)	배율	년평균(%)	배율
8.7	1.51	10.0	4.18	10.7	2.76
16.1	2.11	15.1	8.22	14.6	3.89
18.3	2.32	15.8	9.04	14.6	3.89
3.3	1.17	10.6	4.63	14.7	3.93
9.8	1.60	11.3	5.0	12.1	3.13
10.1	1.62	11.2	4.9	11.8	3.05
9.5	1.58	11.3	5.0	12.2	3.16
9.5	1.58	11.4	5.1	12.4	3.22
9.4	1.56	10.9	4.7	11.6	3.01
9.4	1.54	9.4	3.82	9.4	2.44
14.1	1.94	13.07	6.31	12.5	3.26

일본 자산형태별조사

년도별 자산별	경 상 가 격		
	3 0 년	3 5 년	4 5 년
국 부 총 액	20,077.9	30,594.4	160,544.6
A. 유 형 고 정	16,715.7	23,662.2	132,483.2
1. 전 물	6,165.8	9,903.5	43,704.9
2. 구 축 물	2,898.0	5,763.6	26,081.6
3. 기 계 장 치	1,749.1	4,172.0	16,980.8
4. 선 박	297.6	419.0	1,983.2
5. 차 량 운 반 구	544.7	1,060.0	3,573.0
6. 공 구 기 구 비 품	469.1	978.3	3,977.6
7. 대 동 식 물	341.0	697.1	612.8
8. 건 설 가 계 정	235.8	602.8	4,469.9
9. 토 지 조 성 개 량	-	65.9	1,909.9
10. 가 재	4,614.6	-	29,179.9
B. 재 고 자 산	3,163.0	6,562.5	26,378.8
C. 대 외 순 자 산	199.2	369.7	1,682.6

주: () 내는 Deflator

년도별 순자산액 변동추이

분변가격		증가율					
		30년~35년		30년~45년		35년~45년	
30년	35년	년평균 (%)	배율	년평균 (%)	배율	년평균 (%)	배율
32,354.9	52,502.1	10.17	1.62	11.27	4.96	11.8	3.06
27,954.2	42,987.2	9.0	1.54	10.93	4.74	11.9	3.08
(63.7)9,865.3	(76.3)1,299.6	5.7	1.32	10.43	4.43	12.9	3.36
(63.7)4,636.8	(76.3)7,563.8	10.3	1.63	12.20	5.62	13.2	3.45
(63.7)2,798.6	(76.3)5,475.1	14.37	1.96	12.77	6.07	12.0	3.10
(63.7)476.2	(76.3)549.9	2.9	1.15	10.01	4.19	13.7	3.62
(63.7)871.5	(76.3)1,391.1	9.80	1.60	9.86	4.10	9.9	2.57
(63.7)750.6	(76.3)1,283.9	11.3	1.71	11.76	5.30	12.0	3.10
(63.7)545.6	(76.3)914.8	10.9	1.68	0.78	1.12	△4.0	△1.49
(63.7)377.3	(76.3)791.1	16.0	2.10	17.92	11.85	18.9	5.65
(4.37) -	(76.3)86.5					174.4	22.07
(52.6)7,632.3	(58.3)11,934.3	9.4	1.56	9.35	3.82	9.4	2.45
(75.7)4,178.3	(81.1)8,091.9	14.1	1.94	13.07	6.31	12.5	3.26
(89.5)222.6	(87.3)423.5	13.7	1.90	14.4	7.56	14.8	3.97

일본경제부문별조사년도별

경제부문	경 상 규 격	
	30년	45년
자 산 총 액	19,878.7	158,862.0
공 공 부 분	2,979.8	22,432.4
국	903.8	3,211.5
지 방 공 공 단 체	1,049.2	6,158.0
공 공 물	1,026.3	13,161.9
기 업 부 분	10,100.7	85,836.5
정 부 기 업	1,474.1	14,604
국 영 기 업	1,271.5	9,791.7
지 방 공 공 기 업	202.6	4,812.3
민 간 기 업	8,626.6	71,232.5
법 인 기 업	6,153.1	59,255.5
개 인 사 업 체	2,473.5	11,977
비 영 리 단 체 부 분	792.8	7,585.1
가 계 부 분	6,005.4	43,008

(주) : () 내는 Deflator

순 자 산 액 변 동 추 이

불 변 가 격	증 가 물	
	30 년 ~ 45 년	
	년 평 균 (%)	배 율
33,261.7	10.9	4.78
(63.7) 4,677.8	11.0	4.80
(63.7) 1,418.8	5.4	2.19
(63.7) 1,647.1	9.2	3.74
(63.7) 1,611.1	15.0	8.17
(63.7) 15,856.7	11.9	5.4
(63.7) 2,314.1	13.1	6.31
(63.7) 1,996.1	11.2	4.91
(63.7) 318.1	19.9	15.13
(63.7) 13,542.5	11.7	5.26
(63.7) 9,659.5	12.9	6.13
(63.7) 3,883.1	7.8	3.08
(63.7) 1,244.6	12.8	6.09
(52.6) 11,482.6	9.2	3.75

일본산업별 조사년도별

년도별 산업분류		경 상 가 격		
		3 0 년	3 5 년	4 5 년
전 산 업	총 액	10,100.7	20,384.0	85,836.5
	농 립 수 산 업	1,120.9	1,972.9	6,293.2
	광 업	198.3	330.2	589.9
	전 설 업	170.2	995.6	5,520.1
	제 조 업	3,024.3	7,703.9	32,328.5
	도 · 소 매 업	1,896.1	3,249.3	12,699.7
	금융·보험·부동산업	605.3	543.2	5,161.5
	운 수 통 신 업	1,605.9	2,785.7	11,879.0
	전 기 가 스 수 도	1,127.5	1,962.0	7,939.4
	서 비 스 업	354.2	841.2	3,425.3
제 조 업	식 품 제 조 업	295.2	564.4	2,663.2
	섬유·의복 제조업	585.7	914.3	2,567.7
	목재·기구 제조업	184.2	257.1	935.7
	금속·금속제품	514.6	1,689.0	7,378.6
	기계수송기계	562.2	1,702.7	9,325.0
	기 타 제 조 업	882.0	2,575.9	9,458.5

순자산액 변동추이

불 변 가 격		증 가 율					
		30 ~ 35 년		30 ~ 45 년		35 ~ 45 년	
30 년	35 년	년 평균 (%)	배 율	년 평균 (%)	배 율	년 평균 (%)	배 율
15,856.7	26,335.9	10.86	1.67	11.92	5.41	12.5	3.26
1,759.7	2,540.9	7.7	1.45	8.9	3.57	9.5	2.47
306.6	426.6	6.8	1.39	4.6	1.92	3.3	1.38
267.2	1,286.3	36.9	4.81	22.4	20.56	15.7	4.29
4,747.7	9,953.4	76.0	2.09	13.6	6.81	12.5	3.25
2,976.6	4,198.1	7.1	1.41	10.2	4.27	11.7	3.03
950.2	701.8	△ 6.2	△ 1.35	11.9	5.43	22.1	7.35
2,522.6	3,599.1	7.4	1.43	10.9	4.71	12.7	3.30
1,770.0	2,534.9	7.4	1.43	10.5	4.49	12.1	3.13
556.0	1,086.8	14.3	1.95	12.9	6.16	12.2	3.15
463.4	729.2	9.5	1.57	12.4	5.75	13.8	3.65
919.5	1,181.9	5.1	1.29	7.1	2.79	8.1	2.17
289.2	332.2	2.8	1.15	8.1	3.2	10.9	3.82
807.8	2,182.2	21.9	2.7	15.9	9.13	12.9	3.38
883.4	2,199.9	20.0	2.5	17.0	10.56	15.5	4.24
1,384.6	3,328.0	19.2	2.4	13.7	6.83	11.0	2.84

<제 125 차>

1979. 10. 15

- 1. 각부문별 보고서를 동일된 체제로 발간하기 위하여 조사개요, 결과개요, 부록편을 지부별로 작성한 후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하여 보고서 수록 내용을 확정하기로 하였음

조사개요 부록편 : 10.23

결과개요 : 10.26

- 2. 개인기업부문은 3개기관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므로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총괄 : 중소기업은행

제 1편 조사개요

제 1부 농림 어업부문

제 2부 비농림 어업부문

제 2편 결과의 개요 (분석편)

제 1부 총괄 ————— 국민은행

제 2부 농림어업부문 ————— 농수산부

제 3부 비농림어업부문 ————— 국민은행

제 3편 통계편

제 1부 총괄 ————— 농수산부

제 2부 농림어업부문

제 3부 1, 2, 4, 5, 8, 9 표 ————— 중소기업은행

3, 6, 7, 10, 1 ————— 국민은행

제 4편 부록편 조사본부

<제 126 차>

1979. 10. 16

국부 통계조사종합 및 부문별 보고서를 통일된 체제로 발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 하였음

1. 편집 순서

I. 조사개요

II. 결과개요

III. 통계표

IV. 부록편

2. 수록내용

가. 조사개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록함

I. 조사개요

(1) 조사연혁

(2) 조사목적

(3) 조사의 법적근거

(4) 조사대상 범위

(가) 조사대상

(나) 지역의 범위

- (다) 자산의 범위
- (5) 조사기준 시점과 실사기간
- (6) 조사방법
- (7) 평가방법
- (8) 조사기구

나. 부록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록함

IV. 부 록 편

- (1) 용어정의
- (2)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 (3) 물가배율표
- (4) 잔가율표
- (5) 건물평가 기준표
- (6)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 (7) 산업분류 (영문 병기)
- (8) 조사표

3. 기타사항

가. 보고서에 수록되는 모든 연번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함.

1. 가. 1) 가) (1) 가) 1가

나. 통계표중 단위미단과 자료가 없는 경우 0.0으로 표시함.

다. 모든 표두의 용어 및 산업대분류는 영문을 병기함.

라. 표측의 자산분류는 왼쪽은 국·한문, 오른쪽은 영문으로 표시함.

마. 산업분류는 고유번호를 병기함 .

바. 지역명칭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음 .

예) 충청북도

사. 통계표 제목 표시에 있어서 총자산액은 0-1, 순자산액은
0-2로 표시함 .

<제 127 차>

1979. 12. 3

1. 보고서 발간

가. 국부통계조사 보고서를 통일된 체제로 발간하기 위하여 조사
본부에서 작성한 발간 지침서(안)을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일부 수정한후 원안과 같이 결정하였음(별첨 1 참조).

가) 보고서 명칭은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함.

나) 조사개요에 대한 영문요약은 종합편에 한하여 수록함.

다) 용어정의, 국부통계조사용 산업분류 및 조사표는 영문을 분
리 병기함.

라) 용어정의를 부록편에 수록함

나. 법인자산편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실무자회의(안)과 산은(안)
중 상이한 부분을 비교 검토한후 다음 사항을 제외한 실무
자회의에서 결정된(안)을 따르기로 하였으며(별첨 2 참조)

1) 총계 Total, 합계 Subtotal, 소계 Sum의 용어 전체를
계 Total로 일괄하여 수정하는 것은 각지부별 보고서 특
성에 따라 적의 조정키로 함.

2) 재고 자산은 Stock, 산업분류는 Industrial Classification로 표시하기로 함.

3) 지역표시는 행정분류 고유명칭을 사용하기로 함.

예) 서울특별시, 부산시

4) 표측의 분류표시는 가급적 상세히 구분 가능토록 함.

2. 평가방법

가존평가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국민은행(안) 즉, 중고품 평가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소유주체가 중고품을 구입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그 취득가격에 물가배율을 승하여 Gross를 산출하는 평가방법을 기록 보존하여 차기 국부통계조사에서 이용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동 평가방법에 의한 통계표, 개념등을 작성 사후평가보고서등에 수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첨 부 : 1.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지침서(안)
2. 법인자산편 보고서 원고검토 결과

< 별첨 1 >

국부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발간지침

1. 발간원칙

가. 77년 국부통계조사 각 편별보고서는 양식, 체제, 활자, 지질 등의 통일을 기한다.

1) 규 격 : 4 × 6 배판

2) 인쇄방법 : 활판인쇄 및 음쇄트

3) 지 질 : 80 미색 백상지 단, 표지는 포탈로드 (금박철인)

4) 제 본 : 양 장

나. 본 지침에 수록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조사본부와 협의후 시행토록 한다.

2. 표지 및 발행부수

가. 한자, 아라비아숫자, 영문을 병기

구 분	보 고 서 명 칭	발 행 기 관	발 행 부 수
총 합 편	1977 국부통계조사보고 제 1 권 총 합 편	경 제 기 획 원	800 부
정 부 자 산 편	1977 국부통계조사보고 제 2 권 정 부 자 산 편	경 제 기 획 원 한 국 은 행	500 부
법 인 자 산 편	1977 국부통계조사보고 제 3 권 법 인 자 산 편	경 제 기 획 원 한 국 산 업 은 행	500 부
개 인 기 업 자 산 편	1977 국부통계조사보고 제 4 권 개 인 기 업 자 산 편	경 제 기 획 원, 농 수 산 부 중 소 기 업 은 행 국 민 은 행	600 부
가 계 자 산 편	1977 국부통계조사보고 제 5 권 가 계 자 산 편	경 제 기 획 원	500 부

(책의 전면 및 측면의 양식은 별지 "예" 참조)

冊의 前面

1977

国富統計調査報告書

第1卷 綜合編

1977 National Wealth Survey Report of Korea

Volume 1.

Summary Report

經濟企劃院

Economic Planning Board

1977

國富統計調查報告書

第1卷

綜合編
經濟企劃院

3. 국민교육헌장 : 별첨 1 참조

4. 머릿말 : 각보고서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명의로 게재

5. 목차 : 별첨 2 참조

6. 조사개요 :

가. 국·한문 병용하여 1/2 단으로 수록함

나. 조사개요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1) 연혁

2) 조사목적

3) 조사의 법적근거

4) 조사대상 범위

가) 조사대상

나) 지역의 범위

다) 자산의 범위

5) 조사기준시점과 실시기간

6) 조사방법

7) 표본설계개요

8) 평가방법

9) 조사기구

단, 1) 조사개요의 내용은 각부차별 특성을 살리도록함.

2) 조사연혁과 조사기구는 종합표에만 수록.

3) 표본설계 개요는 개인기업부문과 가계부문에 한함.

7. 영문요약 (Outline of 1977 National Wealth Survey)

- 종합편에 한한다.

8. 결과개요 :

가. 국·한문 병용하여 결과분석 게재

나. 전단으로 수록함.

9. 통계표

가. 세 목

1) 한자 및 영문 병기

나. 표 두

분류번호와 분류명을 한자·영문 병기

단, 산업분류는 분류번호와 분류명을 한자로만 기입

다. 표 측

분류번호와 분류명을 한자로 병기

단, 표우측에 여백이 있을 경우는 여백에 표측분류별 영문으로 병기

10. 부 록

가. 수록내용은 "별첨 1" 참조

나. 용어정의, 국부통계조사용 산업분류 및 조사표는 영문을 병행수
록한다.

< 별첨 1-1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뢰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 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 별첨 2 >

법인 자산편 보고서 원고 검토 결과

실 구 자 회 의 안	산 은 안
<div data-bbox="311 698 470 76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표 지</div> <p style="text-align: center;">1977 년</p> <p style="text-align: center;">국부 통계 조사 보고서 제 3 권 법인 자산 편</p> <p>1977 National Wealth Survey Report of Korea Volume 3 Corporation</p> <div data-bbox="311 1198 470 126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I 조사 개요</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연 령 2. 조사 목적 3. 조사의 법적 근거 4. 조사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사 대상 나. 지역의 범위 다. 자산의 범위 	<p>1977 년 국부 통계 조사 보고서 (법인 자산 편)</p> <p>1977 National Wealth Survey of Korea (Corpor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 령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법적 근거 4. 조사 기준 시점 및 조사 기간 5. 조사의 범위 6. 조사 항목 7. 조사 방법

실 무 자 회 의 안	산 은 안
5 . 조사 기준시점과 실시기간	제 2 장
6 . 조사방법	자산의 평가 및 추계방법
7 . 표본설계 개요	제 3 장
8 . 평가방법	용어의 정의
9 . 조사기구	
Ⅲ 통계 표	
.....자산액유형 고정 자산 및 재고자 산액
○ 전 산 업 All Industries	전산업 Total
총 자산액 Gross	총 자산액 Gross Value
순 자산액 Net	순 자산액 Net Value
총 계 Total	} 계 Total
합 계 Sub Total	
소 계 Sum	
단 위 Billion Own	단 위 In Billion Own
자기사용 Own - Use	자기사용 Use
대 여 Lended	대 여 Non - Use
년(단위) Year	년(단위) In Year
재고자산 Inventories	재고자산 Stocks
서 울	서울특별시

실 무 자 회 의 안	산 은 안
<p data-bbox="347 499 470 533">부 산</p> <p data-bbox="316 566 438 600">표 측</p> <div data-bbox="443 611 646 79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data-bbox="459 633 630 667">자 산 분 류</p> </div> <p data-bbox="316 824 774 918">○ 산업분류 Kind of Economic Activity</p> <div data-bbox="323 985 534 106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data-bbox="339 1008 518 1041">Ⅳ. 부 록</p> </div> <ol data-bbox="316 1093 750 1534"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2. 물가배율표 (작성방법) 3. 잔가율표 (표첨부) 4. 건물 평가기준표 5.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6. 국부통계조사용 산업분류 (영문분리 병기) 7. 조사표 (영문 조사표 포함) 	<p data-bbox="853 499 997 533">부산직할시</p> <p data-bbox="853 566 973 600">표 측</p> <div data-bbox="869 604 1220 79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60%; padding-bottom: 5px;"> <p data-bbox="909 649 1029 683">자산분류</p> </div> <div style="width: 35%; padding-left: 5px;"> <p data-bbox="1061 616 1181 649">산업분류</p> </div> </div> </div> <p data-bbox="821 824 1284 862">산업분류 Industrial Group</p> <ol data-bbox="821 1093 1236 1444"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 사 표 2. 국부통계조사용 산업분류 (영문분리 병기) 3.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4. 물가배율표 (요약) 5. 잔가율표 (공식) 6. 건물 평가기준표

<제 128 차 >

1980. 1.23

1. 각 지부별 국부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당국에서 일괄하여 조달청에 인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각 지부별로 전달하여 담당부문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3개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기업 자산 보고서 발간은 다음과 같은 안이 제기 되었음.

제 1 안) 개인기업 부문 공동실시 기관인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중 어느 한 기관이 주관하되 소요경비는 3개기관이 균등 부담함.

제 2 안) 보고서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즉, 계약체결, 소요경비 납부등은 통계협회에 위임하되 소요경비는 3개기관이 균등분담함.

2. 80년도 예산에 보고서 발간 소요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중소기업 은행에서 경비처리 분제를 관련부서(기술협력부, 서무부)와 협의한 후 보고서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되 보고서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3개기관이 필히 균등 부담토록 당국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였음.

3. 3개기관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는 개인기업부문 보고서의 조사개

요, 결과개요, 통계표를 통일된 체제로 발간하기 위하여 1.31
까지 각 지부별로 작성하고 있는 원고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정리하여 본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
하기로 하였음.

<제 129-130차>

80. 3.27

80. 3.31

국부통계조사 결과 공표후 제기된 별첨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 각 지부 별로 이를 작성하여 4. 7일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별첨 참조)

1. 미공표된 부문

대외순자산 : 한국은행

토지 및 산림자산 : 조사본부
지역별 자산

2.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국제비교, 자본계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함

국제비교 : 해외 연수후 각 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취합하여 조사본부에서 작성

자본계수 : 77년 국부통계조사의 자본계수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계수 작성상 문제점 (GNP와 New SNA

분류의 불일치, I·O 자료이용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명기함 (한국은행)

3. 국부통계조사 결과중 정책 입안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담당부문 결과표중 중요 통계표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 지부별로 작성하기로 함.

4. 해외 연수후 각 지부별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료를 해외
연수 조별로 동자료를 취합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함.

미 주 : 중소기업은행

구 주 : 한국은행

아 주 : 국민은행

첨 부 : 회의 안건

제 129-130 차

1. 77년 국부통제조사는 그동안 175 차에 걸친 각종 회의와 연 15 만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성공리에 끝나치고 그 결과를 대외 공표하였음.
2. 그 결과를 정책입안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하루 빨리 결과보고서가 발간되어 배부되어야 할 것임 .
3. 발간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 .
 - 가.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부문에 대한 공표
 - 나. 국부조사 목적에 따른 일차적인 분석 (국제비교, 자본계수의 산출등)
 - 다. 차기 국부조사 (87년 조사) 를 위한 해외연수자료등이 취함
4. 모든 조사는 그 조사가 시작되는 기획 단계도 중요하지만 조사 완료후 분석단계에서도 상당한 주의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으

로 앞으로 위 3항에 적기된 사항 및 기타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실무자 회의의 가일층의 노력을 촉구함.

5. 공표후 이용자중의 일부에서 그 결과가 정책입안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국제비교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특히 요청됨.

6. 따라서 조사본부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실무자회의를 집중적으로 운영 강화하여 상기와 같은 제반사항을 처리코자 하니 이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기 바람.